





| SRI-기본-2021-07 |

# 수원시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The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for  
Public Investment in Suwon City

황소하

연구진

연구책임자 황소하(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현경(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21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1년 9월 30일

**발행** 2021년 9월 30일

**ISBN** 979-11-6819-005-4(9332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황소하. 2021. 「수원시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

비매품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 주요 내용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 공공투자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현황분석, 운영 실태분석, 공무원 인식조사, 투자심사위원 및 재정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및 자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심사단계별 개선방안 및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향 제안

### ■ 정책제안

- ① (투자심사 사전단계)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강화, 심사의뢰서의 객관성 및 완성도 제고
  -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검토 및 컨설팅 절차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수원시 투자사업에 적합한 심사의뢰서 작성 매뉴얼 및 자료공유 플랫폼 마련,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② (투자심사 심사단계) 심사의뢰서에 대한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 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예산부서의 실무심사 강화, 실무심사 후 전문적 사업검토 체계 마련
  -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합리적 위원회 운영 방안 및 엄격한 심의기준 마련
- ③ (투자심사 사후단계) 철저한 이력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 투자심사 결과의 예산연계 강화 및 공개, 사후평가 결과와 투자심사제도 연계방안 모색

- 수원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종합적 이력관리 체계 구축, 조건부 판정사업의 조건부 내역 이행점검 강화, 투자심사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투자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 사후평가 및 환류 시스템 마련
- ④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적합한 투자심사체계 구축
  - 특례시 규모에 부합하는 자체투자심사 역량 확보
  - 투자심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바탕으로 특례시 심사권한의 단계적 확대 추진
  - 재정분권 기조 및 자치단체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 기준 합리화 추진

# 국문요약



## ■ 서론

### ○ 연구의 배경

-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투자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대내외적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성이 강조됨
-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구 자체 심사 통과율이 99%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수원시 역시 경제상황 악화, 코로나19, 지방재정제도 변화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서 자치단체 규모에 걸맞은 재정자율성 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 확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됨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주로 중앙 및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공공투자심사체계 구축을 위해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수원시 투자심사 현황 분석,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투자심사위원 및 재정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및 자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 ■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분석

###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현황(2016년~2020년)

- 전체투자심사대상 사업건수는 총 303건으로, 중앙투자심사 45건, 도투자심사 61건, 자체 투자심사 197건으로 나타났으며, 심사대상 총사업비는 3,617,480백만 원으로, 중앙투자심사 1,844,200백만 원, 도투자심사 568,870백만 원, 자체투자심사 1,204,410백만 원으로 나타남
- 심사시기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는 모두 정기심사로 실시되었으며, 도투자심사 및 자체 투자심사는 정기심사가 약 91~92% 수준을 차지함
- 심사유형의 경우 자체투자심사에서 두드러지게 신규심사 비중의 감소와 재심사 비중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고, 중앙 및 도투자심사에서도 재심사 비중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심사 사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사업 분야별 투자심사 대상은 전국적 분포와 유사하게 수원시의 경우도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심사건수와 사업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사업규모별로 보면, 50억 원 미만 사업이 178건(58.7%)으로 가장 사업수가 많았으며, 총 사업비의 경우 500억 원 이상 사업이 1,121,300백만 원(31.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재원구성별 분석결과, 중앙 및 도투자심사 대상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및 도비의 비중이 매우 낮거나 혹은 전혀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였으며, 투자심사 사업현황을 재원구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앙투자심사 및 도투자심사의 경우 대체로 전액 시비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현황(2016년~2020년)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의 긍정평가(적정과 조건부 판정 포함)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투자심사 75.6%, 도투자심사 82.0%, 자체투자심사 90.9%로 자체투자심사의 긍정평가 비중이 중앙 혹은 도투자심사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보건,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분야가, 도투자심사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분야가, 자체투자심사의 경우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평가 비중을 보임
- 사업규모별 투자심사 결과는 대체로 사업규모가 클수록 긍정평가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 ○ 사전단계의 문제점

-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계획의 부실 등이 사전단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심의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조건이 미충족(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되거나 심사의뢰서 작성이 부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 문제 발생의 원인은 사업구상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련부서 간 사전협의 절차 등의 부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심의상정 불가 원칙에 대한 관행적 예외 인정, 사업계획 및 사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외부 용역관리 부실, 사업분야별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미비, 투자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미흡 등이 것으로 파악됨

### ○ 심사단계의 문제점

-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의 문제점으로는 개략적인 실무심사 의견, 부실한 심사의뢰서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검토 부족, 사업부서의 의뢰서 작성 및 보안을 위해 제시해 줄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족 등이 확인됨
-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투자심사 관리 조직 및 인력의 부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토 절차 미비, 사전검토회의의 실효성 저하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심사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심사자료 부실 및 검토시간 부족, 회의 당 안건 수 과다 등이 확인됨

### ○ 사후단계의 문제점

- 투자사업 성과를 평가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 조건부 통과사업의 조건부 내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위원회 보고 미비, 재검토·재상정 사업에 대한 심사 및 집행 이력에 대한 정보제공 미비, 통과된 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집행현황 등 추진경과 보고 미비, 사업추진 및 운영에 따른 사후평가 부실, 종합적인 이력관리 체계 미흡, 사후평가와 환류시스템을 통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간 연결성 확보 미흡 등이 구체적 문제점으로 확인됨

##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 수원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6년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공공투자사업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138명의 공무원들을 대상(대상자 중 99명 응답)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40%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제도 운영의 목적 적합성'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61.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투자심사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체투자심사 관대화 경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8.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응답자 중 약 절반정도는 자체투자심사가 타 투자심사에 비해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남
- 다음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부서 간 협업과 소통'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2.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투자심사 추진과정에서 부서 간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함
  - '위원들의 심의기간 충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2.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심의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함
  - '위원회 심의 전 사전검토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3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직기간이 길수록 위원회 심의 전 사전검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사업 이력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5.7%가 심사이후 사업 집행에 관한 이력관리가 각 부서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 이력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43.5%), '사업규모의 적정성'(13.0%), '경제적 타당성 확보'(10.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마지막으로 투자사업 계획 및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수원시 자체심사 의뢰서를 작성하는 데는 평균 11.0일, 경기도 의뢰심사는 평균 14.1일, 중앙 의뢰심사는 평균 17.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서 작성 시 주로 기존 의뢰서를 참고(응답자의 73.6%)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투자심의자료’(43.8%), ‘공공시설 운영계획서’(19.3%), ‘사업비 산출내역’(17.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투자심사 준비 시 문제 사항으로는 ‘전문 컨설팅 부재’(42.0%), ‘촉박한 추진일정’(35.8%), ‘매뉴얼 부재’(14.8%) 등이 주로 지적됨
- 컨설팅 전문 지원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7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담당 공무원 인터뷰 결과

###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

- 인터뷰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실무심사의 문제점으로 사업부서의 의뢰서 작성 미흡, 실무심사 사전검토 인력 및 전문성 부족, 투자사업 담당부서에 제시해 줄 가이드라인 미비, 사전검토회의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됨
-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의과정 상의 문제점으로는 심의시간 부족, 조건부 사업 증가 문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사후평가·이력관리·이행사항 보고 미흡 등이 제기됨
-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심의상정과 재심사 사업의 증가 및 관리 미흡 등이 나타남

###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단체 자체투자심사 대상사업 범위 확대, 사업유형 및 규모 외에 투자사업 재원 구성 및 비중을 고려한 심사기관 기준 정비, 전문적인 투자심사 지원 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 결론 및 개선방안

### ○ 사전단계 개선방안

-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강화가 필요함
  -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검토 및 구체적 사업수립에 대한 지원 절차 마련되어야 함(관계부서 간 사전 협의절차 강화, 전문조직을 통한 사업구체화 컨설팅/사전검토 지원 등)
  -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의무화 등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가 요구됨

- 심사의뢰서의 객관성 및 완성도 제고가 요구됨
  - 수원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매뉴얼 개발 및 자료공유 플랫폼 마련,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기능 강화, 심사의뢰서 작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함

## ○ 심사단계 개선방안

- 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가 요구됨
  - 예산부서의 실무심사 강화를 통해 심사의뢰서의 충실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심사 담당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해야 함
  - 실무심사 후 사전검토 체계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전검토 체계 마련, 현장조사 강화, 객관적 사전검토 기준 및 외부 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기준 마련, 사전검토회의 조직 및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함
-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다양한 분야(재정,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투자심사위원들 대상의 투자심사제도 및 분야별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야 함
  - 사전검토 및 사전 질의절차 강화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해야 함
  - 사업의 준비정도와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회의 당 상정 안건 수 조정이 필요함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심사 및 재상정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추진, 사전절차 미이행 및 사업계획 부실 사업 등에 대한 조건부 판정 지양, 조건부 판정 내역 명확화, 서면심사 최소화 등이 요구됨
  - 수원시 투자사업 성격에 따른 자체적인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함

## ○ 사후단계 개선방안

- 투자심사사업의 이력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을 강화해야 함
  - 행정안전부 의무이력 관리 대상 외 수원시 투자심사 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 이력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조건부 판정 사업에 대한 조건부 내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함
-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연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편성 간 괴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사후 예산 편성에 대한 위원회 검토 실시, 사업단계별 평가결과와 예산연계 강화,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반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공개가 요구됨
  -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와 투자심사제도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함
    -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의 범위를 수원시 투자심사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 하고 평가결과를 투자심사제도에 적극 환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정사업평가 등 타 재정관리제도와와의 연계강화가 요구됨
-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 지방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권한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체계의 합리성 및 실효성 확보를 전제로 함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적합한 수원시 투자심사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특례시 규모에 부합하는 자체투자심사 역량 확보가 필요함
    - 투자심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전제로, 특례시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특례시 심사권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야 함
    - 재정분권 기조 및 자치단체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함

---

# 차 례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5
 <b>제2장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b> .....	 <b>7</b>
제1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의의 .....	9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념 및 특성 .....	9
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	10
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법적근거 .....	10
제2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연혁과 현황 .....	13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연혁 .....	13
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	20
제3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내용 .....	29
1.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	29
2.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	32
3. 투자대상 심사기관 및 심사대상 기준 .....	33
4.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투자심사 절차 .....	37
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및 결과 .....	38
제4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 틀 .....	41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	41
2. 연구의 분석 틀 .....	46

<b>제3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b> .....	<b>49</b>
제1절 수원시 재정현황 .....	51
1. 수원시 예산규모 .....	51
2. 연도별 세입재원 현황 .....	52
3.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	54
4. 가용재원 현황 및 전망 .....	55
5. 채무현황 및 전망 .....	56
6. 중기지방재정계획 .....	56
제2절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분석 .....	58
1. 투자심사 대상현황 .....	58
2. 투자심사 결과현황 .....	70
<b>제4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b> .....	<b>79</b>
제1절 사전단계: 사업구상 및 계획수립 .....	81
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	81
2.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의뢰서 작성 .....	83
제2절 심사단계: 사전검토 및 위원회 심사 .....	86
1.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	86
2.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88
제3절 사후단계: 이행사항 점검 및 이력관리, 사후평가 .....	94
<b>제5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b> .....	<b>97</b>
제1절 공공투자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	99
1. 설문조사 개요 .....	99
2. 응답자 기초통계 .....	99
3. 인식조사 결과 .....	100
제2절 예산부서 투자심사 담당 공무원 인터뷰 .....	116
1. 실무심사 단계의 문제점 .....	116
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	117
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	119

<b>제6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b> .....	<b>121</b>
제1절 투자심사 사전단계 개선방안 .....	123
1.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강화 .....	123
2. 심사의뢰서의 객관성 및 완성도 제고 .....	125
제2절 투자심사 심사단계 개선방안 .....	127
1.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 .....	127
2. 위원회 전문성 강화 .....	128
3. 위원회 운영 내실화 .....	128
제3절 투자심사 사후단계 개선방안 .....	131
1. 이력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 철저 .....	131
2. 투자심사 결과의 예산연계 강화 및 공개 .....	132
3. 투자사업 사후평가 결과와 투자심사제도 연계방안 모색 .....	132
제4절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	134
 <b>참고문헌</b> .....	 <b>137</b>
 <b>부    록</b> .....	 <b>139</b>

## 표 차례

〈표 2-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법적근거 .....	11
〈표 2-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주요변화(1990년대) .....	13
〈표 2-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주요변화(2000년~2010년) .....	15
〈표 2-4〉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주요변화(2011년~2020년) .....	17
〈표 2-5〉 전체 투자심사 건수 및 금액(2015년~2019년) .....	20
〈표 2-6〉 지역별 투자심사 건수 및 금액(2015년~2019년) .....	22
〈표 2-7〉 분야별 심사대상 .....	23
〈표 2-8〉 중앙투자심사 건수 및 비율(2015년~2019년) .....	24
〈표 2-9〉 시도심사 건수 및 비율(2016년~2019년) .....	25
〈표 2-10〉 시군구 자체심사 건수 및 비율(2016년~2019년) .....	26
〈표 2-11〉 심사기관별 투자심사결과(2016년~2019년) .....	27
〈표 2-12〉 심사대상 투자사업 유형 .....	30
〈표 2-13〉 심사제외 대상사업 .....	30
〈표 2-14〉 중앙 및 시도 투자심사 일정 .....	33
〈표 2-15〉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기관 및 심사대상 기준 .....	35
〈표 2-16〉 인구100만 이상 시·군·구 심사대상 기준 .....	35
〈표 2-17〉 재심사 대상기준 .....	36
〈표 2-18〉 지방재정투자 심사기준 .....	38
〈표 2-19〉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	39
〈표 2-20〉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 .....	40
〈표 2-21〉 선행연구 정리 .....	45
〈표 3-1〉 수원시 예산규모 .....	51
〈표 3-2〉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	53
〈표 3-3〉 수원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	54
〈표 3-4〉 수원시 가용재원 현황 및 전망 .....	55
〈표 3-5〉 수원시 채무현황 및 전망 .....	56
〈표 3-6〉 중기지방재정계획 .....	57
〈표 3-7〉 투자심사 건수 .....	58

〈표 3-8〉 투자심사대상 총사업비 .....	60
〈표 3-9〉 심사시기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	62
〈표 3-10〉 심사유형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	63
〈표 3-11〉 사업 분야별 투자심사 대상현황(5개년 누적: 2016년~2020년) .....	64
〈표 3-12〉 사업규모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	66
〈표 3-13〉 심사대상 사업의 재원별 구성비 및 총사업비 .....	68
〈표 3-14〉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결과현황 .....	72
〈표 3-15〉 사업분야별 투자심사 결과현황(5개년 누적: 2016년~2020년) .....	73
〈표 3-16〉 사업규모별 투자심사 결과현황(5개년 누적: 2016년~2020년) .....	75
〈표 4-1〉 부적정/재검토 및 조건부 사유 .....	83
〈표 4-2〉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율(긍정평가) 현황(2016년~2020년 평균) .....	88
〈표 4-3〉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율(긍정평가) 현황 비교 .....	89
〈표 4-4〉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사업의 재상정 결과 .....	90
〈표 4-5〉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	90
〈표 4-6〉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사유 .....	90
〈표 4-7〉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	91
〈표 4-8〉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회의 당 심사건수 .....	93
〈표 5-1〉 응답자 기초통계 .....	100
〈표 5-2〉 재직기간별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 인식 .....	105
〈표 5-3〉 재직기간별 사업 이력관리 강화의 필요성 인식 .....	108
〈표 5-4〉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소요기간 .....	110
〈표 5-5〉 주요 쟁점별 지방재정투자심사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 .....	115
〈표 6-1〉 서울시 의뢰서 양식 중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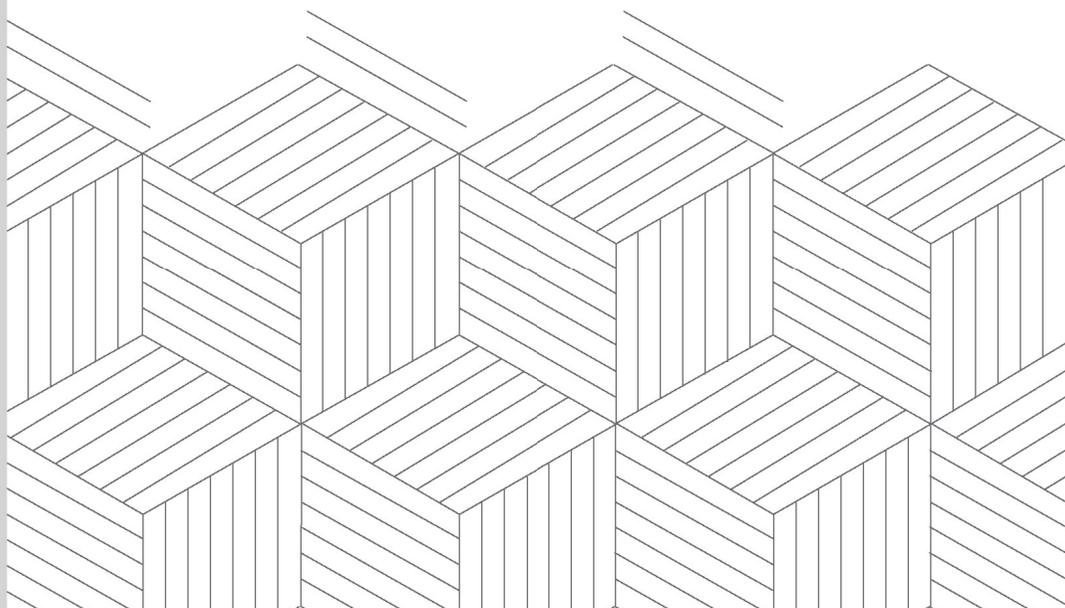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	6
〈그림 2-1〉 전체 투자심사 건수 및 금액(2015년~2019년) .....	21
〈그림 2-2〉 중앙투자심사 건수 및 비율(2015년~2019년) .....	24
〈그림 2-3〉 시도심사 건수 및 비율(2016년~2019년) .....	25
〈그림 2-4〉 시군구 자체심사 건수 및 비율(2016년~2019년) .....	26
〈그림 2-5〉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3년 평균 결과(2017년~2019년) .....	28
〈그림 2-6〉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	37
〈그림 2-7〉 투자심사 절차 .....	37
〈그림 2-8〉 연구의 분석틀 .....	47
〈그림 3-1〉 수원시 예산규모 .....	52
〈그림 3-2〉 수원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	54
〈그림 3-3〉 수원시 신규 가용재원 현황 .....	55
〈그림 3-4〉 투자심사 건수 .....	59
〈그림 3-5〉 투자심사대상 총사업비 .....	60
〈그림 3-6〉 사업 분야별 투자심사 현황(전국 vs. 수원시) .....	65
〈그림 3-7〉 재원구성별 현황: 비중 및 총사업비 .....	68
〈그림 3-8〉 재원구성별 사업 현황 .....	70
〈그림 3-9〉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결과현황 .....	72
〈그림 4-1〉 사전단계의 업무수행 절차 .....	81
〈그림 4-2〉 심사단계의 업무수행 절차 .....	86
〈그림 4-3〉 사후단계의 업무수행 절차 .....	94
〈그림 5-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인식 .....	101
〈그림 5-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목적 적합성 .....	101
〈그림 5-3〉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관대화 경향 .....	102
〈그림 5-4〉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 및 소통 .....	103

〈그림 5-5〉 의원들의 심의기간 충분성 .....	104
〈그림 5-6〉 위원회 심의 전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 .....	105
〈그림 5-7〉 사업 이력관리의 적절성 .....	106
〈그림 5-8〉 사업 이력관리 강화의 필요성 .....	107
〈그림 5-9〉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중요 고려요소 .....	109
〈그림 5-10〉 심사유형별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기간 박스플롯 .....	111
〈그림 5-11〉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참고자료 .....	112
〈그림 5-12〉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어려운 부분 .....	113
〈그림 5-13〉 투자심사 준비 시 문제사항 .....	113
〈그림 5-14〉 컨설팅 전문 지원조직의 필요성 .....	114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 도입된 제도이다(행정안전부, 2021).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심희철·김재환, 2019; 윤성일·김상기, 2020). 이처럼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투자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대내외적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공공투자 수요 확대와 함께 활발히 운영 중이며, 2019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자체심사, 시도 및 중앙의뢰심사) 건수는 6,812건, 심사금액은 76.6조원으로 최근 심사건수와 심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심사대상의 증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운영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국 시군구 자체심사 통과율이 99.2%에 달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이 낮고, 사업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미진하여 투자심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은 선심성, 중복적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투자심사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지방재정분권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수원시 역시 공공투자 수요의 확대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0년 간 총 303건의 투자 심사를 수행했으며 향후 지역경제의 활력제고 등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내외적 경제상황 악화, 코로나19, 지방재정제도 변화 등으로 각종 재정건전성 지표가 하락하고 신규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등 수원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원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로서 자치단체 규모에 걸맞은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중앙 및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한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 현황 및 제도운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투자사업 추진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나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현황파악과 구체적 분석은 전무했던 실정이다. 따라서 수원시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은 특례시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공공투자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분석,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투자심사제도 담당 공무원 및 투자심사위원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역량확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특례시 지위에 적합한 수원시 투자심사제도 확립에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 대상범위는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로 심사제도의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5년간 시행된 수원시 투자심사사업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 대상은 수원시 자체심사제도 중심이나 수원시 전체 투자심사 현황 파악 및 투자심사 기관별 비교를 위해 중앙투자심사 및 도투자심사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수원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분석,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법규 및 제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현황, 선행 연구 등에 대한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고, 수원시 내부 자료 및 투자심사 의뢰서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자료 분석,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각 단계(사전단계/심사단계/사후단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현황파악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와 수원시 예산부서 투자심사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심사제도에 대한 단계별,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 부터 2020년도까지 시행된 수원시 투자심사사업에 관한 수원시 내부자료, 수원시 자체심사 의뢰서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원시 투자심사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수원시 투자심사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가 자문과 투자심사 담당 예산부서 공무원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외 지방재정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련 통계포털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용·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과 방법을 바탕으로 수원시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결정체계 구축을 위한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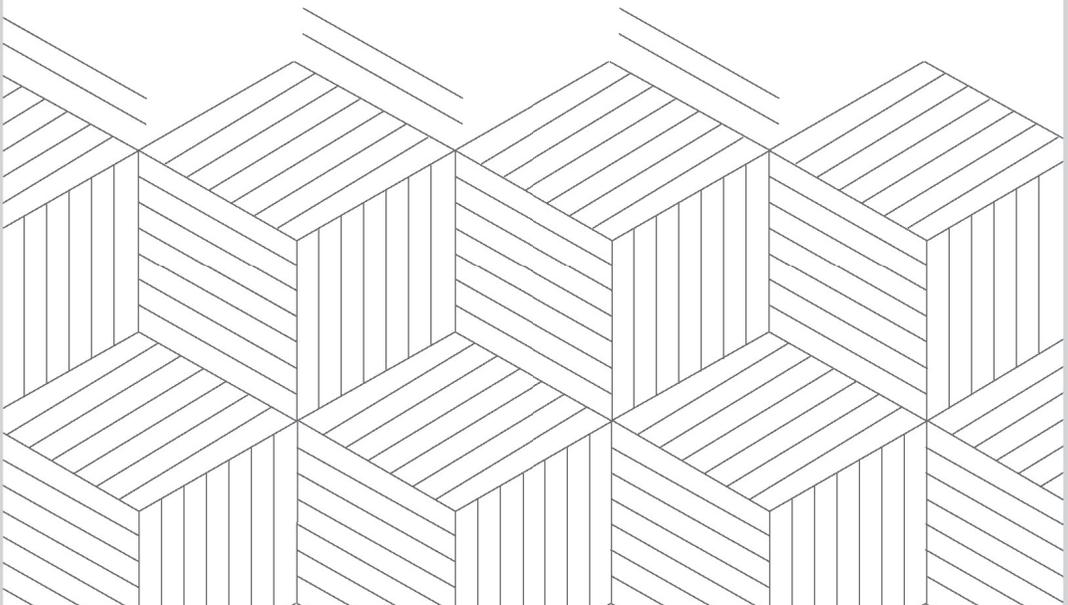
연구의 흐름		주요내용	연구방법
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배경 및 목적</li> <li>- 연구의 범위 및 방법</li> </ul>	문헌분석
2장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의의</li> <li>-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연혁과 현황</li> <li>-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내용</li> <li>-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li> </ul>	문헌분석
3장	수원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재정현황</li> <li>-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분석</li> </ul>	문헌분석 통계분석
4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실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사전단계 분석</li> <li>-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심사단계 분석</li> <li>-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사후단계 분석</li> </ul>	문헌분석 통계분석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5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li> <li>- 예산부서 투자심사 담당 공무원 인터뷰</li> </ul>	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심층 인터뷰
6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단계별 (사전-심사-사후) 개선방안</li> <li>-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향</li> </ul>	문헌분석 통계분석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

<그림 1-1> 연구 흐름도

## 제2장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제1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의의
- 제2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연혁과 현황
- 제3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내용
- 제4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 틀





## 제2장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제1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의의

##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념 및 특성

공공투자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민들의 수요와 편익 등을 고려하여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이용환·김진덕, 2015).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실시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행정안전부, 202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투자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추진체계, 자원조달 능력, 사업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계획성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이성근 외, 2006; 오세희·김민희, 2018; 심희철·김재환, 2019; 윤성일·김상기, 2020). 이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한 투자사업의 심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윤성일·김상기, 2020).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2.>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 자치단체 중기계획, 사업별 재정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행정안전부, 2020). 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함을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목적은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건전재정의 운영도모, 투자재원의 계획적 사용, 부실사업의 사전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효·조기현, 1996; 임성일, 1999; 조기현 외, 2012; 이희재, 2015; 윤성일·김상기, 2020). 첫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을 사전에 심사하여 과잉투자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자원 투자 등 한정된 투자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윤성일·김상기, 2020).

둘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투자재원이 계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을 연계하도록 하여 한정된 지방재정이 계획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투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셋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부실사업의 사전예방기능을 수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먼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한 투자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전적 관리제도라 볼 수 있다.

## 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법적근거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 관련된 법적근거에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표 2-1>과 같다.

「지방재정법」 제37조는 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주요 사업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2-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법적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p>제37조(투자심사)</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li> <li>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채무부담행위</li> <li>나. 보증채무부담행위</li> <li>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li> </ol> </li> </ol>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p>
지방재정법	<p>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p> <p>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p> <p>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p> <p>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p> <p>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li> <li>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li> </ol> <p>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p>

관련근거	주요내용
	<p>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lt;신설 2021. 1. 12.&gt;</p> <p>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p>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p> <p>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p> <p>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p> <p>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p> <p>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p> <p>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p> <p>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p> <p>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p> <p>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li> <li>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li> <li>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li> <li>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li> <li>6. 일자리 창출 효과 등</li> </ol>

## 제2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연혁과 현황

###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연혁

####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1990년대)

1992년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방지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하여 1990년대에는 두 번의 법령 재·개정이 단행되었다. 1994년 12월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지자체장이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1995년 5월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개정을 통해 심사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자체장이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표 2-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주요변화(1990년대)

시기	주요 변경 내용	비고
1994. 12. 22	• 지자체장은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	「지방재정법」제30조 ③·④ (‘94.12.22. 조문신설)
1995. 05. 16	• 심사대상 사업 구체화,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심사의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②~⑤ (‘95.05.16. 개정)

자료: 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2000년~2010년)

2000년에서 2010년 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1년 4월에는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시도 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중앙심사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재정관련 계획 수립 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정하였다. 동년 9월에는 중앙심사위원회(15인 이내)와 지방심사위원회(15인 이내)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가 투·용자하는 사업 등을 중앙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대상을 기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건축 관련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 한도가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2006년 3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사성사업의 총 사업비별 심사기관 기준을 시도 의뢰심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중앙 의뢰심사의 경우 1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으로 조정하였다.

2008년 8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투자사업, 행사성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별 심사기관 기준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시군구 자체 심사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시도심사 20억 원(서울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앙 심사 30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행사성사업의 경우 시군구 자체사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시도심사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중앙심사 3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하였다.

2009년 2월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을 시행 하더라도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 의무화 하도록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 하였다. 동 년도 11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 투·융자 심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시도의 경우 기존 20억 원(서울 30억 원) 이상에서 40억 원 이상으로, 시군구의 경우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다.

2010년 12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이 시행 되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이 시도의 경우 기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시군구의 경우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생략가능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동년 동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어 행사성사업의 자체심사 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에서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으로, 시군구의 경우 기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서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정기심사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였으며, 청사신축사업 투자심사 의뢰 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 첨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였다.

〈표 2-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주요변화(2000년~2010년)

시기	주요 변경 내용	비고
2001. 04.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시도 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중앙심사 200억 원 이상 사업범위 확대</li> <li>지방재정 관련 계획 등에 투자심사 결과 반영</li> </ul>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01.04.06. 개정)
2001. 0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심사위원회(15인 이내), 지방심사위원회(15인 이내) 설치</li> </ul>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0조의 3 ('01.09.15. 개정)
2002. 1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억 원 이상 행사성사업, 2 이상의 시·도 사업 등 중앙심사대상에 포함</li> </ul>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02.11.29. 개정)
2005.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투자 심사대상 확대(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li> <li>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임의사항)</li> <li>건축 관련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 한도상향(50억 원 이상 → 100억 원 이상)</li> </ul>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05.12.30. 전부개정)
2006. 0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단체 행사성사업의 총 사업비별 심사기관 구분(5억 원~10억 원 시도 의뢰심사, 10억 원 이상 중앙심사), 하반기 투자심사 일정 조정 등</li> </ul>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06.03.14. 개정)
2008. 0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투자사업): 시군구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시도 20억 원(서울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앙심사 300억 원 이상</li> <li>(행사성사업): 시군구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시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중앙심사 30억 원 이상</li> </ul>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08.08.14. 개정)
2009. 02.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은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의무화(시군구→시도, 시도→중앙)</li> </ul>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09.02.09. 개정)
2009. 11.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및 시군구 투·융자 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li> <li>(시도): 20억 원(서울 30억 원) 이상 → 40억 원 이상</li> <li>(시군구): 10억 원 이상 → 20억 원 이상</li> </ul>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09.11.02. 개정)
2010.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시도) 또는 5억 원 이상(시군구) → 5억 원 이상(시도) 또는 3억 원 이상(시군구)</li> <li>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생략</li> </ul>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10.12.20. 개정)
201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사성사업의 자체심사 범위 구체화</li> <li>(시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li> <li>(시군구):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li> <li>정기심사 횟수확대: 연 2회 → 연 3회</li> <li>청사신축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 첨부 의무화</li> </ul>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10.12.31. 개정)

자료: 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2011년~2020년)

2011년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3차례 법령 개정이 단행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4 조문을 신설하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제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였다.

동년 9월에는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 범위 확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 규모 구체화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문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여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를 구체화 하였다.

2013년 6월에는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하향조정,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업 심사제외 대상 축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5월에는 투·융자심사라는 용어를 투자심사로 변경하는 「지방재정법」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동법을 개정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동년 11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동년 동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조문을 신설 및 개정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부령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기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3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확대 하되,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하는 심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단행되었다.

2015년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 심사 기준 상향, 투자심사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 포함,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기간·비용·방법에 대한 내용 규정 및 시군구의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일 조정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였다.

2016년 3월에는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조문을 개정하였다. 또한 동년 6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시군구 및 시도의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2017년에는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시·군·구 자체심사 기준 상향, 투자심사 의뢰심사 횟수 조정, 투자심사 시 「일자리창출」 항목 신설,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조인·권고' 실시,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투자심사제외 대상 사업을 확대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 하였으며, 2020년 9월에는 동 규칙 개정을 통해 투자심사 제외사업 정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횟수 확대, 재심사 대상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완화하였다.

〈표 2-4〉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주요변화(2011년~2020년)

시기	주요 변경 내용	비고
2011. 03.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 제한</li> <li>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편성 불가</li> </ul>	「지방재정법」 제55조의4 ('11.03.08. 조문신설, '12.01.01. 시행)
2011. 09.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대상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시도) 또는 3억 원 이상(시군구)</li> </ul> </li> <li>재정위기단체의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 규모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시도) 또는 20억 원 이상(시군구)</li> </ul> </li> </ul>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 65조의 4 ('11.09.06. 개정 및 조문신설)
2011. 09.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심사: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li> <li>- 시도 심사: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li> <li>- 중앙심사: 30억 원 이상</li> </ul> </li> </ul>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11.09.29. 개정)
2013. 06.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300억 원 이상 → 200억 원 이상</li> <li>- 시군구: (시도)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40억원 이상~100억 원 미만, (중앙) 300억 원 이상 → 100억 원 이상</li> </ul> </li> <li>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li> <li>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신축사업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시군구→시도, 시도→중앙)</li> <li>「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사업의 심사제외 대상 축소</li> <li>동법에 따른 모든 사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li> </ul>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안전행정부령, '13.06.05. 개정)

시기	주요 변경 내용	비고
2014.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어 변경(투·융자심사 → 투자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대상에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의 채무부담 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결도 포함</li> <li>-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 의무화(제37조의제2항)</li> <li>-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규정(제37조의제2항)</li> <li>-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촉,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를 초과할수 없음</li> </ul> </li> <li>•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계획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li> </ul>	「지방재정법」(‘14.05.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2014.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이사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10억 →40억, 시군구 5억 → 20억으로 상향</li> </ul>	「지방재정법 시행령」(‘14.11.28. 개정 ‘14.11.29. 시행)
2014.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령 명칭변경(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투자심사 횟수: 3회 → 4회로 확대</li> <li>- 재심사 기준: 기존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30% 증가 사업으로 확대,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 증가한 사업 재심사 대상</li> </ul> </li> <li>•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소하천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추가</li> <li>• 타당성 조사 제출서류, 절차,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제외 대상 등 추가</li> </ul>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14.11.28 개정 및 조문신설, ‘14.11.29 시행)
2015.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체심사 기준 상향(40억 → 100억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전년도 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li> </ul> </li> <li>•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 포함</li> <li>• 사업 추진 단계별 핵심 정보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하는 투자사업이력관리제도 도입</li> <li>• 타당성 조사기간, 비용, 방법에 대한 내용규정</li> <li>• 시군구의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기일 조정</li> </ul>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15.12.24 개정 및 조문신설, ‘15.12.24 시행)
2016. 0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 근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 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 의뢰하는 경우</li> <li>-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 왜곡 또는 주요 자료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li> <li>-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li> <li>-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점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li> </ul>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16.03.30 개정 및 시행)
2016. 0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성사업 자체심사 기준 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당초) 3억~5억 → (개정) 1억~3억</li> <li>- 시도: (당초) 5억~30억 → (개정) 3억~30억</li> </ul> </li> </ul>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16.06.30 개정 및 시행)

시기	주요 변경 내용	비고
2017.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200억 원 이상 → 300억 원 이상</li> <li>- 시군구: (시도) 4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 6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중앙) 100억 원 이상 → 200억 원 이상</li> <li>- 인구 100만 이상인 시·군·구 투자심사 기준금액 상향 · 자체심사: 20억~200억 원 미만(전액 자체재원) 상향</li> </ul> </li> </ul>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7.12.29 개정 및 시행)
2017.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의뢰심사 횟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 수시심사 유지</li> </ul> </li> <li>• 투자심사 「일자리 창출」 항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 시 고용효과 검토</li> </ul> </li> <li>•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조언·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조언 및 권고 실시</li> </ul> </li> <li>•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등에 대한 근거 마련</li> <li>•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정기의뢰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 유지</li> </ul>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7.12.29 개정 및 시행)
2019. 0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li> <li>- 국제행사 개최 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li> <li>-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li> <li>-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li> </ul> </li> </ul>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9.05.17 개정 및 시행)
2020. 0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제외 사업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제외되는 사업으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가</li> <li>- 지적재조사 사업 및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제외</li> </ul> </li> <li>• 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3회에서 매년 4회로 확대 실시</li> <li>- (투자심사) 3월, 6월, 10월 ⇒ 2월, 5월, 8월, 10월</li> <li>- (타당성조사) 3월, 6월, 10월 ⇒ 1월, 4월, 7월, 10월</li> </ul> </li> <li>•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 재원의 50%까지 확대 및 특례* 신설</li> <li>*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li> <li>-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이 4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li> </ul> </li> </ul>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0.09.11 개정, 20.11.01 시행)

자료: 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 1) 전체 투자심사<sup>1)</sup>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자체심사와 시도 의뢰심사, 그리고 중앙 의뢰심사를 포함한 전체 투자심사 건수와 심사금액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세를 살펴보면 심사 건수와 심사금액이 201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투자심사 건수는 총 3,150건이며, 심사금액은 62.73조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전체 투자심사 건수는 전년대비 29.3% 증가한 4,073건이며 심사금액은 전년대비 22.3% 감소한 48.74조 원이었다. 2017년도 전체 투자심사 건수는 전년대비 19.1% 증가하여 4,851건이며, 심사금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49.83조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전체 투자심사 건수는 작년대비 0.8% 증가한 4,888건이며, 심사금액은 전년대비 21.8% 증가한 60.7조 원이었다. 2019년도 전체 투자심사 건수는 전년대비 39.4% 증가한 6,812건이며 심사금액은 전년대비 26.2% 증가한 76.6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투자심사 건수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심사금액의 경우는 2016년에 전년대비 대폭 하락 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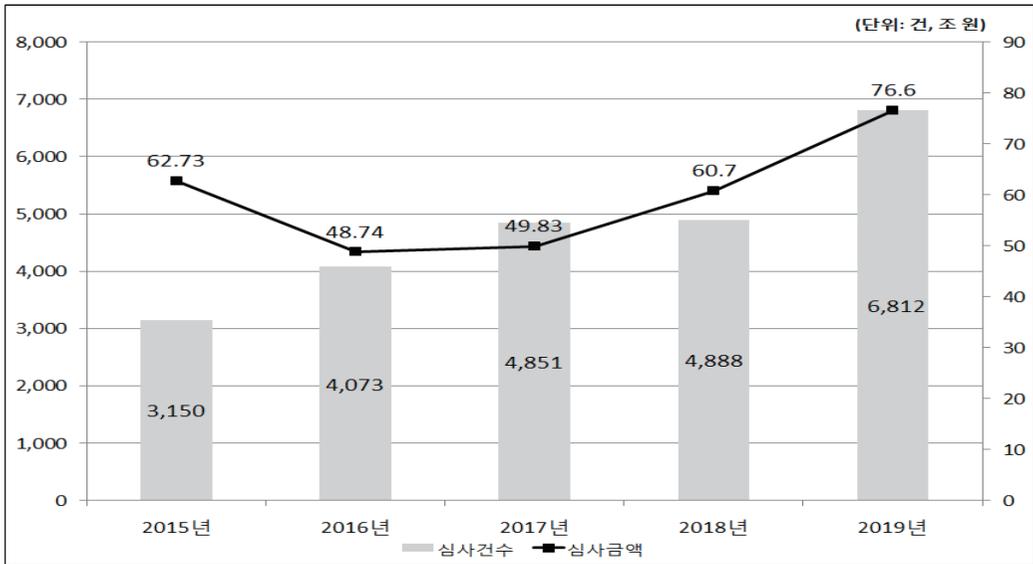
〈표 2-5〉 전체 투자심사 건수 및 금액(2015년~2019년)

(단위: 건, 조 원, %)

연도	심사건수(증가율)	심사금액(증가율)
2015년	3,150	62.73
2016년	4,073(29.3)	48.74(-22.3)
2017년	4,851(19.1)	49.83(2.2)
2018년	4,888(0.8)	60.7(21.8)
2019년	6,812(39.4)	76.6(26.2)

자료: 윤성일·김상기(2020)에서 재구성

1) 전체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심사, 시도 의뢰심사, 중앙 의뢰심사를 모두 포함한다.



〈그림 2-1〉 전체 투자심사 건수 및 금액(2015년~2019년)

전체 투자심사에 대한 지역별 심사건수와 심사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도의 경우 심사건수 기준으로 경기도가 1,0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원 485건, 경북 478건, 경남 438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사금액의 경우는 역시 경기도가 118,33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66,240억 원, 경남 35,677억 원, 경북 34,670억 원 순을 보였다. 세종시의 경우 심사건수(14건)뿐 아니라 심사금액(2,595억 원) 또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전체 투자심사의 평균 심사금액은 102.7억 원이며 이보다 평균 심사금액이 적게 나타난 지역은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전북, 경북, 전남, 강원 등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도의 경우 심사건수 기준으로 경기도 1,050건, 강원 478건, 경남 477건, 경북 44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사금액의 경우는 경기도 137,706억 원, 서울 111,531억 원, 인천 56,473억 원, 경남 40,874억 원 순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심사건수(24건)뿐 아니라 심사금액(4,312억 원) 또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전체 투자심사의 평균 심사금액은 124.2억 원이며 이보다 평균 심사금액이 적게 나타난 지역은 충북, 부산, 경남, 전남, 울산, 충남, 경북, 강원, 전북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는 전체 심사건수 기준으로 경기도 1,357건, 경남 682건, 경북 673건, 강원 614건 순을 보였으며, 심사금액의 경우는 경기도 161,710억 원, 서울 133,356억 원, 경남 65,132억 원, 경북 44,804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는 2017년,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심사건수(36건)뿐 아니라 심사금액(6,039억 원) 또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전체 투자심사의 평균 심사금액은 112.4억 원이며 이보다 평균 심사금액이 적게 나타난 지역은 울산, 경남, 인천,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강원, 경북 등이었다.

〈표 2-6〉 지역별 투자심사 건수 및 금액(2015년~2019년)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심사건수	심사금액	평균 심사금액	심사건수	심사금액	평균 심사금액	심사건수	심사금액	평균 심사금액
서울	342	66,240	193.7	321	111,531	347.4	435	133,356	306.6
부산	195	20,692	106.1	159	15,426	97.0	288	42,559	147.8
대구	109	12,103	111.0	167	24,912	149.2	199	26,173	131.5
인천	184	27,332	148.5	185	56,473	305.3	261	24,488	93.8
광주	79	15,314	193.8	61	9,666	158.5	139	18,239	131.2
대전	74	18,378	248.4	48	11,212	233.6	92	28,661	311.5
울산	141	13,116	93.0	114	9,089	79.7	119	12,811	107.7
세종	14	2,595	185.4	24	4,312	179.7	36	6,039	167.8
경기	1,027	118,338	115.2	1,050	137,706	131.1	1,357	161,710	119.2
강원	485	26,302	54.2	478	32,801	68.6	614	42,046	68.5
충북	265	24,197	91.3	257	26,531	103.2	375	34,298	91.5
충남	281	25,283	90.0	290	22,533	77.7	415	35,532	85.6
전북	299	22,075	73.8	282	19,217	68.1	442	32,084	72.6
전남	347	23,275	67.1	369	29,889	81.0	535	40,815	76.3
경북	478	34,670	72.5	443	33,495	75.6	673	44,804	66.6
경남	438	35,677	81.5	477	40,874	85.7	682	65,132	95.5
제주	93	12,698	136.5	163	21,299	130.7	150	17,247	115.0
합계	4,851	498,285	102.7	4,888	606,965	124.2	6,812	765,993	112.4

자료: 윤성일·김상기(2020)에서 재구성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투자심사에 대한 분야별 심사대상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도 심사건수 기준으로 문화 및 관광 829건, 수송 및 교통 713건, 국토 및 지역개발 38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사금액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303,013억 원, 수송 및 교통 87,749억 원, 문화 및 관광 78,683억 원 순을 보였다. 2016년도 심사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1,483건, 수송 및 교통 799건, 국토 및 지역개발 40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사금액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149,850억 원, 수송 및 교통 95,589억 원, 문화 및 관광 75,844억 원 순이었다. 2017년도 심사건수 기준으로 문화

및 관광 1,585건, 수송 및 교통 1,125건, 국토 및 지역개발 512건 순이며, 심사금액 기준으로는 수송 및 교통 127,56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3,266억 원, 문화 및 관광 89,441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도는 심사건수 기준으로 문화 및 관광 1,452건, 수송 및 교통 1,165건, 국토 및 지역개발 454건 순을 보였으며, 심사금액 기준으로는 수송 및 교통 211,38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1,071억 원, 문화 및 관광 82,559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도의 경우 심사건수 기준, 문화 및 관광 2,231건, 수송 및 교통 1,294건, 국토 및 지역개발 645건 순이었으며, 심사금액 기준의 경우는 수송 및 교통 176,916억 원, 문화 및 관광 129,40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8,10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에 따라 순위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대개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의 심사건수와 심사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7〉 분야별 심사대상

(단위: 건, 억 원)

분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일반공공행정	203	27,654	247	40,930	326	27,108	298	38,054	470	61,379
공공질서 및 안전	33	5,240	39	4,339	37	4,976	44	4,581	42	4,528
교육	38	4,163	46	2,569	56	4,383	199	7,857	269	13,816
문화 및 관광	829	78,683	1,483	75,844	1,585	89,441	1,452	82,559	2,231	129,402
환경보호	241	34,158	199	20,411	200	33,738	202	22,034	261	35,586
사회복지	164	28,098	212	23,392	307	26,530	265	23,835	434	74,090
보건	26	2,491	40	7,857	60	4,874	47	4,058	50	4,416
농림해양수산	323	22,264	388	25,476	368	24,179	404	30,629	609	54,310
산업 및 중소기업	178	30,279	261	37,318	248	44,633	339	46,693	471	78,977
수송 및 교통	713	87,749	799	95,589	1,125	127,567	1,165	211,385	1,294	176,916
국토 및 지역개발	384	303,013	406	149,850	512	103,266	454	131,071	645	128,106
과학기술 등 기타	18	3,534	19	3,866	27	5,590	19	4,209	36	4,468
합계	3,150	627,320	4,073	487,441	4,851	498,285	4,888	606,965	6,812	765,994

자료: 윤성일·김상기(2020)에서 재구성

## 2) 중앙투자심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투자 심사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도 447건, 2016년 533건, 2017년 592건, 2018년에 372건, 2019년 497건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심사 건수가 계속 증가하다 2018년 대폭 감소한 이후 2019년도의 경우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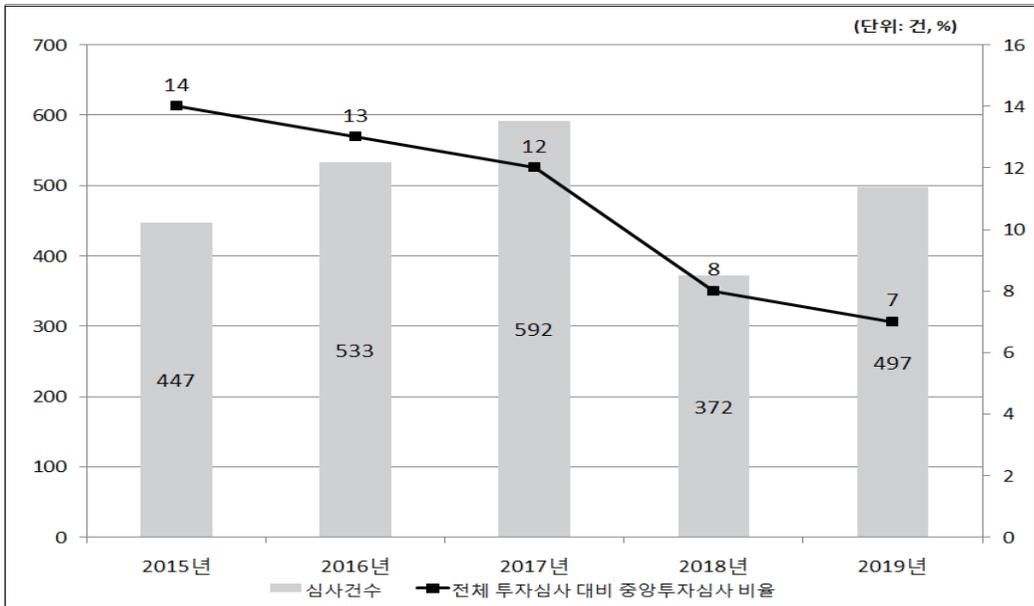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투자심사 대비 중앙투자심사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14%, 2016년 13%, 2017년 12%, 2018년 8%, 2019년 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중앙투자심사 건수 및 비율(2015년~2019년)

(단위: 건, %)

연도	심사건수	전체 투자심사 대비 중앙투자심사 비율
2015년	447	14
2016년	533	13
2017년	592	12
2018년	372	8
2019년	497	7

자료: 윤성일·김상기(2020)에서 재구성



〈그림 2-2〉 중앙투자심사 건수 및 비율(2015년~2019년)

### 3) 시도 및 시군구 심사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시도심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341건, 2017년 1,603건(전년대비 20% 증가), 2018년 1,637건(전년대비 2% 증가), 2019년 2,331건(전년대비 42% 증가)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심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심사 대비 시도심사 비율 역시 2016년 32.9%, 2017년 33.0%, 2018년 33.5%, 2019년 3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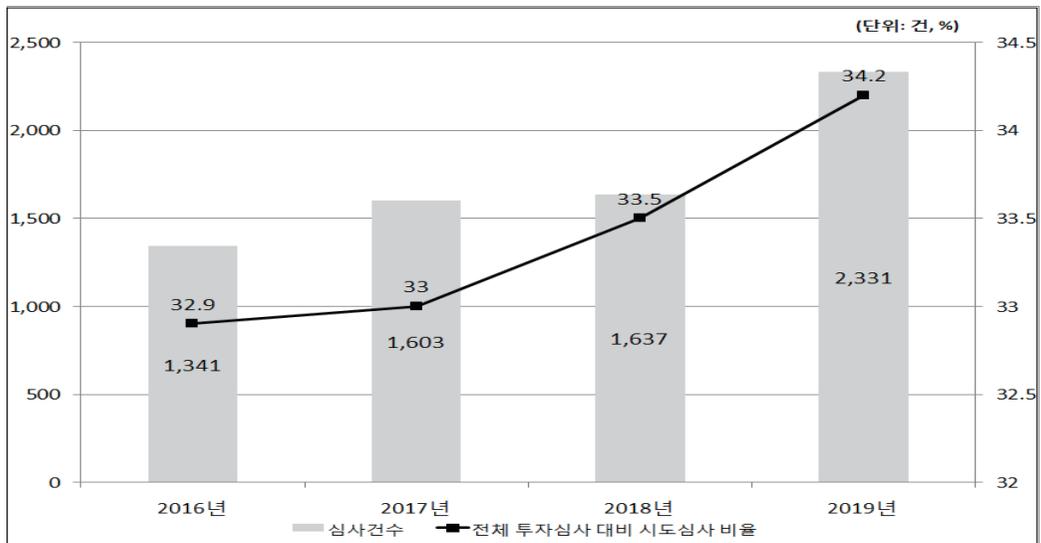
1개 기관 당 시도심사 평균 심사건수<sup>2)</sup>는 2016년 78.9건, 2017년 94.3건, 2018년 96.3건, 2019년 137.1건으로 나타났다.

〈표 2-9〉 시도심사 건수 및 비율(2016년~2019년)

(단위: 건, %)

연도	심사건수	전체 투자심사 대비 시도심사 비율	1개 기관 당 시도심사 평균 심사건수
2016년	1,341	32.9	78.9
2017년	1,603	33.0	94.3
2018년	1,637	33.5	96.3
2019년	2,331	34.2	137.1

자료: 윤성일·김상기(2020)에서 재구성



〈그림 2-3〉 시도심사 건수 및 비율(2016년~2019년)

2) 1개 기관 당 시도심사 평균 심사건수는 시도심사 건수를 17개 시도로 나누어 구하였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시군구 자체심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199건, 2017년 2,656건(전년대비 21% 증가), 2018년 2,879건(전년대비 8% 증가), 2019년 3,984건(전년대비 38% 증가)으로 심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심사 대비 시군구 자체심사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54.0%, 2017년 54.8%, 2018년 58.9%, 2019년 58.5%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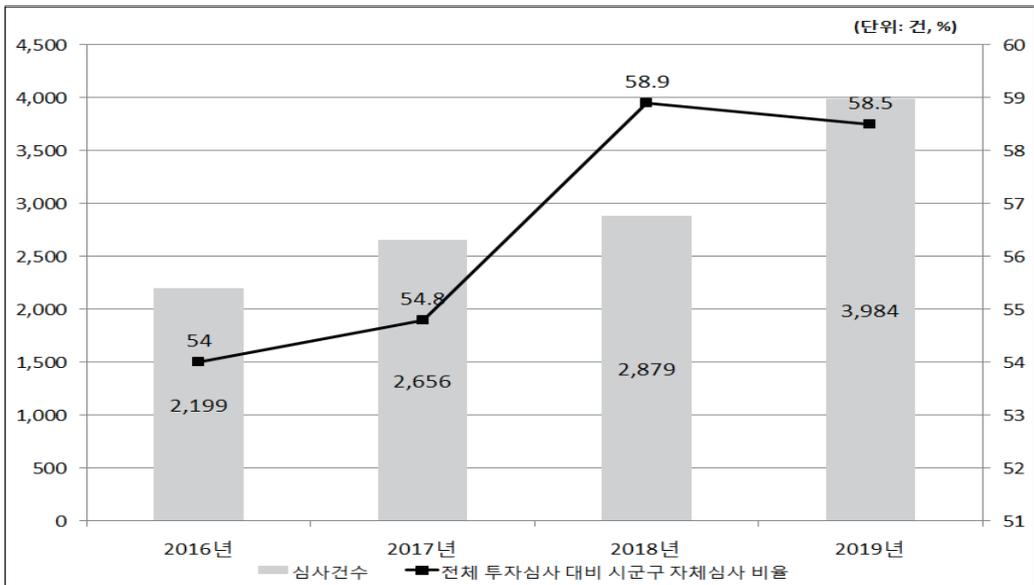
1개 기관 당 시군구 자체심사 평균 심사건수<sup>3)</sup>는 2016년 9.7건, 2017년 11.8건, 2018년 12.7건, 2019년 17.6건으로 나타났다.

〈표 2-10〉 시군구 자체심사 건수 및 비율(2016년~2019년)

(단위: 건, %)

연도	심사건수	전체 투자심사 대비 시군구 자체심사 비율	1개 기관 당 시군구 자체심사 평균 심사건수
2016년	2,199	54.0	9.7
2017년	2,656	54.8	11.8
2018년	2,879	58.9	12.7
2019년	3,984	58.5	17.6

자료: 윤성일·김상기(2020)에서 재구성



〈그림 2-4〉 시군구 자체심사 건수 및 비율(2016년~2019년)

3) 1개 기관 당 시군구 자체심사 평균 심사건수는 시군구 자체심사 건수를 226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구하였다.

#### 4) 투자심사 결과

2017년도부터 2019도까지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 투자심사 건수 대비 적정과 조건부를 합한 통과율은 90.7%로 나타났다. 심사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심사의 통과율은 71.3%, 시도심사 84.0%, 시군구 자체심사 99.1%로 확인되었다. 2018년도의 경우는 전체 투자심사 건수 대비 적정과 조건부를 합한 통과율은 93.2%로 나타났으며 심사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심사 71.0%, 시도심사 88.8%, 시군구 자체심사 98.6%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투자심사 건수 대비 적정과 조건부를 합한 통과율은 94.8%였으며, 중앙심사 통과율은 78.7%, 시도심사 통과율 90.7%, 시군구 자체심사 통과율 99.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 3개년도 투자심사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심사 건수 대비 적정과 조건부를 합한 통과율은 93.1%로 나타났으며, 중앙심사 통과율 73.7%, 시도심사 통과율 88.2%, 시군구 자체심사 통과율 99.0%로 중앙심사에서 시군구 자체심사로 갈수록 통과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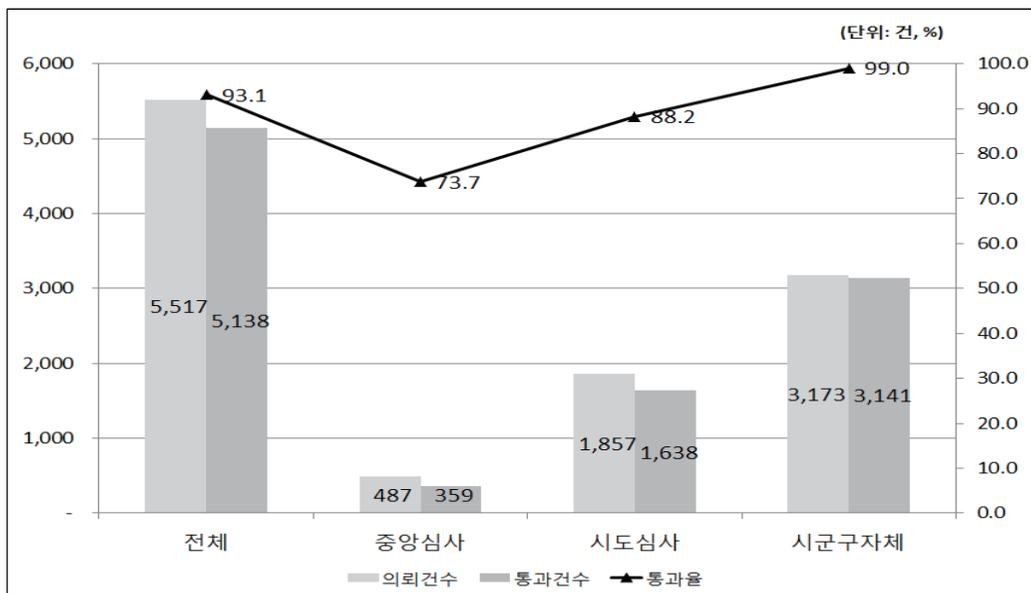
〈표 2-11〉 심사기관별 투자심사결과(2016년~2019년)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의뢰 건수	통과 건수 <sup>1)</sup>	통과율	의뢰 건수	통과 건수 <sup>1)</sup>	통과율	의뢰 건수	통과 건수 <sup>1)</sup>	통과율	의뢰 건수	통과 건수 <sup>1)</sup>	통과율	
건수	계	4,851	4,400	90.7	4,888	4,556	93.2	6,812	6,459	94.8	5,517	5,138	93.1
	중앙심사	592	422	71.3	372	264	71.0	497	391	78.7	487	359	73.7
	시도심사	1,603	1,346	84.0	1,637	1,454	88.8	2,331	2,115	90.7	1,857	1,638	88.2
	시군구심사	2,656	2,632	99.1	2,879	2,838	98.6	3,984	3,953	99.2	3,173	3,141	99.0

주: 통과건수는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판정의 합으로 산정

자료: 윤성일·김상기(2020)에서 재구성



〈그림 2-5〉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3년 평균 결과(2017년~2019년)

### 제3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내용

#### 1.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대상은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sup>4)</sup>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이다.<sup>5)</sup>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범위는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으로 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투자심사를 실시한다.<sup>6)</sup>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 유형은 일반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투자사업은 세출예산서의 투자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행사성 사업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으로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가 포함된다. 홍보관 사업은 자치단체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이며, 총사업비 산정 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로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관련 법률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sup>7)</sup>로 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4) 총사업비는 공사비(낙찰차액미적용),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구입비 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 등), 제세공과금, 예비비(공사비+보상비+설비비+용역비+제세공과금의 10%)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5)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며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도 포함되고 있다.

6) 다만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다.

7)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이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sup>8)</sup>

〈표 2-12〉 심사대상 투자사업 유형

유형	내용
일반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 구조변경, 시설물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li> <li>부동산, 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서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포함(R&amp;D 사업 등)</li> </ul>
행사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으로 시·도·군·구민의 날 행사, 공연·축제·문화행사, 위로·위문행사, 공청회, 설명회, 보고회, 각종 체육행사, 교양강좌, 기념행사,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등(국가 주관행사로써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행사 제외)</li> <li>시설물, 구조물 등을 설치·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 포함</li> </ul>
홍보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의 영구, 단독 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 설치하는 경우(예. 홍보관, 전시관 등)</li> <li>복합시설물인 경우 홍보관이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li> <li>총사업비 산정 시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포함하여 산정</li> </ul>
청사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부대시설물</li> <li>복합시설물인 경우 청사가 연면적의 25%이상이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li> </ul>
문화체육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제외) 해당</li> <li>복합시설물인 경우 문화체육시설이 연면적의 75%이상이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li> </ul>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li> <li>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업</li> <li>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입확약, 토지, 리턴제 확약 등이 해당</li> <li>총사업비 산정 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 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2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과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13〉과 같다.

〈표 2-13〉 심사제외 대상사업

구분	내용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행정안전부령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li> <li>「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li> <li>「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sup>주1</sup></li> </ul>

8) 최초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 후 금액증액, 기간연장 등 지방의회 재의결 요청시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구분	내용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li> <li>•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li> <l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사업</li> <li>•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 센터의 건축사업(복합시설은 제외함)</li> <li>•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를 개수 또는 보수하는 사업,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사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li> <li>•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sup>2</sup> 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li> <li>• 총 사업비<sup>3</sup>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li> <li>•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및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li> <li>•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li> <li>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li> <li>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li> <li>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발기반정리 사업</li> <li>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li> <li>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li> <li>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li> <li>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li> <li>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li> <li>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li> <li>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li> <li>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li> <li>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li> <li>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li> <li>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li> </ol> </div>

구분	내용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li> <li>•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li> <li>•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li> <li>•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sup>주4</sup></li> <l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li> </ul>

주1: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으로 사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주2: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주3: 공유재산, 용역비 등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  
 주4: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을 한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2.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투자심사 의뢰시기는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이며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를 의뢰 한다.<sup>9)</sup> 행사성 경비의 경우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하며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 반복적 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3년마다 심사 실시하여야 한다.<sup>10)</sup> 국비보조를 요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후 심사의뢰(심사결과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 의뢰서’에 붙임으로 첨부) 한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sup>11)</sup>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심사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을 심사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가 가능하다.<sup>12)</sup>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이며,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9)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한다.  
 10)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이 된다.  
 11)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모에 응모를 하려면 지방재정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사업우선순위표 등을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중앙 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표 2-14〉 중앙 및 시도 투자심사 일정

구분	의뢰	심사
제1차	1. 1(전년도 12. 15) 까지	2월 말일 까지
제2차	3. 31(3. 15) 까지	5월 31일 까지
제3차	6. 15(5. 31) 까지	8월 15일 까지
제4차	8. 25(8. 10) 까지	10월 25일 까지

주1: 심사는 4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주2: ( )안은 시·도 의뢰심사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3. 투자대상 심사기관 및 심사대상 기준

지방재정투자심사 기관은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된다. 자치단체별 자체심사는 시군구 자체심사와 시도별 자체심사로 구분될 수 있다.

시군구 자체심사는 전액 자체재원<sup>13)</sup>(지방채 제외)인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3) 자체재원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비와 상급기관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조정교부금(보통, 특별)이 포함, 재원부담 주체가 민간자본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지방비(자체재원)로 대체, 지자체에서 자체 조성된 기금이라 하더라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을 융자(내부거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금은 지방채로 본다.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원의 구성과 관계없는 사업으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홍보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도 자체심사는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과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원의 구성과 관계없는 홍보관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의뢰심사는 시도 및 중앙 의뢰심사로 구분된다. 시도심사의 경우 전액 자체 재원이 아닌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이 해당되는데 다만, 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군·구의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한다. 또한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시·군·구의 청사 신축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이 해당된다.

중앙 의뢰심사는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시도의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대상이 된다. 또한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시군구의 이전재원이 포함된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주체 및 심사기관 판단은 지방채,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지방채, 민간자본 등)은 모두 이전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 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한다.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는 총사업비 개념 기준으로 주체를 판단한다.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는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가 된다.

〈표 2-15〉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기관 및 심사대상 기준

구분	사업유형	심사기관		
		자체심사	의뢰심사	
			시도 (시군구→시도)	중앙 (시도/시군구→중앙)
시군구 (기초)	일반투자사업	20억 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	-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홍보관 사업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	-	20억 원 이상	200억 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20억 원 이상	200억 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
시도 (광역)	일반투자사업	40억 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	-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0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30억 원 이상
	홍보관 사업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30억 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	-	-	40억 원 이상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	40억 원 이상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표 2-16〉 인구100만 이상 시·군·구 심사대상 기준

구분	사업유형	자체심사	도심사 (도 예산 담당관)	중앙심사 (행안부 재정정책과)	비고
투자사업	이전재원 포함	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200억 원 이상	
	청사, 문화·체육시설	-	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자체사업 <sup>주1</sup>	20억 원 이상	-	-	전액자체재원 (지방채 제외)
	청사, 문화·체육시설	-	20억 원 이상	-	
	차관 도입사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해외 투자사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시군구 공동사업	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20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홍보관 사업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주: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한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조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사업들은 2단계 심사 혹은 재심사의 대상이 된다. 2단계 심사는 당초 심사 및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 등이 예견되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 번 더 심사하는 제도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심사 시 조건에 2단계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해당된다.<sup>14)</sup>

재심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의해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사업지연, 자원계획 변경, 사업부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심사 시기는 실시 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심사하고,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 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한다.

〈표 2-17〉 재심사 대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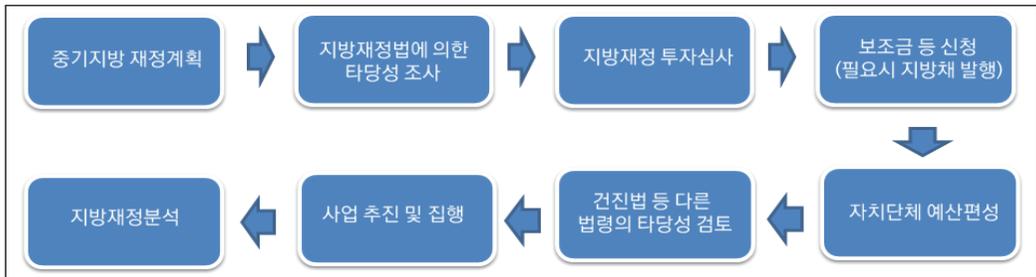
재심사 대상	내 용
사업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li> <li>-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li> <li>※ 산출식: (심사 당시 총 사업비 - 500억 원) × 20/100 + 150억 원</li> </ul>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 이상 늘어난 사업</li> <li>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50%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li> <li>※ 시도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 범위는 60%</li> </ul>
사업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심사 후 다음년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 한 사업</li> </ul>
자원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기관이 자체심사 → 의뢰심사 또는 시·도 의뢰심사 → 중앙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li> </ul>
사업부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 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li> <li>*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li> </ul>
감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4) 이 경우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공사계약과 관련 없는 설계비, 보상비 등 집행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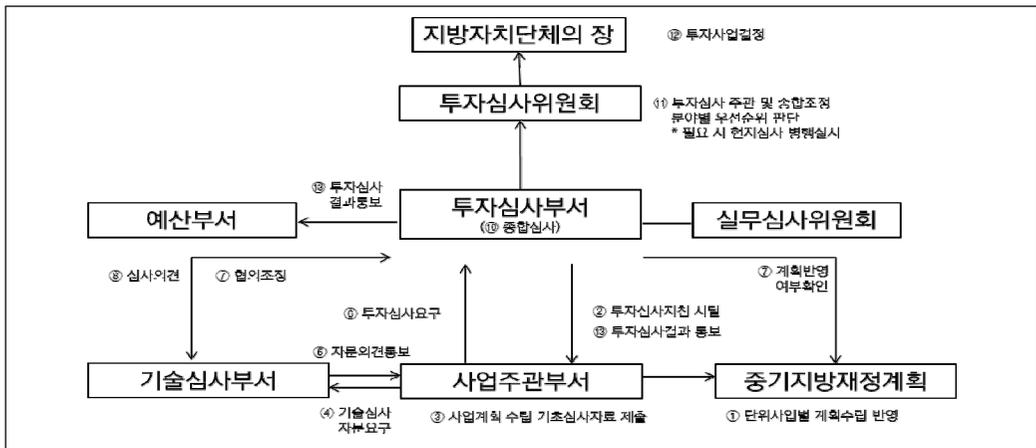
#### 4.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투자심사 절차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해당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sup>15)</sup>에 반영한 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보조금 등 신청 및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 예산편성, 타 법령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 및 집행, 지방재정 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는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실시된다.<sup>16)</sup>



자료: 행정안전부(202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그림 2-6〉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 행정안전부(202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그림 2-7〉 투자심사 절차

- 15)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가능하다.
- 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절차는 자치단체의 사업주무실·과 또는 사업소에서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업주무실·과 등에서 단위사업별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부서는 당해 투자사업의 관련부서 공무원과 심사부서 공무원으로 실무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실무심사를 수행한다. 사전실무심사에서는 기초심사 자료작성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실무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타당성이 명백하게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투자심사 대상사업들을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심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따른다.

### 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및 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사업규모·사업비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분석이 이루어진다.

심사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2-18>과 같다.

<표 2-18> 지방재정투자 심사기준

투자심사기준	내용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li> <li>•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li> <li>•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 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li> </ul>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li> <li>•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li> </ul>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사업 해당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li> <li>• 지방비부담 (또는 확보) 능력</li> <li>•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li> <li>• 민자 확보 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li> </ul>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li> <li>•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li> </ul>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li> <li>•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li> </ul>

투자심사기준	내용
주민숙원·수해도 및 사업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해를 받는 지역 및 주민수</li> <li>• 사업요구도는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을 대비 (예) 도로 포장율, 인구증가율, 상·하수도 보급률 등</li> <li>• 일자리 창출 효과 : 직접·간접고용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li> </ul>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해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 여부 검토</li> <li>• 앞으로의 수요추세 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li> </ul>
종합적인 평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기초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기관 승인, 영향평가실시 등 사업시행 사전절차 이행여부</li> <li>-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금 지급상황 등 사업착수준비</li> <li>- 연관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의 추진 또는 진행상황</li> </ul> </li> <li>• 기타 국내·외 경기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 등</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의 4종류로 분류된다. 적정 판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건부 추진 판정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이다. 재검토 판정은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부적정 판정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사 결과 중 적정 혹은 조건부 추진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이 통과되는 경우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투자심사의 결과는 투자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 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9〉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결과	내용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가 진행되는데 이는 자치단체별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투자 심사 결과 사후 평가는 매년 1회, 시·도 및 시·군·자치구

대상으로 자치단체 교차평가 또는 자체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후평가 대상사업은 최근 3개년 투자심사사업이며 주요 평가항목은 예산반영율,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 재검토·부적정 사업 예산반영률, 조건부사업 조건이행율, 2단계 심사 이행여부,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 등이다.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를 위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투자심사결과 반영 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한 자치단체에는 재정패널티 부여 등 제재조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0〉 투자심사 결과 사후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

구분		내용
평가개요	평가지기	• 매년 1회
	평가방법	• 자치단체 교차평가 또는 자체평가
	대상기관	• 시·도 및 시·군·자치구
	주요평가항목 (예시)	• 예산반영율(예산반영건수·예산액/적정심사 건수·금액)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미심사 건수·금액/당해연도 예산총액) • 재검토·부적정 사업 예산반영율(예산반영 건수·금액/심사건수·금액) • 조건부 사업 조건이행율(조건이행 건수·금액/조건부 사업 수·금액) 등 • 2단계심사 이행여부(2단계심사 대상 건수·금액) • 총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 재심사 이행여부(재심사 대상 건수·금액)
	평가대상사업	• 최근 3개년 투자심사사업
평가단 구성		•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 평가실시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투자심사결과 반영 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한 자치단체는 재정패널티 부여 등 제재조치 부여

자료: 행정안전부(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한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사후적으로 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사업의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sup>17)</sup> 이력관리 제도란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및 완료, 운영 등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운영손실 과다, 지방재정법령 위배 등의 문제를 관리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투자사업 단계별 사업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투자심사에 통과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17)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는 이력사업 대상사업 범위를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적정 및 조건부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또는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 제4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 틀

###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앙 혹은 시도의 투자심사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진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 현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심사 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하혜수 외, 1996; 최외출·안지민, 1998; 이재원, 2003; 박병희 외, 2011; 송지영·임성일, 2015).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혜수 외(1996)는 투자심사의 체크리스트를 고안하였으며. 최외출·안지민(1999)은 서류심사에만 의존한 투자심사에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심사대상 기준의 유연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경, 복지, 안전, 노동, 소비자보호 등 사회 복지적 측면의 심사기준의 추가를 통한 사업특성별 심사기준 합리화, 심사방법의 과학적 모델 개발, 자치단체의 심사능력 고취 등을 제안하였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이재원(2003)은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투자심사 관련 기구와 인력의 한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와의 연계성 미흡, 총사업비 위주의 심사,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 반영률 차이, 투자심사결과의 구속력 등을 언급하면서 투자심사의 기능 축소, 지방정부 변수를 고려한 차등접근, 재정관리가 아닌 성과관리 측면으로 전환, 정책 프로그램별 심사로의 전환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박병희 외(2011)는 투자심사제도의 부적정한 기준,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합리, 사후관리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 심사 시 사업비 조정을 통한 의뢰심사율 제고, 심사 제외 사업 비중 하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주체 변경,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송지영·임성일(2015)은 2008년 전후로 지방 투자심사의 변화를 지역별, 사업유형별, 연도별로 실증분석하고 심사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하여 지방투자심사 판정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2014년에 투·융자심사가 현재의 투자심사제도로 개편되고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 지정에 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박영민·이세구(2015)에서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운영현황을 타당성 조사,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토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절차 및 제도 미흡, 지침 부족, 형식적 운영,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 조사 업무의 의뢰·계약절차 단순화, 타당성 검증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절차 구체화, 타당성 검토에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주재홍·윤형호(2017)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현황, 공무원, 투자심사 위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안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현정(2018)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현황을 분석하여 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낮은 사후관리 인식, 투자심사 시 센터의 영향력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면서 센터 협의회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중앙투자심사 기관 파견 근무 의무화, 사후 평가기능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한명주 외(2019)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를 투자심사제도의 수행단계(사전-심사-사후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전단계에서는 심사의뢰서 작성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 및 지침 부족,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미이행 사업의 심사의뢰, 사업 타당성 조사의 오류 등이 주요문제로 나타났으며, 심사단계에서는 심사 대상 사업, 특히 조건부 판정 사업에 대한 사후단계 관리 미흡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도 재정사업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심사 의뢰 전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사업이해도를 높이는 상세한 의뢰서 작성 등 6개의 구체적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강래 외(2019)는 경기도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재정사업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사업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전검토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필요사업 기준 마련, 사업분야별 타당성 조사 지침 및 외부전문기관 검증 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조남건 외(2019)에서는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북의 투자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양지숙(2019)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및 특정지역 도심사 통과사업 중 2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사업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관리의 위험요인을 제시하였다. 추진실태 분석결과 부실한 계획수립, 관련절차

미이행, 사업관리·운영지침 미준수, 사업관리 역량 미흡 및 도덕적 해이, 투자심사제도 및 이력관리제도의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간 연계 강화, 사업 추정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정보연계, 사후평가 강화, 지역 공공투자사업 관리센터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윤성일·김상기(2020)는 재정환경 및 투자심사 현황검토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전문가 조사(FGI)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 금액 및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 투자심사 면제대상사업 확대 및 명확화, 투자심사 절차 체계화를 위한 투자심사 전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사업 유형별 심사내용 및 기준 명확화 등을 제안하였다.

박영민 외(2021)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를 사유로 최근 투자심사 과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투자심사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연구 중 상당부분은 투자심사에 있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을 지양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심사 타당성 분석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이상용, 1991; 변창흠·이세구, 2001; 이성근 외, 2006).

이상용(1991)은 투자심사의 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 및 경제성 분석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 유형화에 따른 평가기준의 가중치 산정방법(이성근 외, 2006), 사전타당성 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개발, 분석항목, 분석절차 및 측정항목(변창흠·이세구, 2001)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창균·신두섭(2007)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투자가용재원 실태 분석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표준적인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의 문제점으로 투자가용재원 개념 및 정의가 불명확하여 산정방식이 불일치하며, 투자가용재원 산출을 위한 기준이 상이하고, 현행 산정방식은 실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과대 계상하고 있음을 밝히었다. 이에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김대중 외(2019)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하며 중·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타당성 조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 경제성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을 검토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비용, 수요, 편익 추정 방법론을 소개하고 적용 시 쟁점에 관해 고찰하였다.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적정 할인율에 관한 최지은·박동규(2017)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은 국가재정투자사업에 비해 사업유형이 다양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신용위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투자사업의 할인율(5.5%)을 동일하게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유형별 위험 크기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 인하의 필요성이 있지만, 단일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현행 4.5% 이하로 인하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희철·김재환(2019)은 지역 및 사업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사업의 시설별, 사업 형태별로 가중치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계층구조를 3계층으로 설정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면 사회적 기반시설로의 투자사업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과 연관되는 기초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가 높음을 확인하여 실제 재정투자사업의 사업유형별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선별하여 이에 맞는 평가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 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가이드라인 등 기타 연구

마지막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투자심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고,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 및 기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영민 외, 2017; 김병석 외, 2019).

박영민 외(2017)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제 투자심사 의뢰서 양식에 적용하면서, 투자심사 의뢰서 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작성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투자심사의 지적사항을 투자심사 분야별·이슈별로 분류하여 의뢰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체크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김병석 외(2019)에서는 경기도 투자심사의뢰서 구성체계의 항목 소개 및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투자심사의뢰서 공통부문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에 상정되는 사업 중 빈도수가 높고 의뢰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주차장, 도서관, 홍보관, 지방자치단체 청사, 문화·체육 시설’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요와 공급, 사업량 산출, 사업비 산출 방법을 중심으로 유형별

의뢰서 작성방법과 예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 기타 연구에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투자심사 결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있다(이성근 외 2006; 송우경 2003). 특히 이성근 외(2006)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비계획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사업 및 지역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심사의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방투자심사 대상사업을 명확하게 유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2-21〉 선행연구 정리

구분	연구자	주요 내용
제도 개선	하혜수 외(1996)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개발
	최외출·안지민(1998)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발전방향 제시
	이재원(2003)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10년간 변화과정과 투자심사의 기능 축소, 지방정부 변수고려 차등접근, 재정관리 측면에서 성과관리측면으로 전환, 경제성 분석위주 심사에서 정책프로그램별 심사로 전환을 정책으로 제안
	박병희 외(201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후 투자심사제도의 기준 부적정, 투자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 파악 후 사업비 조정을 통한 의뢰심사를 제고, 심사제외 사업 비중 하향 등의 개선방안 제시
	송지영·임성일(2015)	지방투자심사의 변화를 지역, 사업유형, 연도별로 실증분석을 통한 지방투자심사 판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영민·이세구(2015)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절차 및 제도 미흡, 지침부족, 형식적 운영,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뢰·계약절차 단순화, 제도적 근거마련 절차 구체화,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제도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
	주재홍·윤형호(2017)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공무원, 투심위원,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체계 진단 후 발전방안 제시
	주현정(2018)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발전방안 제시
	한명주 외(2019)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 분석을 통해 상세 가이드라인 및 지침 부족, 사전이행절차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의리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6가지의 투자심사제도 개선방향 제시
	마강래 외(2019)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결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검토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필요사업 기준마련, 분야별 타당성 조사 지침, 외부전문기관 검증 기준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조남건 외(2019)	충청북도 투자심사제도 현황분석, 문제점 도출 후 개선방향 제시
	양지숙(2019)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사업계획 및 집행단계별 집행실태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윤성일·김상기(2020)	재정환경의 변화와 투자심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변화된 재정환경에 적합한 지방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구분	연구자	주요 내용
제도 개선	박영민 외(202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에 관한 연구로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함 제시
타당성 분석 연구	이상용(1991)	비용편익분석, 경제성 분석 등을 투자심사 기법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기법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변창흠·이세구(2001)	사전타당성 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개발, 분석항목, 분석절차 및 측정항목 제시
	이성근 외(2006)	투자사업 유형화에 따른 평가기준 가중치 산정방법 제시
	이창균·신두섭(2007)	지자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의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모형 제시
	최지은·박동규(2017)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
	김대중 외(2019)	경기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경제성분석 방법론 제시
	심희철·김재환(2019)	지역 및 사업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구축을 위해 지방재정사업의 시설별, 사업 형태별 가중치 제시
가이드 라인 등 기타 연구	송우경(2003)	지방정부 투자사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서울시 투·융자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이성근 외(2006)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방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화를 제안
	박영민 외(2017)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실제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 양식에 적용하여 제시
	김병석 외(2019)	경기도 투자심사의뢰서 구성체계 항목 소개 및 담당 공무원을 통한 의뢰서 작성 시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와 공급, 사업량 산출,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2. 연구의 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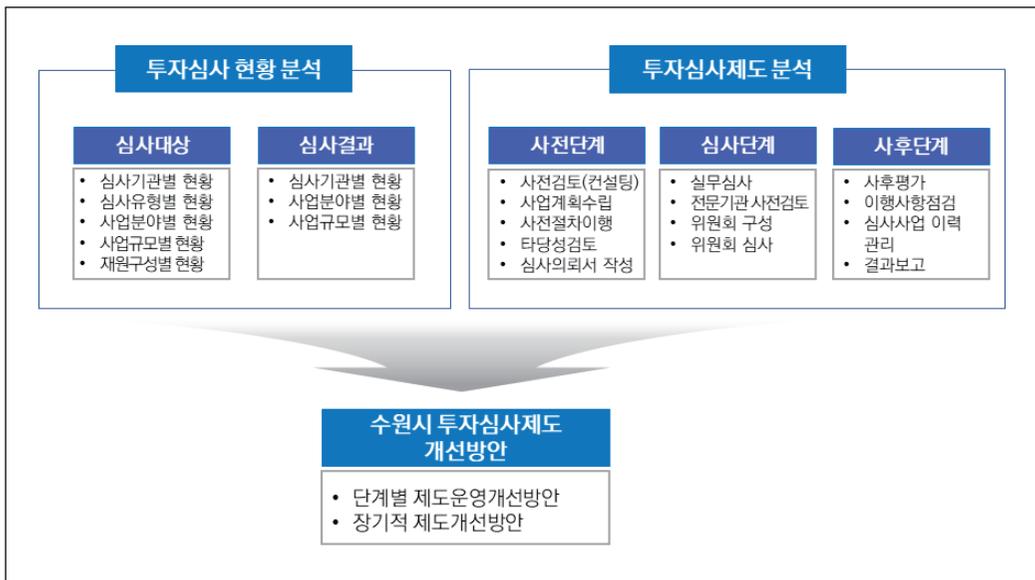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주로 기초자치단체 투자심사보다는 중앙투자심사 및 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를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둘째, 투자심사 현황분석에 있어서 심사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투자심사 주체의 적정성, 투자심사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셋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사전 사업계획, 투자심사, 사후관리 단계별로 검토하고 각 단계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단기적 개선 방안과 함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근본적, 장기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상당수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과 투자심사

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수원시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심사 현황분석은 크게 투자심사 대상과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투자심사 대상 현황은 2016년~2020년도까지 최근 5년간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투자심사, 도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 자료를 토대로, 심사기관, 심사유형, 사업분야, 사업규모, 재원구성별로 사업 건수 및 사업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투자심사 결과 현황은 심사기관, 사업분야, 사업규모별로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양상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둘째, 투자심사제도 분석의 경우 수원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절차를 심사 사전단계, 투자심사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컨설팅), 사업계획수립, 사전절차이행, 타당성검토, 심사의뢰서 작성 등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심사단계에서는 실무심사, 전문기관 사전검토, 위원회 구성 및 심사 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사후단계에서는 사후평가, 이행사항점검, 심사사업 이력관리, 결과보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및 투자심사제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공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단계별 제도운영 개선방안 및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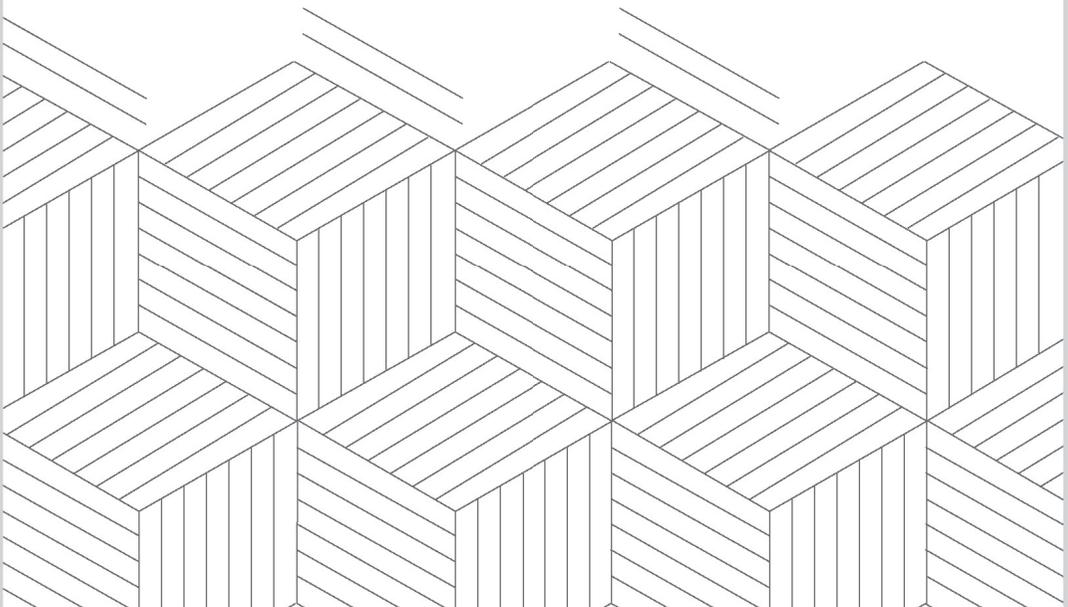


〈그림 2-8〉 연구의 분석틀



# 제3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제1절 수원시 재정현황  
제2절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분석





## 제3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 제1절 수원시 재정현황

#### 1. 수원시 예산규모

수원시 예산규모(당초예산 총계기준)를 살펴보면, 아래 <표 3-1>에서와 같이 매해 총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1년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5.8% 감소하였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2,267,213백만 원, 2017년 2,405,405백만 원, 2018년 2,729,233백만 원, 2019년 2,776,758백만 원, 2020년 2,826,287백만 원, 2021년 2,662,725백만 원이며, 6년 평균 예산증가율은 약 3.5%로 나타났다.

회계별로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증가하다, 2021년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이후 매해 예산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수원시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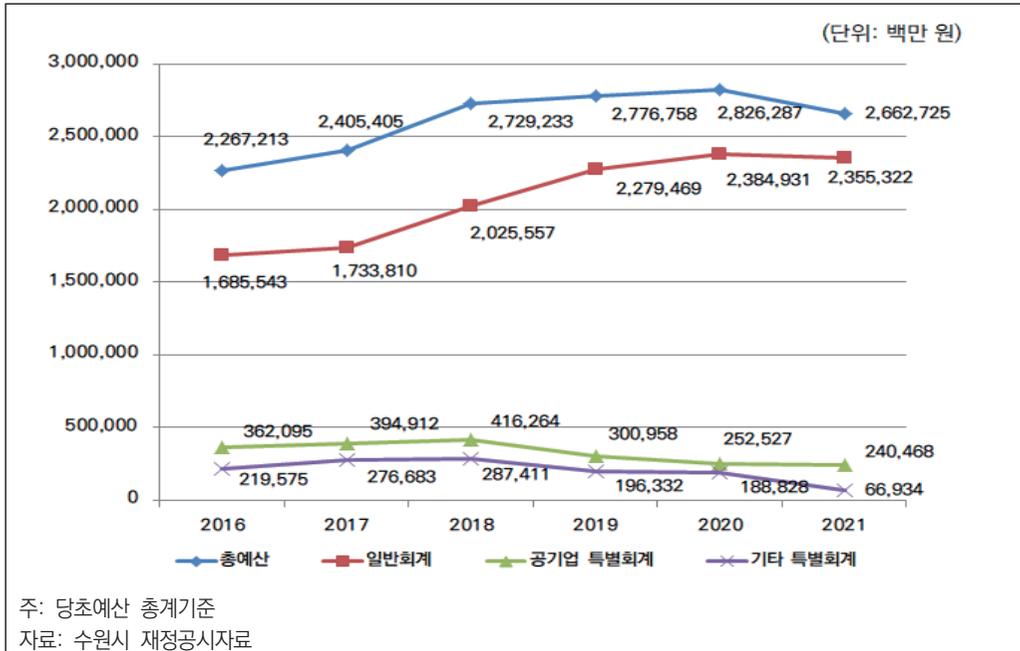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년 평균
총예산	2,267,213 -	2,405,405 (6.1)	2,729,233 (13.5)	2,776,758 (1.7)	2,826,287 (1.8)	2,662,725 (-5.8)	2,611,270 (3.5)
일반회계	1,685,543 -	1,733,810 (2.9)	2,025,557 (16.8)	2,279,469 (12.5)	2,384,931 (4.6)	2,355,322 (-1.2)	2,077,439 (7.1)
공기업 특별회계	362,095 -	394,912 (9.1)	416,264 (5.4)	300,958 (-27.7)	252,527 (-16.1)	240,468 (-4.8)	327,871 (-6.8)
기타 특별회계	219,575 -	276,683 (26.0)	287,411 (3.9)	196,332 (-31.7)	188,828 (-3.8)	66,934 (-64.6)	205,961 (-14.0)

주1: 당초예산 총계기준

주2: 괄호 안은 증가율

자료: 수원시 재정공시자료



〈그림 3-1〉 수원시 예산규모

## 2. 연도별 세입재원 현황

2016년도부터 2021년도 수원시 세입현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도 총 세입은 1,685,543백만 원이며,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762,256백만 원(45.22%), 세외수입 104,673백만 원(6.21%), 지방교부세 9,000백만 원(0.53%), 조정교부금 등 192,645백만 원(11.43%), 보조금 448,725백만 원(26.62%), 지방채 8,000백만 원(0.4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0,244백만 원(9.51%)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총 세입은 1,733,810백만 원이며, 지방세 751,646백만 원(43.35%), 세외수입 147,613백만 원(8.51%), 지방교부세 9,000백만 원(0.52%), 조정교부금 등 180,000백만 원(10.38%), 보조금 497,529백만 원(28.70%), 지방채 28,000백만 원(1.6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0,022백만 원(6.92%)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총 세입은 2,025,557백만 원이며, 지방세 879,670백만 원(43.43%), 세외수입 119,208백만 원(5.89%), 지방교부세 9,000백만 원(0.44%), 조정교부금 등 197,000백만 원(9.73%), 보조금 644,968백만 원(31.84%), 지방채 45,711백만 원(2.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000백만 원(6.42%)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총 세입은 2,279,469백만 원이며, 지방세 962,192백만 원(42.21%), 세외수입 133,894백만 원(5.87%), 지방교부세 9,000백만 원(0.39%), 조정교부금 등 175,000백만 원

(7.68%), 보조금 743,860백만 원(32.63%), 지방채 75,523백만 원(3.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0,000백만 원(7.90%)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총 세입은 2,384,931백만 원이며, 지방세 890,706백만 원(37.35%), 세외수입 204,960백만 원(8.59%), 지방교부세 54,334백만 원(2.28%), 조정교부금 등 188,786백만 원(7.92%), 보조금 831,469백만 원(34.86%), 지방채 84,452백만 원(3.5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225백만 원(5.46%)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총 세입은 2,355,322백만 원이며, 지방세 895,000백만 원(38.00%), 세외수입 160,982백만 원(6.83%), 지방교부세 42,770백만 원(1.82%), 조정교부금 등 194,022백만 원(8.24%), 보조금 881,215백만 원(37.41%), 지방채 25,433백만 원(1.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900 백만 원(6.62%)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입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38%~45%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매해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16년 45.22%에서 2021년 38.00%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다른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경우 비중이 매해 증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수월시가 2020년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다소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19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3-2〉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 원)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합계	1,685,543	100	1,733,810	100	2,025,557	100	2,279,469	100	2,384,931	100	2,355,322	100
지방세	762,256	45.22	751,646	43.35	879,670	43.43	962,192	42.21	890,706	37.35	895,000	38.0
세외수입	104,673	6.21	147,613	8.51	119,208	5.89	133,894	5.87	204,960	8.59	160,982	6.83
지방교부세	9,000	0.53	9,000	0.52	9,000	0.44	9,000	0.39	54,334	2.28	42,770	1.82
조정교부금 등	192,645	11.43	180,000	10.38	197,000	9.73	175,000	7.68	188,786	7.92	194,022	8.24
보조금	448,725	26.62	497,529	28.7	644,968	31.84	743,860	32.63	831,469	34.86	881,215	37.41
지방채	8,000	0.47	28,000	1.61	45,711	2.26	75,523	3.31	84,452	3.54	25,433	1.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244	9.51	120,022	6.92	130,000	6.42	180,000	7.90	130,225	5.46	155,900	6.62

자료: 수원시 재정공시자료

### 3.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51.43%, 2017년 51.87%, 2018년 49.31%, 2019년 48.09%, 2020년 45.94%, 2021년 44.83%로 2016년도 이후 2017년도 까지 재정자립도가 다소 증가하였다가, 이후 매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2016년 63.40%, 2017년 62.77%, 2018년 59.48%, 2019년 56.16%, 2020년 56.14%, 2021년 54.89%로 2016년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매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지속적 감소경향은 수원시의 재정악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수원시 자체적으로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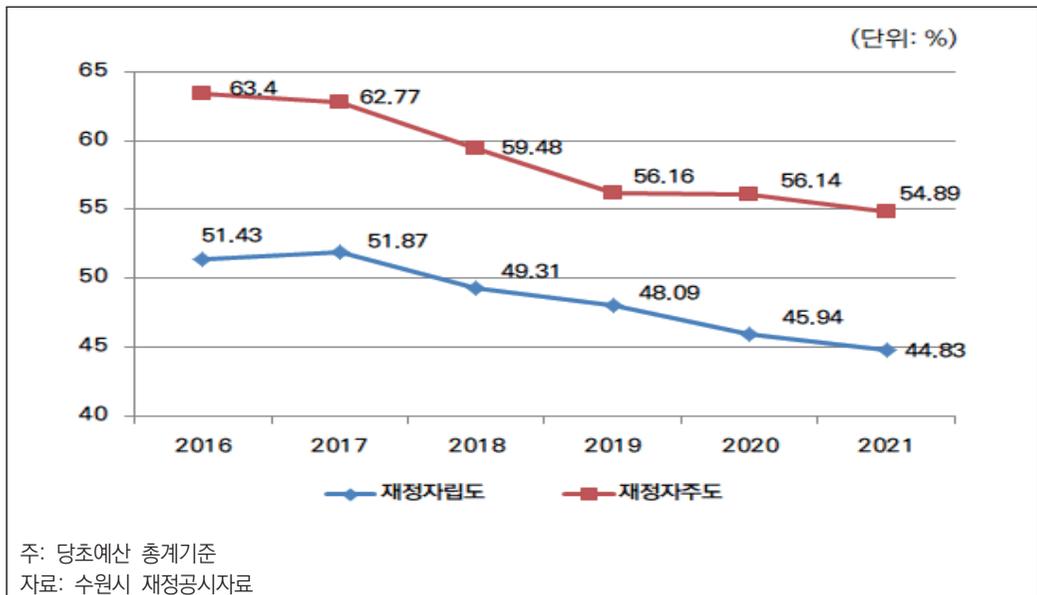
〈표 3-3〉 수원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자립도	51.43	51.87	49.31	48.09	45.94	44.83
재정자주도	63.4	62.77	59.48	56.16	56.14	54.89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료: 수원시 재정공시자료



〈그림 3-3〉 수원시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 4. 가용자원<sup>18)</sup> 현황 및 전망

수원시가 자율성을 갖고 지출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신규 가용자원 현황 및 전망을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4>와 같다. 2019년 가용재원은 1,155억 원, 2020년에는 932억 원, 2021년 278억 원이며, 이후 2022년 844억 원, 2023년 889억 원, 2024년 923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수원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2021년 신규 가용재원이 2019년 대비 75.9%가 감소하였으며 2022년 이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원시의 엄격한 재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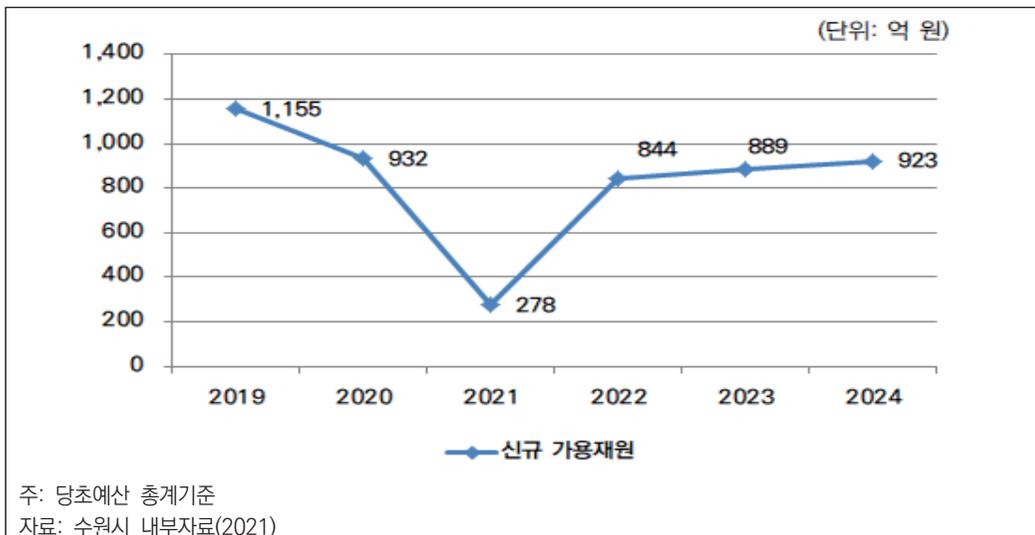
<표 3-4> 수원시 가용자원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규 가용자원	1,155	932	278	844	889	923

주: 가용자원=세입합계-경상경비-기추진사업-보조금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2021)



<그림 3-5> 수원시 신규 가용자원 현황

18) 가용재원은 산정방식이 다양하나 여기서는 세입합계에서 경상경비, 기추진사업비, 보조금을 제외한 자원이다.

## 5. 채무현황 및 전망

2021년 기준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수원시의 채무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 현재액은 2019년 2,042억 원, 2020년 2,767억 원, 2021년 3,660억 원이며 이후 2022년 3,712억 원, 2023년 3,434억 원으로 예측되어 2022년까지 증가 후 2023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채무액은 2020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 후, 2021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환액은 2021년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채무비비율은 2019년 8.80%, 2020년 10.29%, 2021년 12.29%이며, 2022년 11.11%, 2023년 8.82%로 2021년까지 채무비비율이 증가하다, 2022년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주민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2019년 243천 원, 2020년 322천 원, 2021년 333천 원, 2022년 334천 원, 2023년 306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3-5〉 수원시 채무현황 및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현재액	2,042	2,767	3,660	3,712	3,434	
신규채무액	940	1,042	299	100	50	
상환액	215	149	247	377	573	
당해연도말채무액	2,767	3,660	3,712	3,434	2,911	
채무비비율(%)	8.80	10.29	12.29	11.11	8.82	
주민1인당 채무액 (천원)	원금기준	223	298	309	313	290
	원리금기준	243	322	333	334	306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2021)

## 6.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2025년도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세입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3-6〉과 같다. 2021년 3,360,701백만 원, 2022년 3,349,533백만 원, 2023년 3,659,172백만 원, 2024년 3,708,587백만 원, 2025년 3,766,571백만 원으로 세입세출 규모가 연평균 약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입재원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세입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체수입의 총 규모는 2021년 기준 1,343,774 백만 원이며, 연평균 약 3.9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전수입의 총 규모는 2021년 기준 1,335,344 백만 원으로 연평균

약 3.4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채의 경우, 2021년 기준 32,200 백만 원이며 연평균 26.10%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기준 총 규모 649,383 백만 원으로 연평균 약 0.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출 항목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세출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전망을 살펴 보면 경상지출의 총 규모는 2021년 기준 848,095 백만 원으로 연평균 약 4.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업수요의 총 규모는 2021년 기준 2,512,607 백만 원으로 연평균 약 2.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3-6〉 증기지방재정계획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입	3,360,701	3,349,533	3,659,172	3,708,587	3,766,571	17,844,565	2.90
자체수입	1,343,774	1,404,824	1,590,766	1,527,507	1,568,996	7,435,866	3.90
이전수입	1,335,344	1,392,992	1,409,422	1,458,066	1,525,727	7,121,550	3.40
지방채	32,200	11,000	18,000	13,000	0	74,200	△26.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9,383	540,718	640,985	710,014	671,848	3,212,948	0.90
세출	3,360,701	3,349,533	3,659,172	3,708,587	3,766,571	17,844,565	2.90
경상지출	848,095	828,768	1,071,903	1,011,306	1,010,446	4,770,518	4.50
사업수요	2,512,607	2,520,765	2,587,269	2,697,281	2,756,125	13,074,047	2.30

주1: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주2: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sup>1/(전체연도 수-1)</sup>]-1] × 100

자료: 2021~2025년도 수원시 증기지방재정계획

## 제2절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분석

### 1. 투자심사 대상현황

#### 1) 심사건수 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행된 수원시 전체 투자심사 건수는 총 303건이며 연도별로 총 심사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전체 투자심사 건수는 89건, 2017년 75건(전년대비 15.7% 감소), 2018년 55건(전년대비 26.6% 감소), 2019년 59건(전년대비 7.2% 증가), 2020년 25건(전년대비 42.3% 감소)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이후 전체 투자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0년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심사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도에 전년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10건, 2017년 20건(전년대비 100% 증가), 2018년 9건(전년대비 55% 감소), 2019년 5건(전년대비 44.5% 감소), 2020년 1건(전년대비 80% 감소)의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였다.

도투자심사의 경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감소하다, 2020년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18건, 2017년 16건(전년대비 11.12% 감소), 2018년 12건(전년대비 23% 감소), 2019년 7건(전년대비 41.6% 감소), 2020년 8건(전년대비 14.2% 증가)의 도투자심사가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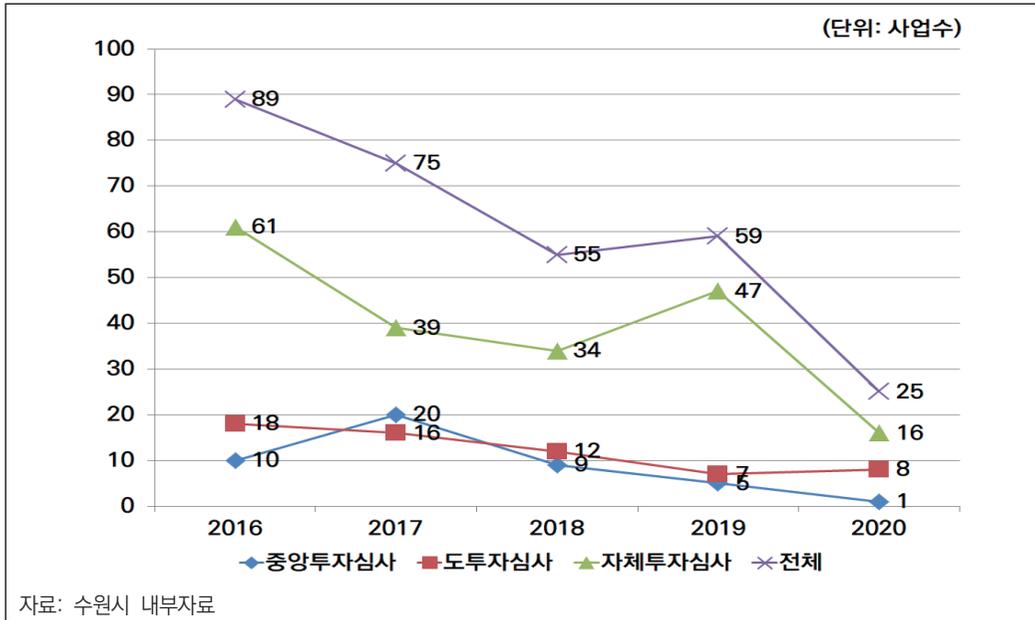
자체투자심사의 경우는 2016년도 이후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20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61건, 2017년 39건(전년대비 36.1% 감소), 2018년 34건(전년대비 12.8% 감소), 2019년 47건(전년대비 38.2% 증가), 2020년도 16건(전년대비 65.9% 감소)의 자체투자심사가 진행되었다.

〈표 3-7〉 투자심사 건수

(단위: 사업수)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89	75	55	59	25
중앙투자심사	10	20	9	5	1
도투자심사	18	16	12	7	8
자체투자심사	61	39	34	47	16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그림 3-7〉 투자심사 건수

## 2) 심사대상 총사업비 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시행된 전체 심사대상 총 사업비는 3,617,480백만 원이며, 연도별로 심사대상 총 사업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도 총 사업비는 797,370백만 원이며, 2017년 1,111,710백만 원(전년대비 39.4% 증가), 2018년 977,000백만 원(전년대비 12.11% 감소), 2019년 573,650백만 원(전년대비 41.2% 감소), 2020년 157,750백만 원(전년대비 72.5% 감소)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사대상 총 사업비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대폭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사기관별 심사대상 총 사업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투자심사 대상 총 사업비의 경우, 2016년 475,500백만 원, 2017년 545,600백만 원(전년대비 14.7% 증가), 2018년 531,200백만 원(전년대비 2.6% 감소), 2019년 257,500백만 원(전년대비 51.5% 감소), 2020년 34,400백만 원(전년대비 86.6% 감소)으로 나타났다. 중앙투자심사 대상 총 사업비는 2017년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0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큰 폭으로 심사대상 총 사업비가 감소하였다.

도투자심사 대상 총 사업비의 경우, 2016년 21,900백만 원, 2017년 156,100백만 원(전년대비 712% 증가), 2018년 235,000백만 원(전년대비 50.5% 증가), 2019년 118,700백만 원(전년대비 49.48% 감소), 2020년 37,170백만 원(전년대비 68.6% 감소)으로 나타났다.

도투자심사 대상 사업비의 연도별 추세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증가하다, 2019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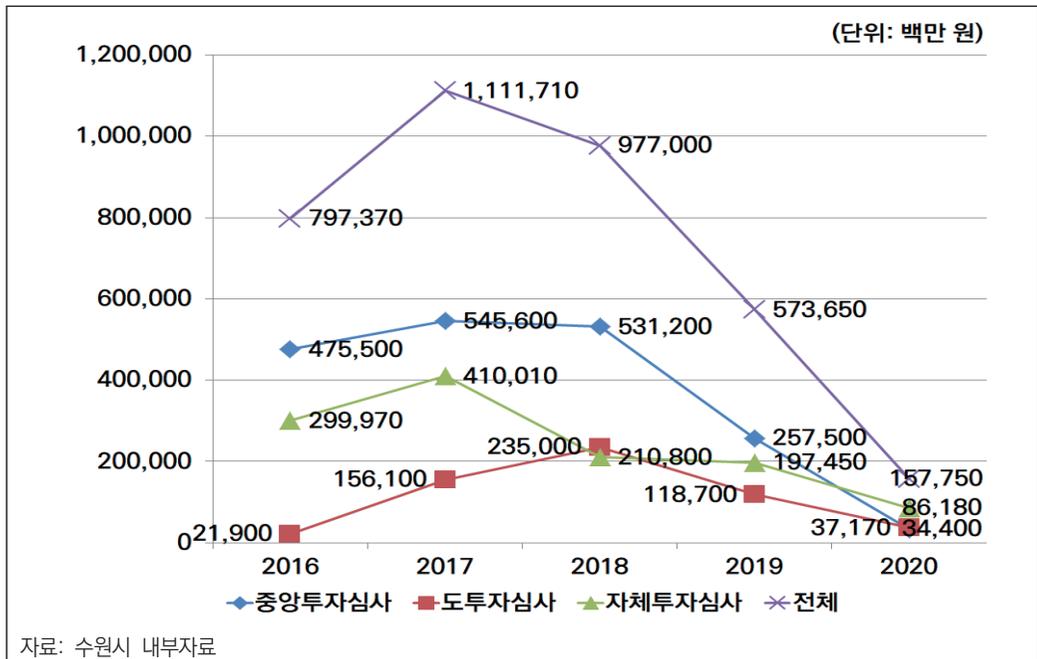
자체투자심사 대상 총 사업비의 경우, 2016년 299,970백만 원, 2017년 410,010백만 원(전년대비 36.68% 증가), 2018년 210,800백만 원(전년대비 48.5% 감소), 2019년 197,450백만 원(전년대비 6.3% 감소), 2020년 86,180백만 원(전년대비 56.3% 감소)이었다. 자체투자심사 대상 사업비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 전년대비 증가하다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투자심사대상 총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797,370	1,111,710	977,000	573,650	157,750
중앙투자심사	475,500	545,600	531,200	257,500	34,400
도투자심사	21,900	156,100	235,000	118,700	37,170
자체투자심사	299,970	410,010	210,800	197,450	86,180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그림 3-9〉 투자심사대상 총사업비

### 3) 심사시기별 투자심사 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원시 투자심사 현황을 심사기관별로 심사시기(정기, 수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중앙투자심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45건의 투자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모두 정기심사로 실시되었다. 도투자심사는 정기심사 56건(91.80%), 수시심사 5건(8.20%)으로 총 61건(100%)의 투자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자체 투자심사의 경우 정기심사 180건(91.37%), 수시심사 17건(8.63%)으로 총 197건의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사기관별 심사시기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2016년 10건, 2017년 20건, 2018년 9건, 2019년도 5건, 2020년 1건으로 총 45건의 중앙투자심사가 실시되었으며 모두 정기심사로 진행되었다.

도투자심사를 살펴보면, 2016년도의 경우 정기심사 16건(88.89%), 수시심사 2건(11.11%), 총 18건(100%)의 투자심사가 진행되었다. 2017년도에는 추진된 총 16건의 도투자심사가 모두 정기심사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도 역시 총 12건의 도투자심사가 모두 정기심사로 진행되었다. 2019년도의 경우 정기심사 6건(85.71%), 수시심사 1건(14.29%)으로 총 7건(100%)의 도투자심사가 진행되었고 2020년도에는 정기심사 6건(75.0%), 수시심사 2건(25.0%)으로 총 8건(100%)의 투자심사가 추진되었다.

자체투자심사의 연도별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의 경우 정기심사 58건(95.08%), 수시심사 3건(4.92%), 총 61건(100%)의 자체투자심사가 진행되었다. 2017년도의 경우 전체 39건의 자체투자심사가 모두 정기심사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정기심사 33건(97.06%), 수시심사 1건(2.94%)으로 총 34건(100%)의 자체투자심사가 진행되었다. 2019년도의 경우 정기심사 36건(76.60%), 수시심사 11건(23.40%)으로 총 47건(100%)의 자체투자심사가 진행되었고 2020년도에는 정기심사 14건(87.50%), 수시심사 2건(12.50%)으로 총 16건(100%)의 자체투자심사가 진행되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심사기관별 심사시기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투자심사는 모두 정기심사로 진행되었으며, 도투자심사 및 자체투자심사의 경우는 정기심사가 약 91~92%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 및 수시심사 비중에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9〉 심사시기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단위: 사업수, %)

심사년도	중앙투자심사			도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		
	계	정기	수시	계	정기	수시	계	정기	수시
2016	10 (100)	10 (100)	0 (0)	18 (100)	16 (88.89)	2 (11.11)	61 (100)	58 (95.08)	3 (4.92)
2017	20 (100)	20 (100)	0 (0)	16 (100)	16 (100)	0 (0)	39 (100)	39 (100)	0 (0)
2018	9 (100)	9 (100)	0 (0)	12 (100)	12 (100)	0 (0)	34 (100)	33 (97.06)	1 (2.94)
2019	5 (100)	5 (100)	0 (0)	7 (100)	6 (85.71)	1 (14.29)	47 (100)	36 (76.60)	11 (23.40)
2020	1 (100)	1 (100)	0 (0)	8 (100)	6 (75.00)	2 (25.00)	16 (100)	14 (87.50)	2 (12.50)
계	45 (100)	45 (100)	0 (0)	61 (100)	56 (91.80)	5 (8.20)	197 (100)	180 (91.37)	17 (8.63)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4) 심사유형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심사유형(신규, 재심사, 재상정, 2단계심사)별로 투자심사 대상현황을 심사기관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5년간 중앙투자심사 심사유형별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24건(53.3%), 재심사 9건(20.0%), 재상정 8건(17.8%), 2단계심사 4건(8.9%)으로 총 45건(100%)의 투자심사가 진행되었다. 도투자심사의 경우, 신규 49건(80.3%), 재심사 3건(4.9%), 재상정 8건(13.1%), 연례반복 1건(1.6%)으로 총 61건의 투자심사가 진행되었다. 자체투자심사의 경우 신규 174건(88.3%), 재심사 12건(6.1%), 재상정 11건(5.6%)으로 총 197건의 투자심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신규심사의 경우 자체투자심사(88.3%), 도투자심사(80.3%), 중앙투자심사(53.3%)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심사의 경우 중앙투자심사(20.0%), 자체투자심사(6.1%), 도투자심사(4.9%) 순을 보였다. 재상정의 경우 중앙투자심사(17.8%), 도투자심사(13.1%), 자체투자심사(5.6%)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심사기관별 심사유형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특히 자체투자심사에서 두드러지게 신규심사 비중의 감소와 재심사 비중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16년~2015년간 각 심사기관별 재심사 사유를 분석 해 본 결과,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재심사 총 9건 중 5건이 사업비 증가, 4건이 지방채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투자심사의

경우 재심사 3건 중 2건이 사업비 증가, 1건이 사업비 증가 및 사업지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체투자심사의 경우 재심사 12건 중 9건이 사업비 증가, 2건이 사업지연, 1건이 사업부지변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중앙·도·자체투자심사 모두에서 사업비 증가가 재심사의 가장 큰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심사유형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단위: 사업수, %)

심사 년도	중앙투자심사					도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			
	계	신규	재심사	재상정	2단계 심사	계	신규	재심사	재상정	연례 반복	계	신규	재심사	재상정
2016	10 (100)	5 (50.0)	1 (10.0)	2 (20.0)	2 (20.0)	18 (100)	17 (94.4)	0 (0)	1 (5.6)	0 (0)	61 (100)	57 (93.4)	1 (1.6)	3 (4.9)
2017	20 (100)	13 (65.0)	2 (10.0)	4 (20.0)	1 (5.0)	16 (100)	13 (81.3)	1 (6.3)	2 (12.5)	0 (0)	39 (100)	36 (92.3)	2 (5.1)	1 (2.6)
2018	9 (100)	4 (44.4)	2 (22.2)	2 (22.2)	1 (11.1)	12 (100)	7 (58.3)	0 (0)	4 (33.3)	1 (8.3)	34 (100)	28 (82.4)	3 (8.8)	3 (8.8)
2019	5 (100)	1 (20.0)	4 (80.0)	0 (0)	0 (0)	7 (100)	5 (71.4)	1 (14.3)	1 (14.3)	0 (0)	47 (100)	40 (85.1)	4 (8.5)	3 (6.4)
2020	1 (100)	1 (100)	0 (0)	0 (0)	0 (0)	8 (100)	7 (87.5)	1 (12.5)	0 (0)	0 (0)	16 (100)	13 (81.3)	2 (12.5)	1 (6.3)
계	45 (100)	24 (53.3)	9 (20.0)	8 (17.8)	4 (8.9)	61 (100)	49 (80.3)	3 (4.9)	8 (13.1)	1 (1.6)	197 (100)	174 (88.3)	12 (6.1)	11 (5.6)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5) 사업 분야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분야별 심사대상 현황(5개년 누적)을 심사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투자심사 사업의 경우, 심사건수 기준으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05건(3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금액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83,330백만 원(24.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경우 심사건수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심사건수 12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금액 기준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57,800백만 원(24.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투자심사 사업의 경우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심사건수 40건(65.6%), 심사금액 235,770백만 원(4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투자심사 사업의 경우 심사건수 기준으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9건(2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금액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50,530백만 원(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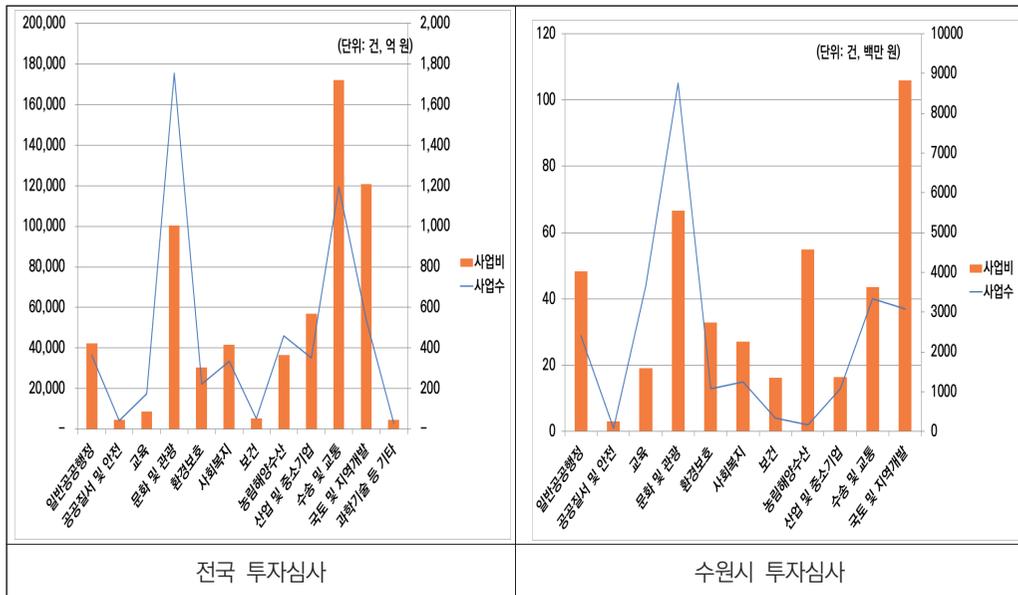
전국 투자심사 사업의 분야별 분포와 수원시 투자심사 사업의 분야별 분포를 비교해 볼 때, 전국적 분포와 수원시의 분포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심사건수 및 심사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사업 분야별 투자심사 대상현황(5개년 누적: 2016년~2020년)

(단위: 건, 백만 원, %)

분야	중앙투자심사		도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		전체 투자심사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일반공공행정	1 (2.2)	14,900 (0.8)	16 (26.3)	320,000 (56.3)	12 (6.1)	67,190 (5.6)	29 (9.6)	402,090 (11.1)
공공질서 및 안전	1 (2.2)	26,000 (1.4)	- -	- -	- -	- -	1 (0.3)	26,000 (0.7)
교육	1 (2.2)	34,400 (1.9)	1 (1.6)	700 (0.1)	42 (21.3)	124,500 (10.3)	44 (14.5)	159,600 (4.4)
문화 및 관광	6 (13.3)	184,500 (10.0)	40 (65.6)	235,770 (41.4)	59 (29.9)	134,310 (11.2)	105 (34.7)	554,580 (15.3)
환경보호	5 (11.1)	239,600 (13.0)	1 (1.6)	1,700 (0.3)	7 (3.5)	32,050 (2.6)	13 (4.3)	273,350 (7.6)
사회복지	7 (15.6)	190,800 (10.3)	- -	- -	8 (4.1)	35,740 (3.0)	15 (4.9)	226,540 (6.2)
보건	4 (8.9)	134,800 (7.3)	- -	- -	- -	- -	4 (1.3)	134,800 (3.7)
농림해양수산	2 (4.4)	457,800 (24.8)	- -	- -	- -	- -	2 (0.7)	457,800 (12.7)
산업·중소기업	3 (6.7)	74,100 (4.0)	1 (1.6)	500 (0.1)	9 (4.6)	61,490 (5.1)	13 (4.3)	136,090 (3.9)
수송 및 교통	3 (6.7)	54,500 (3.0)	2 (3.3)	10,200 (1.8)	35 (17.8)	298,600 (24.8)	40 (13.2)	363,300 (10.0)
국토 및 지역개발	12 (26.7)	432,800 (23.5)	- -	- -	25 (12.7)	450,530 (37.4)	37 (12.2)	883,330 (24.4)
계	45 (100)	1,844,200 (100)	61 (100)	568,870 (100)	197 (100)	1,204,410 (100)	303 (100)	3,617,480 (100)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그림 3-11〉 사업 분야별 투자심사 현황(전국 vs. 수원시)

## 6) 사업 규모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분야별 심사대상 현황(5개년 누적)을 심사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투자심사의 경우 심사건수 기준으로는 50억 원 미만 사업이 178건(58.7%),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이 38건(12.5%),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사업이 38건(12.5%)으로 많았으며, 심사금액 기준으로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이 1,121,300 백만 원(31.0%),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사업이 539,800 백만 원(14.9%),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사업이 501,900 백만 원(13.9%)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심사건수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사업과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업이 각 12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금액의 경우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이 701,500 백만 원(38.0%),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사업이 404,300 백만 원(21.9%)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투자심사의 경우 심사건수는 50억 원 미만 사업이 42건(68.9%),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사업이 8건(13.1%)으로 많았으며, 심사금액의 경우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이 169,800 백만 원(29.8%),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사업이 140,800백만 원(24.8%)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체투자심사의 경우 심사건수 기준으로는 50억 원 미만 사업이 136건(69.0%),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이 34건(17.3%) 순으로 많았으며, 심사금액의 경우는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사업이 288,100백만 원(23.9%), 50억 원 미만 사업이 264,910 백만 원 (22.0%)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2〉 사업규모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분야	중앙투자심사		도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		전체 투자심사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50억 원 미만	-	-	42 (68.9)	44,670 (7.9)	136 (69.0)	264,910 (22.0)	178 (58.7)	309,580 (8.6)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	4 (6.6)	37,800 (6.6)	34 (17.3)	248,200 (20.6)	38 (12.5)	286,000 (7.8)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9 (19.9)	129,400 (7.1)	8 (13.1)	122,300 (21.5)	21 (10.7)	288,100 (23.9)	38 (12.5)	539,800 (14.9)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2 (26.7)	289,500 (15.7)	1 (1.6)	23,200 (4.1)	3 (1.5)	76,400 (6.3)	16 (5.3)	389,100 (10.8)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12 (26.7)	404,300 (21.9)	1 (1.6)	30,300 (5.3)	1 (0.5)	35,200 (2.9)	14 (4.6)	469,800 (13.0)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7 (15.6)	319,500 (17.3)	3 (4.9)	140,800 (24.8)	1 (0.5)	41,600 (3.5)	11 (3.7)	501,900 (13.9)
500억 원 이상	5 (11.1)	701,500 (38.0)	2 (3.3)	169,800 (29.8)	1 (0.5)	250,000 (20.8)	8 (2.7)	1,121,300 (31.0)
계	45 (100)	1,844,200 (100)	61 (100)	568,870 (100)	197 (100)	1,204,410 (100)	303 (100)	3,617,480 (100)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7) 재원구성별 투자심사 대상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원구성별 대상현황을 심사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비의 국비 및 도비 비중은 연도별 다소 증감이 있으나 2016년에 비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비비중 평균은 2018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9년 67.3%, 2020년 68.3%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이나 국비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5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국비 총액은 2018년 650억 원, 2019년 394억 원, 2020년 40억 원으로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도비 총액은 2017년 200억 원, 2018년 21억 원, 2019년 5억 원, 2020년 0원으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시비 총액은 2018년 3,253억 원, 2019년 1,789억 원, 2020년 235억 원으로 역시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투자심사 대상 사업비의 국비비중은 2016년에서 2019년도 사이 4~5%대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18.8%로 증가하였다. 도투자심사 대상 사업비의 도비비중은 2016년 0.6%, 2017년 0.0%, 2018년 3.0%, 2019년과 2020년은 0% 수준이었으며, 도비 비중 0%인 사업이 도투자심사 대상사업 전체의 95.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투자심사 대상 사업비의 시비 비중은 2018년 89.2%까지 증가하다, 2019년도 83.8%, 2020년 73.8%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국비 총액은 2016년 6억 원, 2017년 3억 원, 2018년 9억 원, 2019년 7억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도비 총액은 2016년 10억 원, 2018년 6억 원 외, 다른 연도에는 도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도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투자심사 사업의 시비 총액은 2016년 177억 원, 2017년 1,532억 원, 2018년 2,330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이후 2019년 1,175억 원, 2020년 241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체투자심사 대상 사업비의 국비 및 도비 비중은 2017년도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10%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비비중 평균의 경우는 2016년도 85.3%에서 2018년도 60.6%까지 감소하다 이후 2019년 65.7%, 2020년 74.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체투자심사 대상 사업비의 국비 총액은 2018년을 제외하면 평균 52억 원 정도이며, 도비 총액은 2019년 120억 원까지 증가하다 2020년 65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시비총액은 2017년도 3,809억 원으로 증가 후 2018년 1,467억 원, 2019년 1,342억 원, 2020년 654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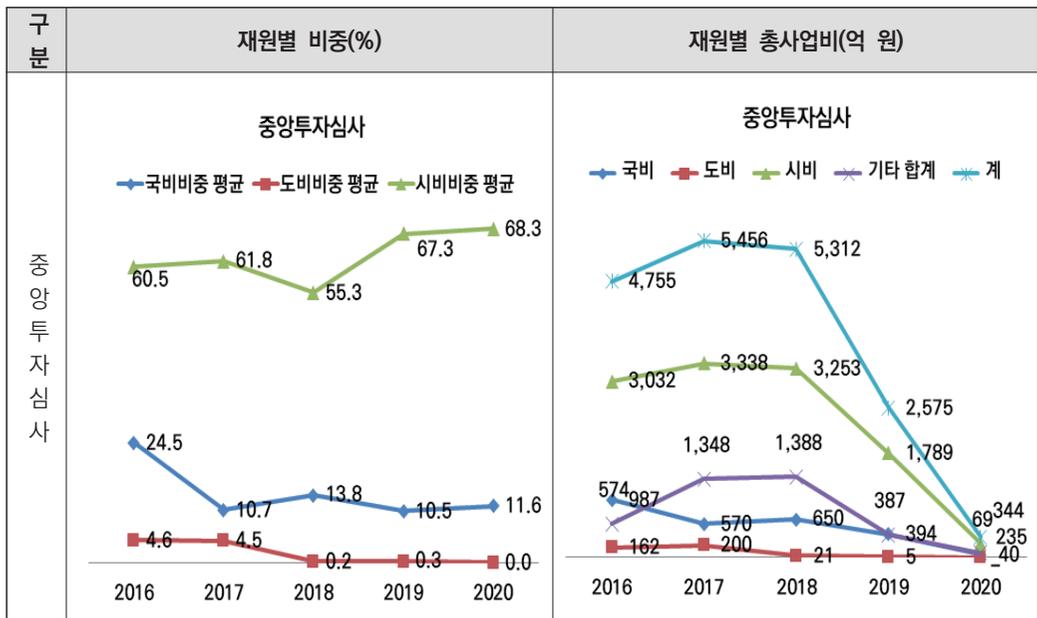
분석결과, 투자심사제도 상 투자심사 주체가 투자사업 재원의 성격과 구성 기준이 아닌 투자심사사업의 유형과 규모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 및 도투자심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비 및 도비가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거나 혹은 전혀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자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이 사업재원의 출처와 무관하게 사업의 종류와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심사주체와 재원구성 간 정합성의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재원부담의 주체의 재정자율성 및 책무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재원 부담자와 투자결정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추후 투자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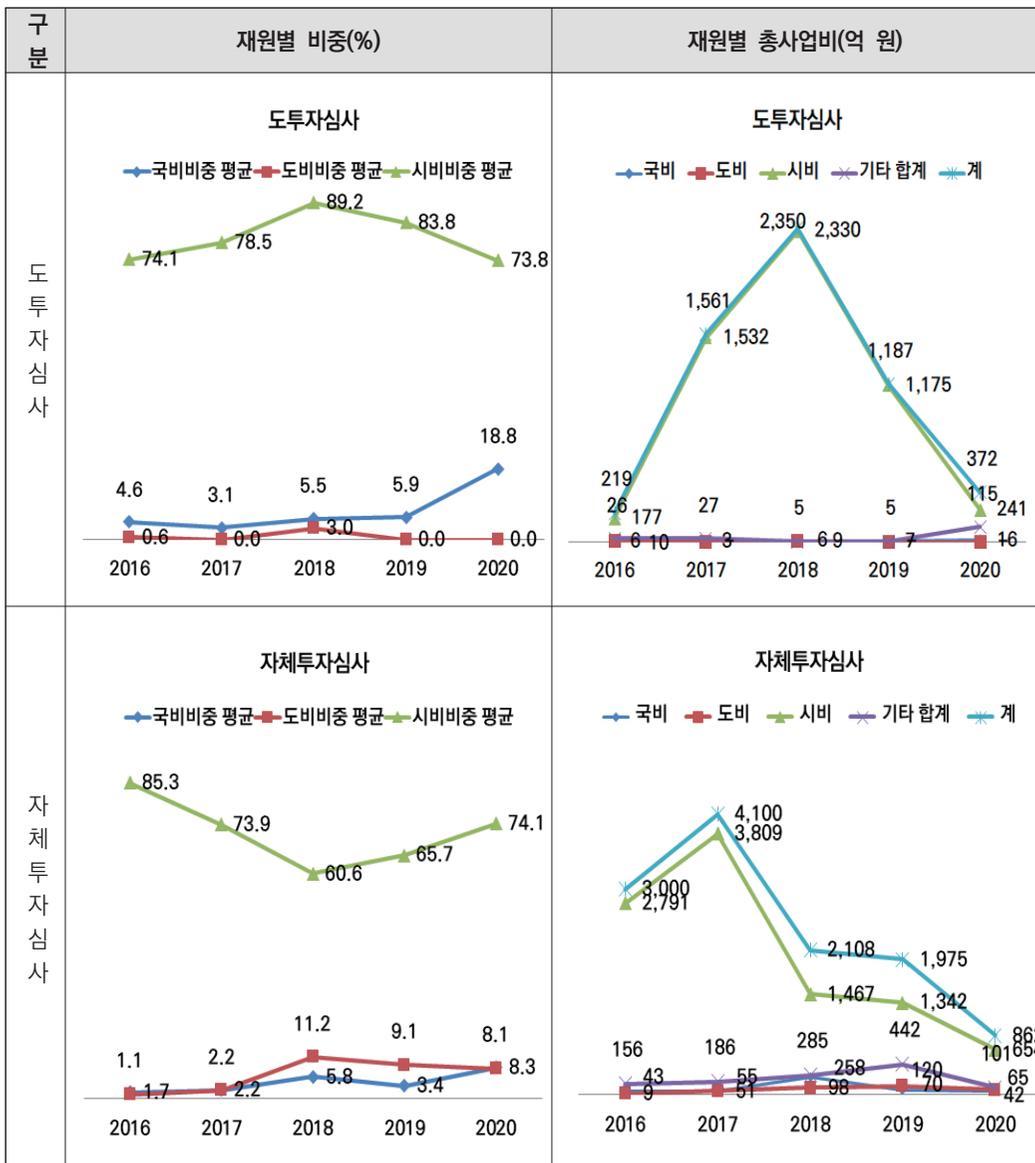
〈표 3-13〉 심사대상 사업의 자원별 구성비 및 총사업비

(단위: %, 억 원)

심사년도	비중 평균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중앙 투자 심사	2016	24.5	4.6	60.5	987	162	3,032	574	4,755
	2017	4.5	10.7	61.8	570	200	3,338	1,348	5,456
	2018	13.8	0.2	55.3	650	21	3,253	1,388	5,312
	2019	10.5	0.3	67.3	394	5	1,789	387	2,575
	2020	11.6	-	68.3	40	-	235	69	344
도 투자 심사	2016	4.6	0.6	74.1	6	10	177	26	219
	2017	3.1	-	78.5	3	-	1,532	27	1,561
	2018	5.5	3.0	89.2	9	6	2,330	5	2,350
	2019	5.9	-	83.8	7	-	1,175	5	1,187
	2020	18.8	-	73.8	16	-	241	115	372
자체 투자 심사	2016	1.7	1.1	85.3	43	9	2,791	156	3,000
	2017	2.2	2.2	73.9	55	51	3,809	186	4,100
	2018	5.8	11.2	60.6	258	98	1,467	285	2,108
	2019	3.4	9.1	65.7	70	120	1,342	442	1,975
	2020	8.3	8.1	74.1	42	65	654	101	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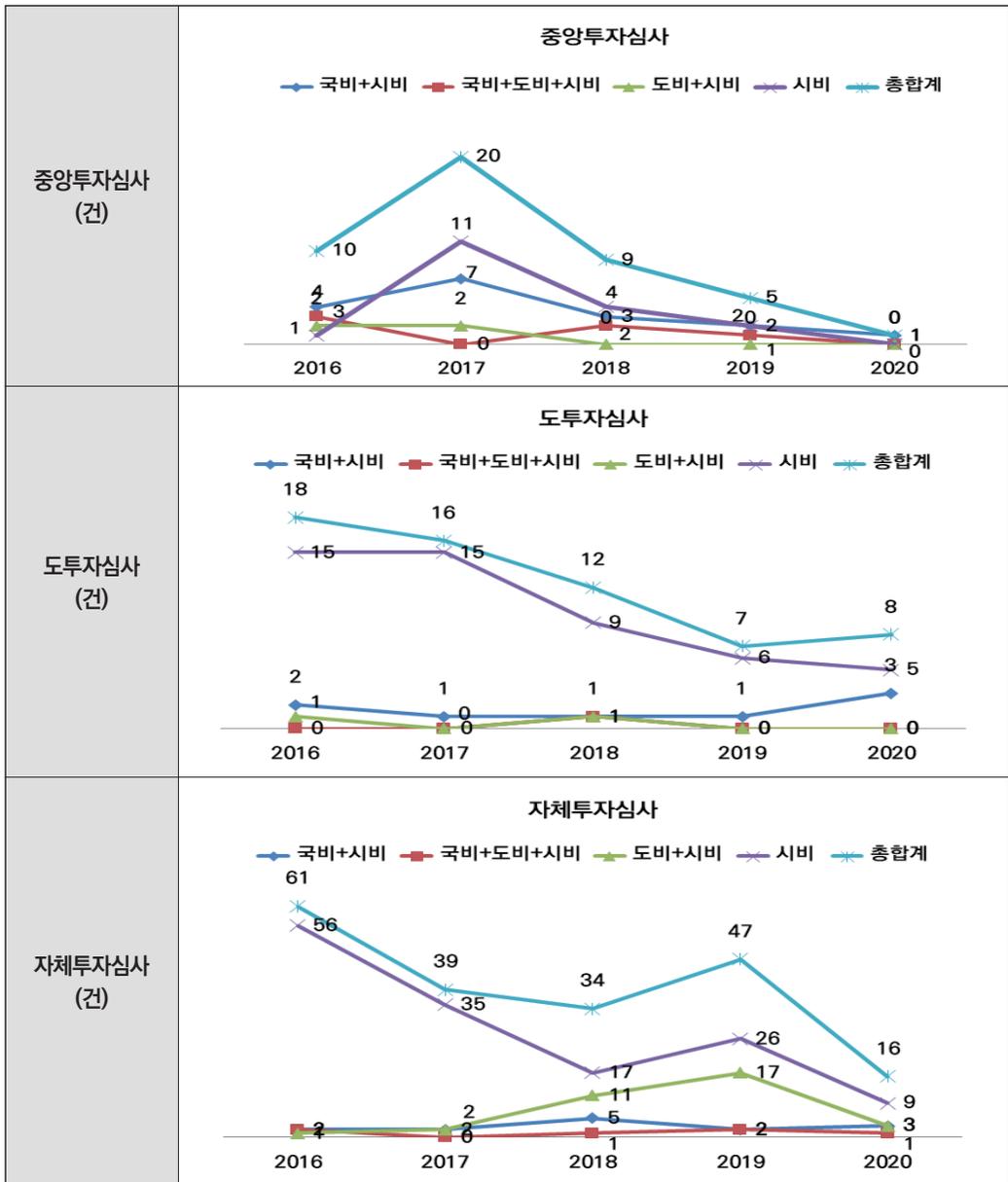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그림 3-12〉 재원구성별 현황: 비중 및 총사업비

투자심사 사업현황을 재원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중앙투자심사 및 도투자심사의 경우 대체로 전액 시비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국비 및 시비 포함사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투자심사의 경우 전액 시비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비 및 시비 포함사업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구성별 사업현황 검토 결과 역시 앞서 심사대상 사업의 재원별 비중 및 규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사주체 선정에 재원의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4〉 재원구성별 사업 현황

## 2. 투자심사 결과현황

### 1)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결과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심사기관별 수원시 투자심사 결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투자심사의 전체 심사건수(5년 누적)는 총 45건으로, 심사결과 재검토 11건

(24.4%), 적정 3건(6.7%), 조건부 31건(68.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평가(적정과 조건부 판정 포함)<sup>19)</sup>의 비중은 75.6%(전체 45건 중 34건)이며, 연도별로 긍정평가의 비중은 2016년 70.0%에서 2017년 75%로 증가하다 2018년 66.7%로 다소 감소 후 2019년과 2020년에 100%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투자심사의 전체 심사건수(5년 누적)는 총 61건으로, 심사결과 반려 1건(1.6%), 재검토 10건(16.4%), 적정 4건(6.6%), 조건부 46건(75.4%)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평가의 비중은 82.0%(전체 61건 중 55건)이며, 연도별로 긍정평가의 비중은 2016년 94.4%에서 2017년 62.5%로 감소하다 2018년 66.7%, 2019년 100%, 2020년 100%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체투자심사의 전체 심사건수(5년 누적)는 총 197건으로, 심사결과 부적정 2건(1.0%), 재검토 16건(8.2%), 적정 58건(29.4%), 조건부 121건(61.4%)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평가의 비중은 90.9%(전체 197건 중 179건)이며, 연도별로 긍정평가의 비중은 약 87~9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건부 판정의 비중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16년 29.5%에서 2018년 82.4%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76.6%, 75.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결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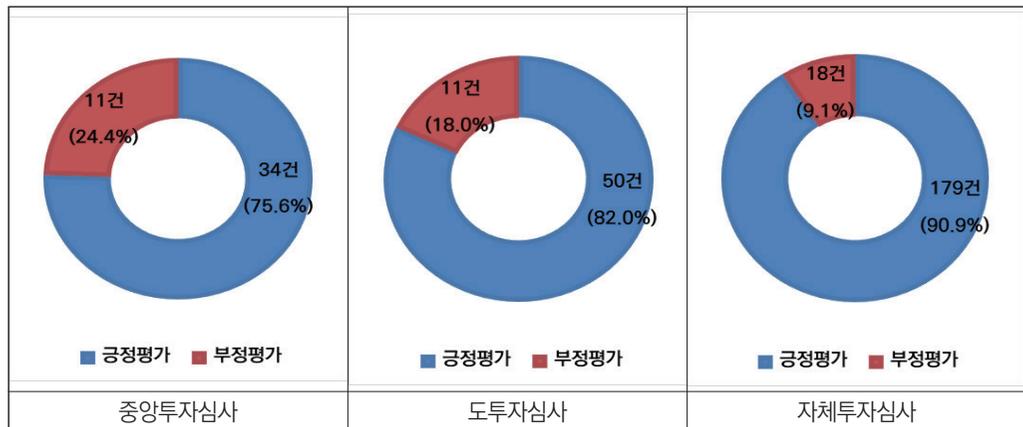
(단위: 건, %)

심사년도	심사결과					계	긍정평가 (적정+조건부)	
	반려	부적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중앙 투자 심사	2016	-	-	3	1	6	10	7
		-	-	(30.0)	(10.0)	(60.0)	(100)	(70.0)
	2017	-	-	5	1	14	20	15
		-	-	(25.0)	(5.0)	(70.0)	(100)	(75.0)
	2018	-	-	3	1	5	9	6
		-	-	(33.3)	(11.1)	(55.6)	(100)	(66.7)
	2019	-	-	-	-	5	5	5
-		-	-	-	(100)	(100)	(100)	
2020	-	-	-	-	1	1	1	
	-	-	-	-	(100)	(100)	(100)	
계	-	-	11	3	31	45	34	
	-	-	(24.4)	(6.7)	(68.9)	(100)	(75.6)	
도 투자 심사	2016	-	-	1	2	15	18	17
		-	-	(5.6)	(11.1)	(83.3)	(100)	(94.4)

19) 실질적으로 심사결과가 적정과 조건부일 경우 심사에서 통과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로 분류하였다.

심사년도	심사결과					계	긍정평가 (적정+조건부)	
	반려	부적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도 투자 심사	2017	-	-	6 (37.5)	-	10 (62.5)	16 (100)	10 (62.5)
	2018	1 (8.3)	-	3 (25.0)	-	8 (66.7)	12 (100)	8 (66.7)
	2019	-	-	-	1 (14.3)	6 (85.7)	7 (100)	7 (100)
	2020	-	-	-	1 (12.5)	7 (87.5)	8 (100)	8 (100)
	계	1 (1.6)	-	10 (16.4)	4 (6.6)	46 (75.4)	61 (100)	50 (82.0)
자체 투자 심사	2016	-	2 (3.2)	4 (6.6)	37 (60.7)	18 (29.5)	61 (100)	55 (90.2)
	2017	-	-	5 (12.8)	7 (17.9)	27 (69.3)	39 (100)	34 (87.2)
	2018	-	-	1 (2.9)	5 (14.7)	28 (82.4)	34 (100)	33 (97.1)
	2019	-	-	5 (10.6)	6 (12.8)	36 (76.6)	47 (100)	42 (89.4)
	2020	-	-	1 (6.2)	3 (18.8)	12 (75.0)	16 (100)	15 (93.8)
	계	-	2 (1.0)	16 (8.2)	58 (29.4)	121 (61.4)	197 (100)	179 (90.9)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그림 3-15)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결과현황

## 2) 사업분야별 투자심사 결과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 분야별 투자심사 결과현황(5개년 누적)을 심사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5〉 사업분야별 투자심사 결과현황(5개년 누적: 2016년~2020년)

(단위: 건, %)

분야	중앙투자심사							도투자심사						
	반려	부작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계	긍정평가 (적정+ 조건부)	반려	부작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계	긍정평가 (적정+ 조건부)
일반공공 행정	-	-	1 (100)	-	-	1 (100)	0 (0)	-	-	6 (37.5)	1 (6.3)	9 (56.2)	16 (100)	10 (62.5)
공공질서 및 안전	-	-	-	-	1 (100)	1 (100)	1 (100)	-	-	-	-	-	-	-
교육	-	-	-	-	1 (100)	1 (100)	1 (100)	-	-	-	-	1 (100)	1 (100)	1 (100)
문화 및 관광	-	-	1 (16.7)	-	5 (83.3)	6 (100)	5 (83.3)	1 (2.5)	-	4 (10.0)	3 (7.5)	32 (80.0)	40 (100)	35 (87.5)
환경보호	-	-	1 (20.0)	1 (20.0)	3 (60.0)	5 (100)	4 (80.0)	-	-	-	-	1 (100)	1 (100)	1 (100)
사회복지	-	-	3 (42.9)	-	4 (57.1)	7 (100)	4 (57.1)	-	-	-	-	-	-	-
보건	-	-	2 (50.0)	-	2 (50.0)	4 (100)	2 (50.0)	-	-	-	-	-	-	-
농림해양 수산	-	-	-	-	2 (100)	2 (100)	2 (100)	-	-	-	-	-	-	-
산업· 중소기업	-	-	-	-	3 (100)	3 (100)	3 (100)	-	-	-	-	1 (100)	1 (100)	1 (100)
수송 및 교통	-	-	1 (33.3)	1 (33.3)	1 (33.3)	3 (100)	2 (66.7)	-	-	-	-	2 (100)	2 (100)	2 (100)
국토 및 지역개발	-	-	2 (16.7)	1 (8.3)	9 (75.0)	12 (100)	10 (83.3)	-	-	-	-	-	-	-
계	-	-	11 (24.4)	3 (6.7)	31 (68.9)	45 (100)	34 (75.6)	1 (1.6)	-	10 (16.4)	4 (6.6)	46 (75.4)	61 (100)	50 (82.0)

분야	자체투자심사							전체 투자심사						
	반려	부적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계	긍정평가 (적정+ 조건부)	반려	부적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계	긍정평가 (적정+ 조건부)
일반공공 행정	-	-	2 (16.7)	4 (33.3)	6 (50.0)	12 (100)	10 (83.3)	-	-	9 (31.1)	5 (17.2)	15 (51.7)	29 (100)	20 (68.9)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1 (100)	1 (100)	1 (100)
교육	-	-	-	9 (21.4)	33 (78.6)	42 (100)	42 (100)	-	-	-	9 (20.5)	35 (79.5)	44 (100)	44 (100)
문화 및 관광	-	-	2 (3.4)	23 (39.0)	34 (57.6)	59 (100)	57 (96.6)	1 (0.9)	-	7 (6.7)	26 (24.8)	71 (67.6)	105 (100)	97 (92.4)
환경보호	-	-	-	4 (57.1)	3 (42.9)	7 (100)	7 (100)	-	-	1 (7.7)	5 (38.5)	7 (53.8)	13 (100)	12 (92.3)
사회복지	-	1 (12.5)	-	1 (12.5)	6 (75.0)	8 (100)	7 (87.5)	-	1 (6.7)	3 (20.0)	1 (6.7)	10 (66.6)	15 (100)	11 (73.3)
보건	-	-	-	-	-	-	-	-	-	2 (50.0)	-	2 (50.0)	4 (100)	2 (50.0)
농림해양 수산	-	-	-	-	-	-	-	-	-	-	-	2 (100)	2 (100)	2 (100)
산업· 중소기업	-	-	-	-	9 (100)	9 (100)	9 (100)	-	-	-	-	13 (100)	13 (100)	13 (100)
수송 및 교통	-	-	7 (20.0)	9 (25.7)	19 (54.3)	35 (100)	28 (80.0)	-	-	8 (20.0)	10 (25.0)	22 (55.0)	40 (100)	32 (80)
국토 및 지역개발	-	1 (4.0)	5 (20.0)	8 (32.0)	11 (44.0)	25 (100)	19 (76.0)	-	1 (2.7)	7 (18.9)	9 (24.3)	20 (54.1)	37 (100)	29 (78.4)
계	-	2 (1.0)	16 (8.1)	58 (29.4)	121 (61.4)	197 (100)	179 (90.9)	1 (0.3)	2 (0.7)	37 (12.2)	65 (21.5)	198 (65.3)	303 (100)	263 (86.8)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긍정평가(적정과 조건부 판정 포함)의 비중이 타 분야에서는 대체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건 분야(50.0%), 사회복지 분야(57.1%), 수송 및 교통 분야(66.7%)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도투자심사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긍정평가 비중이 62.5%로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 87.5%, 그 외 교육,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모두 긍정평가 비중이 100%로 높게 나타났다.

자체투자심사의 경우, 긍정평가 비중이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76.0%)와 수송 및 교통 분야(80.0%)의 긍정평가 비중이 타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체 투자심사에서는 보건분야 긍정 평가 비중이 50.0%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8.9%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 3) 사업규모별 투자심사 결과현황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규모별 투자심사 결과현황(5개년 누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6〉 사업규모별 투자심사 결과현황(5개년 누적: 2016년~2020년)

(단위: 건, %)

분야	중앙투자심사							도투자심사						
	반려	부적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계	긍정평가 (적정+ 조건부)	반려	부적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계	긍정평가 (적정+ 조건부)
50억 원 미만	-	-	-	-	-	-	-	-	-	4 (9.5)	4 (9.5)	34 (81.0)	42 (100)	38 (90.5)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	-	-	-	-	-	-	-	1 (25.0)	-	3 (75.0)	4 (100)	3 (75.0)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	3 (33.3)	1 (11.1)	5 (55.6)	9 (100)	6 (66.7)	-	-	3 (37.5)	-	5 (62.5)	8 (100)	5 (62.5)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	3 (25.0)	-	9 (75.0)	12 (100)	9 (75.0)	-	-	-	1 (50.0)	1 (50.0)	2 (100)	2 (100)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	-	3 (25.0)	1 (8.3)	8 (66.7)	12 (100)	9 (75.0)	-	-	-	-	1 (100)	1 (100)	1 (100)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	-	1 (14.3)	1 (14.3)	5 (71.4)	7 (100)	6 (85.7)	1 (33.3)	-	1 (33.3)	-	1 (33.3)	3 (100)	1 (33.3)
500억 원 이상	-	-	1 (20.0)	-	4 (80.0)	5 (100)	4 (80.0)	-	-	1 (50.0)	-	1 (50.0)	2 (100)	1 (50.0)
계	-	-	11 (24.4)	3 (6.7)	31 (68.9)	45 (100)	34 (75.6)	1 (1.6)	-	10 (16.4)	4 (6.6)	46 (75.4)	61 (100)	50 (82.0)

분야	자체투자심사							전체투자심사						
	반려	부적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계	긍정평가 (적정+ 조건부)	반려	부적정	재검토	적정	조건부	계	긍정평가 (적정+ 조건부)
50억 원 미만	-	1 (0.7)	7 (5.1)	44 (32.4)	84 (61.8)	136 (100)	128 (94.2)	-	1 (0.6)	11 (6.2)	48 (27.0)	118 (66.2)	178 (100)	166 (93.2)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1 (2.9)	5 (14.7)	8 (23.5)	20 (58.9)	34 (100)	28 (82.4)	-	1 (2.6)	6 (15.8)	8 (21.1)	23 (60.5)	38 (100)	31 (81.6)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	3 (14.3)	5 (23.8)	13 (61.9)	21 (100)	18 (85.7)	-	-	9 (23.7)	6 (15.8)	23 (60.5)	38 (100)	29 (76.3)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	-	1 (33.3)	2 (66.7)	3 (100)	3 (100)	-	-	3 (18.7)	1 (6.3)	12 (75.0)	16 (100)	13 (81.3)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	-	-	-	1 (100)	1 (100)	1 (100)	-	-	3 (21.4)	1 (7.2)	10 (71.4)	14 (100)	11 (78.6)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	-	1 (100)	-	-	1 (100)	-	1 (9.1)	-	3 (27.3)	1 (9.1)	6 (54.5)	11 (100)	7 (63.6)
500억 원 이상	-	-	-	-	1 (100)	1 (100)	1 (100)	-	-	2 (25.0)	-	6 (75.0)	8 (100)	6 (75.0)
계	-	2 (1.0)	16 (8.1)	58 (29.4)	121 (61.4)	197 (100)	179 (90.9)	1 (0.3)	2 (0.7)	37 (12.2)	65 (21.5)	198 (65.3)	303 (100)	263 (86.8)

중앙투자심사의 긍정평가(적정과 조건부 판정 포함) 비중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제외하면, 사업규모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사업이 66.7%(전체 9건 중 6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과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사업이 각각 75.0%(전체 12건 중 9건),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사업이 85.7%(전체 7건 중 6건)로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체로 긍정평가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투자심사의 긍정평가 비중은 비중이 적은 순서대로 사업규모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사업이 33.3%(전체 3건 중 1건), 500억 원 이상 사업이 50.0%(전체 2건 중 1건),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사업이 62.5%(전체 8건 중 5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이 75.0%(전체 4건 중 3건), 50억 원 미만 사업이 90.5%(전체 42건 중 38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업과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사업이 각각 100%로 나타났다.

자체투자심사의 경우 긍정평가 비중은 투자심사 사업 건수가 많은 50억 원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이 82.4%(전체 34건 중 28건),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사업이 85.7%(전체 21건 중 18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업이 100%, 30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 사업이 100%, 500억 원 이상 사업이 10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클수록 긍정평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심사의 긍정평가 비중은 50억 원 미만 사업이 93.2%(전체 178건 중 166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이 81.6%(전체 38건 중 31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업이 81.3%(전체 16건 중 13건)로 높게 나타났으며, 4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사업이 63.6%, 500억 원 이상 사업이 75.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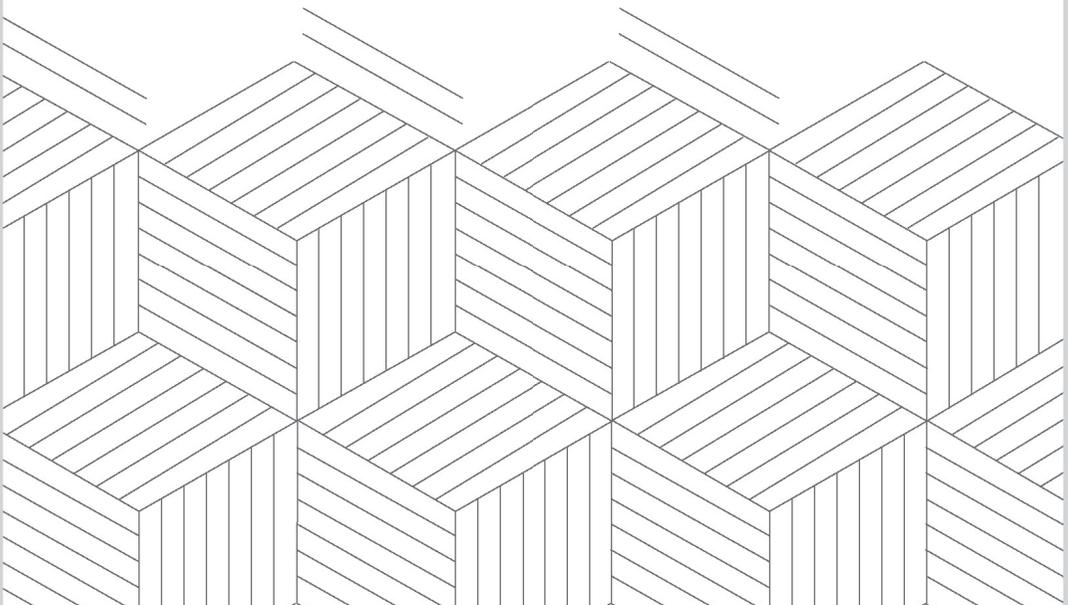
# 제4장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제1절 사전단계: 사업구상 및 계획수립

제2절 심사단계: 사전검토 및 위원회 심사

제3절 사후단계: 이행사항 점검 및 이력관리, 사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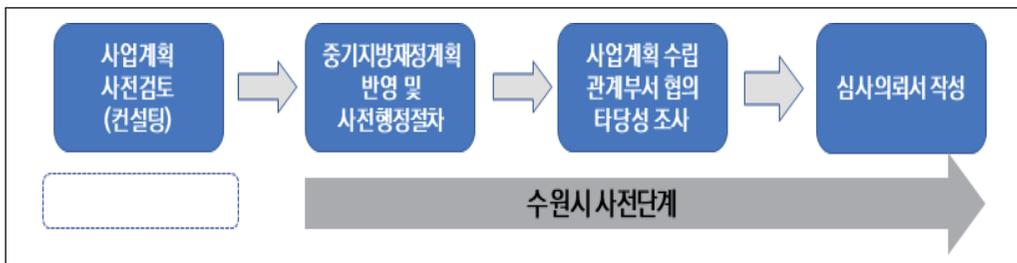


## 제4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 제1절 사전단계: 사업구상 및 계획수립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의 실행단계 중 사전단계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사업구상 및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시행 등 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20). 이와 같은 사전단계를 통해 투자사업의 목적, 규모, 추진체계 및 예산 등이 구체화 되는 것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사전단계의 절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부서는 예산부서 및 전문기관 등과 함께 사업구상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사업과 관련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와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따른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사전단계에서 예산부서 및 전문기관이 사업부서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구상 및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검토(컨설팅) 절차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 사전단계의 업무수행 절차

#### 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사전단계 운영실태를 검토해본 결과 투자심사 심의상정을

위해 요구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주민의견 수렴 등의 사전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되어 조건부 통과가 이루어지는 관행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수원시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부정적 및 재검토, 조건부 판정을 받은 사업들의 판정사유를 분석해 보았다. 아래 <표 4-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부적정 및 재검토 판정 비중의 경우 중앙투자심사(24.1%)와 도투자심사(27.3%)가 자체투자심사(6.9%)에 비해 높았으며,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조건부 판정 비중의 경우는 자체투자심사사업(26.3%)이 중앙투자심사(20.0%)에 비해 높았으나, 도투자심사(28.6%)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사전절차 미이행의 경우 미추진(부적정 및 재검토) 사유인 반면, 자체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투자심사의 경우는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미추진과 조건부 추진의 비율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다른 사전절차로서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 미흡으로 인한 자체투자심사의 조건부 판정(16.3%) 역시 중앙투자심사(8.3%), 도투자심사(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수원시 자체투자심사가 중앙 혹은 도투자심사에 비해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주요원인으로는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심의상정 불가’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이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심의상정은 불가하나, 정책적 차원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석결과 사업 추진의 시급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시기와 사업추진 시기의 불일치 등을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에 의뢰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제도 운영 간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투자사업 추진의 원칙인 만큼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가피한 예외사례의 경우 구체적 원칙을 정하여 추진하거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 부적정/재검토 및 조건부 사유

(단위: 건, %)

사유분류	내용	부적정/재검토 사유				조건부 사유			
		중앙	도	자체	계	중앙	도	자체	계
주민수혜도 및 필요성 점검	중복과잉투자	1 (3.4)	0 (0.0)	1 (3.4)	2 (2.5)	1 (1.7)	2 (1.7)	4 (1.9)	7 (1.8)
	주민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점검	0 (0.0)	2 (9.1)	7 (24.1)	9 (11.3)	0 (0.0)	0 (0.0)	9 (4.3)	9 (2.3)
사업추진준비 미비	사전절차 미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7 (24.1)	6 (27.3)	2 (6.9)	15 (18.8)	12 (20.0)	34 (28.6)	55 (26.3)	101 (26.0)
	계획구체화, 세부프로그램 마련	6 (20.7)	8 (36.4)	11 (37.9)	25 (31.3)	16 (26.7)	17 (14.3)	36 (17.2)	69 (17.8)
사업타당성 미흡	재원조달계획 마련	6 (20.7)	1 (4.5)	0 (0.0)	7 (8.8)	5 (8.3)	15 (12.6)	28 (13.4)	48 (12.4)
	사업규모 및 사업비 검토	8 (27.6)	1 (4.5)	2 (6.9)	11 (13.8)	2 (3.3)	7 (5.9)	2 (1.0)	11 (2.8)
	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 미흡	1 (3.4)	2 (9.1)	3 (10.3)	6 (7.5)	11 (18.3)	8 (6.7)	5 (2.4)	24 (6.2)
절차 및 고려사항 반영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0 (0.0)	0 (0.0)	2 (6.9)	2 (2.5)	5 (8.3)	0 (0.0)	34 (16.3)	39 (10.1)
	주민민원 및 위험 대책, 홍보방안 마련	0 (0.0)	2 (9.1)	1 (3.4)	3 (3.8)	7 (11.7)	22 (18.5)	25 (12.0)	54 (13.9)
	기타	0 (0.0)	0 (0.0)	0 (0.0)	0 (0.0)	1 (1.7)	14 (11.8)	11 (5.3)	26 (6.7)
계		29 (100)	22 (100)	29 (100)	80 (100)	60 (100)	119 (100)	209 (100)	388 (100)

주1: 행정안전부 분류기준으로 재수정

주2: 중복사유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2.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의뢰서 작성

다음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의뢰서 작성 단계를 살펴보면 수원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자심사 사전단계에서는 사업목적, 규모, 추진체계 및 예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한 추상적 사업계획,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간 불일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출 미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심사의뢰서 작성 미숙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데, 이러한 이유로 심사의뢰서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sup>20)</sup> 이러한 경향은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 의뢰가 가능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소규모 사업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표 4-1>를 보면 사업추진준비 미비 사유 중 계획 구체화 및 세부 프로그램 마련 미흡의 사유로 부적정 또는 재검토 판정을 받은 수원시 자체투자심사 사업의 비중(37.9%)이 중앙투자심사(20.7%), 도투자심사(36.4%)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 및 도투자심사에 비해 수원시 자체투자심사에서 구체적 계획 및 세부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 더 빈번히 상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타 사전단계의 문제점으로는 투자사업 관련부서와의 사전 소통 및 협의과정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사전절차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서가 적기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을 검토해보면 첫째, 수원시의 경우 사업구상 및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검토 및 관련부서 간 사전협의 절차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업구상 및 계획단계에서의 사전검토 및 관련부서 간 사전협의 절차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근거자료 및 심사의뢰서 작성의 충실성을 제고하며 필요한 사전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무심사 및 위원회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사업부서가 사업계획 시 예산부서 등과 사전협의를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단계가 매우 미흡하고 예산부서 및 전문기관의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컨설팅 등이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서의 경우 담당인력 및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모든 분야의 투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전검토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과 충실한 심사의뢰서 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경상남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의 효율성 향상, 심사의뢰서 충실성 및 심사 통과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부서에 대한 컨설팅(사전검토제도)<sup>21)</sup>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그 외에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과 관련한 기타 부서들과의 사전협의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충실한

20) 예를 들어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심사의뢰서에 공간개선에 대한 객관적 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정보들이 부족하고 주로 '주민민원으로 인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등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1) 이는 심사단계에서 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심사의뢰서에 대한 사전검토와는 다른 것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미한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구상 및 기획, 사전 타당성 검증,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이 부실하게 수행되어 객관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사업부서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외부 용역 결과에 대해 검증·관리하는 단계가 대체로 생략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단계에서 용역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용역수행 시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초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연구결과가 방법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객관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사업부서가 심사의뢰서를 작성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업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의 경우 기초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세부적인 산출기준, 편익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도출방법, 증빙자료 제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업부서가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사업비 산정 등에 있어서 조달청 기준 등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수원시 상황과 괴리가 있어 사업부서의 적정비용 산출이 어렵고, 심사의뢰서 의무제출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미비하여 근거자료 제출이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및 경기도 공공투자센터 등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적합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주로 이전에 제출된 심사의뢰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거나, 서울시 및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심사의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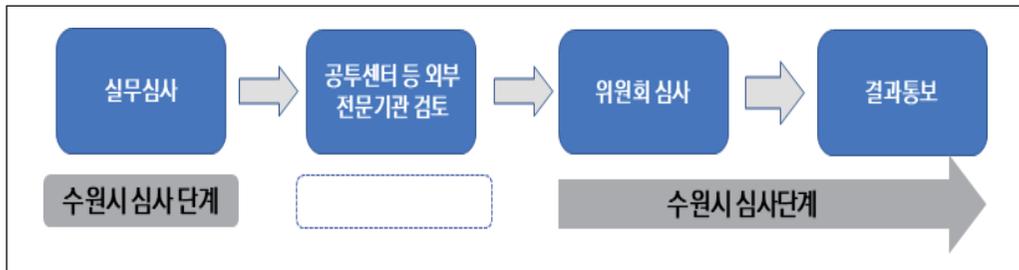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및 심사의뢰서 작성에 대한 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이 미흡하여, 심사 절차 및 방법, 심사의뢰서 작성에 대한 내용 숙지가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 기인한다. 특히 순환보직으로 인해 투자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투자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투자심사를 처음 접하는 사업담당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투자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파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실한 사업계획과 심사의뢰서 작성을 담당자에게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는 비단 사업담당자에게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사업 전반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자급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투자심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해당 가이드라인의 경우도 수원시의 상황과 차이가 있어 심사의뢰서 작성이 까다롭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제2절 심사단계: 사전검토 및 위원회 심사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의 심사단계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심사의뢰서를 예산부서의 투자심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의뢰된 사업에 대해 실무심사 및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행정안전부, 2020).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심사단계의 종합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심사의뢰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실무심사를 실시한 후, 공공투자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단계의 절차 역시 사전단계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심사단계 중 서울시 및 경기도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사전 검토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심사단계의 업무수행 절차

### 1.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수원시의 실무심사 절차는 먼저 예산부서의 투자심사 담당자가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약 1달 전까지 심사의뢰서를 수합하여, 심사의뢰서에 대한 검토를 약 3~4주간 실시하며,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사전검토회의를 거쳐 투자심사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정여부가 결정되면 실무심사 의견 첨부하여 투자심사위원회 1주일 전까지 심의자료 및 사전 질의서를 투자심사 위원에게 배포하여 위원들이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사전질의와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한다.

실무심사 시에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시급성, 재원조달가능성,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사의뢰서 및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 때 원칙적으로 해당사업을 상정

보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수원시 전체 투자심사 의뢰사업 46건 중 21건 (45.7%)이 상정보류 되었으며, 2019년도의 경우는 전체 투자심사 의뢰사업 85건 중 26건 (30.6%)이 상정보류 되었다.

수원시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단계에서의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실무심사 의견이 매우 개략적이어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추진 이력, 현상실사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위원회 전에 이러한 실무심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위원회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심사의뢰서의 기본적인 오류검토와 부실자료로 인한 반려 및 보완요청 절차가 미흡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1차 검토 등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 부서의 의뢰서 작성 및 보완을 위해 투자심사 담당부서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심사 관리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원시 투자사업 실무심사 담당 공무원은 1명이나 실무심사 이외에도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실한 사전검토를 위한 인력 및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이 사전검토를 지원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 사업 사전검토에 공공투자센터 인력 약 5~10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원시 투자사업 사전검토를 위한 실무심사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산부서 실무심사 후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토 절차가 미비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투자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공투자센터를 통해 사전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외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은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 투자심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sup>23)24)</sup> 특히, 서울시 및 경상남도 공공투자센터 등 일부 공공투자센터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직접 수행하여 투자심사 위원회에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수원시 투자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검토 단계가 생략되다 보니 개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요건 충족 여부 및 심사의뢰서 상 오류 등이 사전에 확인되기 어렵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할 수 없어 심사과정에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원시에서 2020년 운영되었던 사전검토회의 등의 실효성이 저하 된 것도 원인 중

23) 이 과정에서 사전검토자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24) 전문기관 사전검토 시 사업부서에 투자심사 자료 보완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투자심사 담당부서 실무심사 이후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제1부시장 및 실국장이 참여하여 투자사업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회의를 운영하였다. 종합적 시각에서, 수원시 재정상황 및 사업 전체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자사업의 상정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수용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사전검토회의는 투자심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전검토회의를 기존과 같은 회의방식으로 주최하지 않고,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검토 후 기획조정실장 서면결재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단계가 더욱 미흡해졌다고 할 수 있다.

## 2.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수원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현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크게 심사제도의 실효성 문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의 문제, 심사자료 검토의 문제,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 심사제도의 실효성

먼저 수원시 투자심사사업의 통과비율을 검토해본 결과, 2016년~2020년 간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통과비율 평균은 중앙투자심사 75.6%, 도투자심사 82.0%, 자체투자심사 90.9%로 자체투자심사 통과비율이 중앙 혹은 도투자심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수치상 자체투자심사에 상정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원시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4-2〉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율(긍정평가) 현황(2016년~2020년 평균)

(단위: %)

구분	중앙투자심사	도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
긍정평가 비중(적정+조건부판정)	75.6	82.0	90.9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보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투자심사결과를 전국과 경기도의 전체 투자심사 사업 및 시사업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2019년 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수원시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통과비율(75.6%)은 전국 중앙투자심사 전체 사업(73.64%) 및 시사업(69.31%) 평균보다 높으며, 경기도 중앙투자심사 전체 사업(67.13%) 및 시사업(64.70)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시 도투자심사 사업의 통과비율(82.0%)은 전국 도투자심사

전체사업(87.84%) 및 시사업(84.42%) 평균보다 낮았으며, 경기도 도투자심사 전체 사업(86.35%) 및 시사업(83.88)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원시 도투자심사가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행사성 사업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 자체투자심사 사업의 통과비율(90.9%)은 전국 시군구 자체투자심사 전체사업(98.96%) 및 시사업(98.41%) 평균보다 낮았으며, 경기도 자체투자심사 전체 사업(97.79%) 및 시사업(97.60%)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에 부여되는 인구 100만 이상 자치단체에 대한 심사권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심사권한 특례에 따른 심사 관대화 현상이 수원시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수원시의 자체투자심사 통과비율이 90% 이상으로 중앙투자심사 및 도투자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검토가 요구되지만,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대도시 심사권한 확대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효성 제고의 문제와 심사권한 확대의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4-3〉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율(긍정평가) 현황 비교

(단위: %)

전국		긍정평가비중(%)				경기도		긍정평가비중(%)			
		2019	2018	2017	3년 평균			2019	2018	2017	3년 평균
중앙 투자 심사	전체사업	78.67	70.97	71.28	73.64	중앙 투자 심사	전체사업	78.29	57.14	65.96	67.13
	시사업	78.03	64.50	65.41	69.31		시사업	78.35	55.74	60.00	64.70
시도 심사	전체사업	90.73	88.82	83.97	87.84	시도 심사	전체사업	95.51	88.80	74.76	86.35
	시사업	91.17	85.57	76.53	84.42		시사업	96.15	85.89	69.59	83.88
시군구 심사	전체사업	99.22	98.58	99.10	98.96	시군구 심사	전체사업	97.86	97.27	98.24	97.79
	시사업	98.66	98.06	98.52	98.41		시사업	97.73	97.01	98.07	97.60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다음으로 수원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재검토 사업들이 대체로 다음 정기 및 수시심사에서 통과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진행된 투자사업 중 재검토 판정을 받은 16건의 사업 중 사업 중지 및 취소 3건, 부적정 1건, 확인불가 1건을 제외한 총 11건의 사업들을 검토해본 결과 이중 9건이 재상정되어 심의에 통과 되었다. 특정 사업의 경우는 재검토 판정 후 14일 만에 수시심사 상정을 통해 조건부 판정을 받기도 하여 위원회의 재검토 사업에 대한 관리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4〉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사업의 재상정 결과

(단위: 건)

구분	총 건수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재상정 결과	11건	3건	6건	1건	1건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재심사 대상사업의 경우도 대체로 심의에 통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진행된 투자심사에서 재심사 대상이 된 12건의 사업 중 8건이 재심사 후 심의 통과 되었으며, 재심사 결과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은 4건 또한 재상정을 통해 심의 통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5〉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단위: 건)

구분	총 건수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재심사 결과	12건	4건	4건	4건	0건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해당 사업들이 기존 심사에서 재심사 대상이 된 사유를 살펴보면, 총 12건 중 사업비 증가가 9건, 사업지연 보류가 2건, 사업부지 위치변경이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심사를 지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비 증가에 따라 재심사에 상정되는 문제 자체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재심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통과되고 있다는 점은 재심사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6〉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사유

(단위: 건)

구분	총 건수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보류	사업부지 위치변경
재심사 사유	12건	9건	2건	1건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수원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을 살펴본 결과, 민간위원 구성 비율은 높은 편이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다양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시의 민간위원 구성 비중을 전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수원시의 민간위원 비중(80.0%)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평균(75.7%)보다 높으나, 광역자치단체 평균(87.5%)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시 민간위원 구성을 전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시민단체와 행·재정 분야의 전문가 비중은 높는데 반해 타 분야 전문가의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시 민간위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인 전문가 민간위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7〉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단위: 건, %)

단체명	공무원	지방 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문 연구원	시민 단체	전직 공무원	기타	계	민간 위원 비중(%)
총계	720 (22.3)	17 (0.5)	726 (22.5)	63 (2.0)	105 (3.3)	99 (3.1)	330 (10.2)	285 (8.8)	879 (27.3)	3,224 (100)	77.1
광역 단체	49 (12.5)	0 (0.0)	206 (52.6)	7 (1.8)	6 (1.5)	41 (10.5)	12 (3.1)	12 (3.1)	59 (15.1)	392 (100)	87.5
기초 단체	671 (23.7)	17 (0.6)	520 (18.4)	56 (2.0)	99 (3.5)	58 (2.0)	318 (11.2)	273 (9.6)	820 (29.0)	2,832 (100)	75.7
수원시	3 (20.0)	0 (0.0)	4 (26.7)	0 (0.0)	0 (0.0)	4 (26.7)	2 (13.3)	0 (0.0)	2 (13.3)	15 (100)	80.0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및 수원시 내부자료

### 3) 심사자료 검토의 문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 자료를 검토 할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심사 자료 자체가 부실하여 위원회 심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시의 경우 통상적으로 위원회 개최 약 5~7일 전에 심사자료를 배부하는데 인터뷰 결과 사전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심사위원들이 의견이 많았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수원시의 경우 공공투자센터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의 심사의뢰서 사전검토 절차가 없으며, 제공되는 현장실사 자료들도 주로 현장사진 중심으로 심사에 필요한 정보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추가자료 요구 및 자료 수정 요청의 경우도 시간 부족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실무심사 미흡,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검토 체계 부재로 인해 위원회 심사 시 부족한 사업 정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종종 담당 공무원이 안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많은 경우가 있어 시간소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들의 사전질의 절차 활용이 저조하여 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사업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해지는 등 주요사업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경우, 분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여 본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본회의 운영이 가능하나, 수원시의 경우는 모든 안전들을 본회의에서 동일하게 다루다보니 안전 당 심의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4) 위원회 운영의 문제

현재 수원시의 시기별 위원회 안전 수를 검토한 결과 회의 당 안전수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회 안전이 특정 차수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개별 안전에 대해 충실한 사업 검토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주로 정기 3차, 4차 심사에 과도하게 안전이 치중되어 있는데<sup>25)</sup> 2016년도 정기 4차 심사의 경우에는 40건의 안전을 심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기심사 뿐 아니라 수시심사의 경우도 특정 차수에 안전이 몰리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전체 위원회 안전 심의시간은 평균 2시간 내외로 비교적 짧는데 반해 정기심사 기준 1회 당 평균 10건 이상의 사업을 심사하다보니 면밀한 사업검토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회의 당 안전이 과다하고, 전문기관 및 분과위원회 등의 사전검토 체계가 미비한 구조에서 수원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객관적 투자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26)</sup>

25)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3, 4차 사업에 상정되어 투자심사와 동시에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을 차년도로 넘기기 위해 상정시기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영향이 있다.

26)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중앙투자심사나 공공투자센터와 같이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광역시·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에 대해 검증이 사전에 이루어져 안전 당 심의시간 부족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나, 수원시와 같이 공공투자센터 및 분과위원회 등의 사전검토 체계가 미비한 경우는 과다한 안전에 따른 위원회 심의시간 부족이 투자심사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4-8〉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회의 당 심사건수

(단위: 건, %)

심사년도	정기	안건수	수시	안건수
2016	정기1차	8	수시1차	1
	정기2차	6	수시2차	1
	정기3차	4	수시3차	1
	정기4차	40	수시4차	0
<b>계</b>	<b>61</b>			
2017	정기1차	5	수시1차	0
	정기2차	12	수시2차	0
	정기3차	4	수시3차	0
	정기4차	18	수시4차	0
<b>계</b>	<b>39</b>			
2018	정기1차	6	수시1차	1
	정기2차	11	수시2차	0
	정기3차	16	수시3차	0
<b>계</b>	<b>34</b>			
2019	정기1차	3	수시1차	1
	정기2차	5	수시2차	7
	정기3차	28	수시3차	3
<b>계</b>	<b>47</b>			
2020	정기1차	5	수시1차	2
	정기2차	5	수시2차	0
	정기3차	4	수시3차	0
<b>계</b>	<b>16</b>			
<b>총계</b>	<b>197</b>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제3절 사후단계: 이행사항 점검 및 이력관리, 사후평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의 사후단계는 자치단체별로 투자심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투자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촉진시키고, 평가결과를 공표해 투자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계이다(행정안전부, 2020).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사후단계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자심사 결과 적정 및 조건부 판정을 받아 통과한 투자사업의 단계별(준비단계 → 추진단계 → 완료단계) 사업 정보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며,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는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에 대한 사후단계 체계 전체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4-3〉 사후단계의 업무수행 절차

수원시 투자심사 사후단계에 있어 투자사업 성과를 평가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심사결과와 다르게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추진될 경우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투자사업 추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조남건 외, 2019). 인터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후관리 단계의 현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원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통과된 사업의 이행사항 점검 및 위원회 보고 등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2020년간 수원시 자체투자심사사업 197건 중 121건(61.4%)이 조건부 판정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각 사업의 조건부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심사통과된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력관리, 집행현황 등 추진경과 보고 역시 미흡하여, 예산 집행 및 사업계획 변동 여부 등에 대한 내용 확인과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sup>27)</sup>

재검토, 재상정 사업에 대한 심사 및 집행 이력에 대한 정보제공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등으로 재검토 대상이 된 사업에 대한

27) 투자심사위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투자심사 이후 이행사항 점검에 대한 경과보고 등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예: 예산집행 및 사업계획 변동 여부 등)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관리가 미흡하고,<sup>29)</sup> 재상정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 부적정 사유와 사업계획의 수정 등 재상정된 사유에 관한 세부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 최근 3개년 동안 진행된 투자심사사업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평가는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대개의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의 진행률만 점검을 하고 준공이후 단계에서 성과관리는 수행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연례반복 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 시 기존 성과평가 결과가 심사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평가 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이력관리의 경우, 이력관리 의무대상 사업 및 개별부서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이력관리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총괄부서 및 총괄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력관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력관리에 있어서 이력관리 의무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체계적 DB구축이 미흡하고, 사업담당자 순환보직으로 인해 투자사업 관리에 대한 업무 연속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워 투자사업 추진 시 활용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투자심사를 완료한 개별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중복 사업 도출, 투자의사결정 지원, 사업 진행현황 공유, 사업 연속성 확보, 모니터링 강화, 투자심사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명주 외, 2019).

한편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재정관리제도 간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논의해 보아야 할 쟁점이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전관리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제도의 경우는 사후관리 제도로 사후평가를 통해 성과부진사업의 구조조정 등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한명주 외, 2019). 수원시의 경우 자체재원에 의한 투자사업에 대해 매년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연례반복 및 유사사업 등에 대한 투자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재정관리제도로써 주요 재정사업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단계(사전 재정사업 관리단계)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투자심사제도와 사후적 관리단계인 재정사업평가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한명주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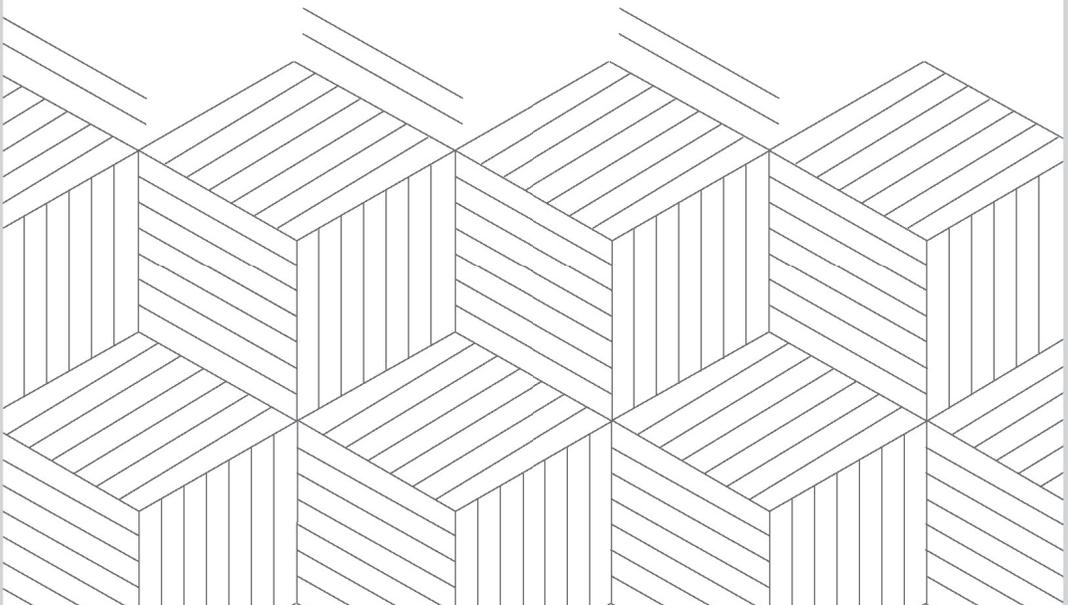
28) 예를 들어 3년 전 통과된 사업이 갑자기 예산재정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재검토 사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력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지 않아 합리적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특히 사업비 증가 사유로 재심사 대상이 된 경우가 문제라는 투자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초기 심사 시 사업비가 적정수준이라 통과되었지만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재심사가 들어오게 되면 기회비용(예: 보상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제5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제1절 공공투자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제2절 예산부서 투자심사 담당 공무원 인터뷰





## 제5장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 제1절 공공투자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개요

수원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실무진 의견을 청취하고자 수원시 투자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2016년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공공투자사업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수원시 공무원으로, 해당 기간 내 투자심사가 이루어진 투자사업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8월 9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12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총 138명의 사업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99명이 응답하여 최종 응답률은 71.7%로 나타났다.<sup>30)</sup>

## 2. 응답자 기초통계

응답자 현황을 직급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7급이 48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6급이 41명(41.4%)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6급과 7급 공무원이 89명(89.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외 8급은 5명(5.1%), 9급은 1명(1.0%), 무응답을 포함하여 별도로 직급 구분이 어려운 기타는 4명(4.0%)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별로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공무원이 29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이 21명(21.2%)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이 16명(16.2%), 25년 이상인 공무원이 15명(15.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13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공무원이 5명(5.1%)으로 나타났다.

30) 투자심사사업 담당자 중 현재 휴직 중이거나 이직한 경우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5-1〉 응답자 기초통계

(단위: 명, %)

직급	응답자 수	재직기간	응답자 수
계	99 (100)	계	99 (100)
6급	41 (41.4)	5년 미만	16 (16.2)
7급	48 (48.5)	5년 이상 10년 미만	21 (21.2)
8급	5 (5.1)	10년 이상 15년 미만	29 (29.3)
9급	1 (1.0)	15년 이상 20년 미만	13 (13.1)
기타	4 (4.0)	20년 이상 25년 미만	5 (5.1)
		25년 이상	15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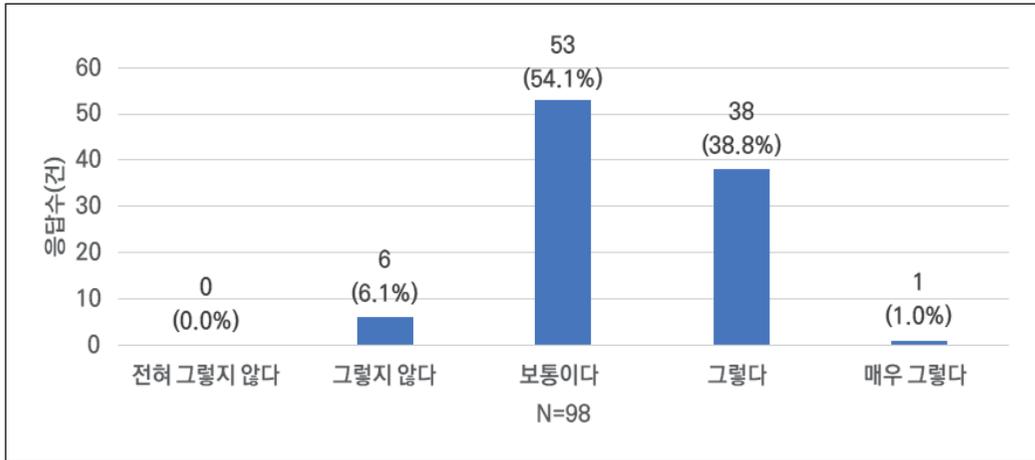
### 3. 인식조사 결과

#### 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자체심사)에 대한 인식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인식, 제도 운영의 목적 적합성, 자체심사의 관대화 경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1) 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인식도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3건(54.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38건(38.8%),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건(6.1%),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건(1.0%)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응답자 중 약 40%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38.8%), '매우 그렇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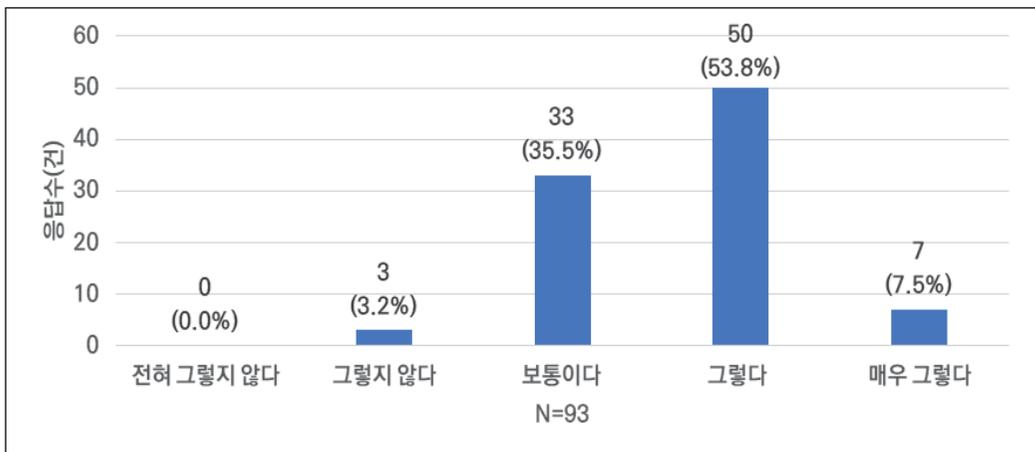


〈그림 5-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인식

## (2) 제도 운영의 목적 적합성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자체심사)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50건(53.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3건(35.5%)이며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7건(7.5%)이었다. 반면 투자심사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건(‘그렇지 않다’ 3.2%)에 그쳤다.

응답자의 61.3%(‘그렇다’(53.8%), ‘매우 그렇다’(7.5%))가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투자사업 담당자들이 대체로 투자심사제도가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5-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목적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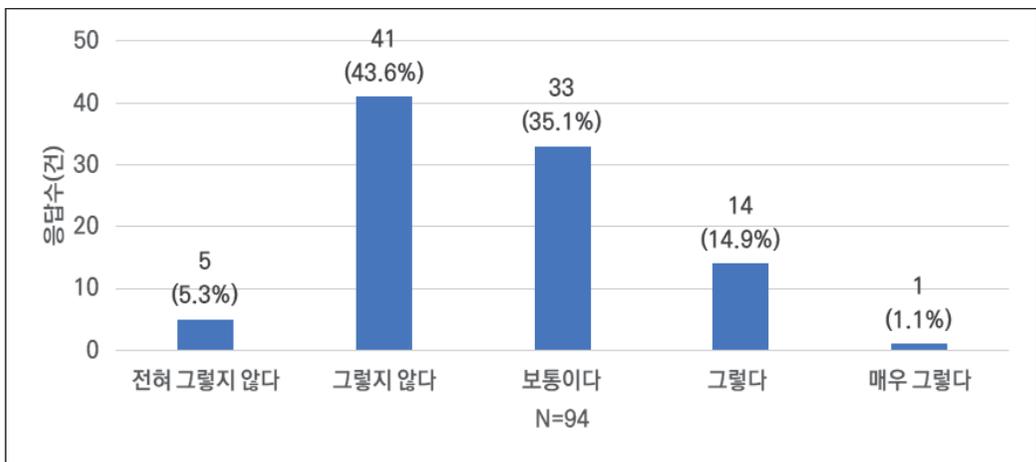
한편,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그렇지 않다’ (3.2%)) 그 이유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2건)과 ‘심의위원회의 심의시간 및 자료 부족’ (2건)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소통 부족’(1건)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합목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 ‘지나친 행정절차로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됨’, ‘제도의 본 목적인 예산 중복성 심사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사업에 대한 예산부서 및 심의위원회의 이해가 부족함’, ‘사업분야별 접근법이 달라야 하나 예산 절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심사위원이 대부분 경제 분야 전문가로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설득이 어려움’ 등이 제시되었다.

### (3) 자체심사의 관대화 경향 여부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경기도 투자심사와 중앙 투자심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1건(4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이다’는 응답이 33건(35.1%), ‘그렇다’는 응답이 14건(14.9%),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건(5.3%),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건(1.1%)으로 분석되었다.

응답분석 결과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관대화 경향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48.9%(‘그렇지 않다’(43.6%), ‘전혀 그렇지 않다’(5.3%))로 나타나, 투자심사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 절반 정도는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경기도 및 중앙 투자심사에 비하여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3〉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관대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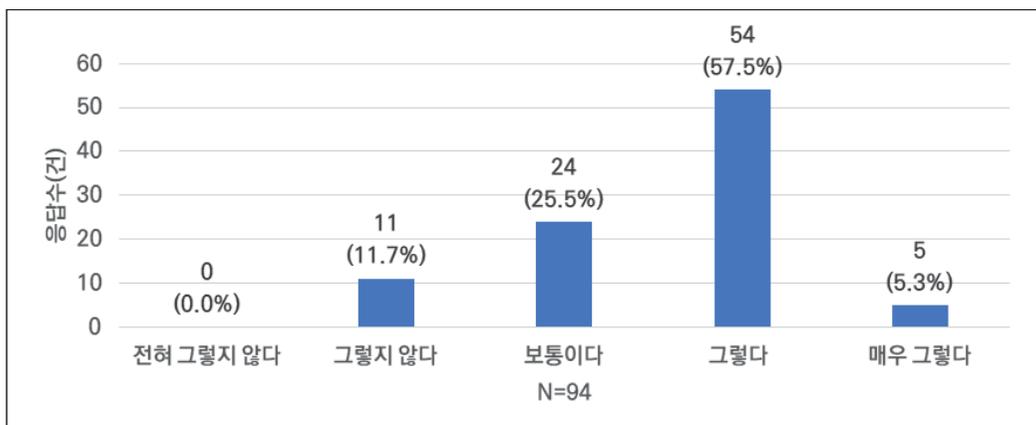
## 2)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적절성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적절성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과 소통, 위원 심의 기간의 충분성, 위원회 심의 전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 사업 이력관리의 적절성, 사업 이력 관리 강화의 필요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1) 부서 간 협업과 소통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 준비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과 소통이 원활한가'에 대하여 '그렇다'라는 응답이 54건(57.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4건(25.5%),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1건(11.7%),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5건(5.3%)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응답이 62.8%(‘그렇다’ (57.5%), ‘매우 그렇다’(5.3%))로 투자심사 사업 담당자들은 대체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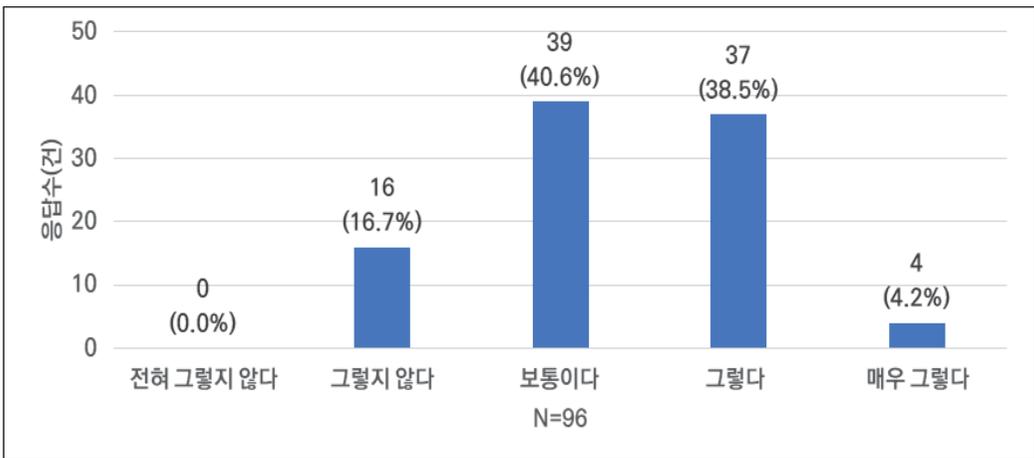
〈그림 5-4〉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 및 소통

### (2) 위원들의 심의기간 충분성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위원들이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심의시간이 충분한가'와 관련하여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9건(40.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라는 응답은 37건(38.5%)으로 '보통이다'라는 응답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6건(16.7%),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4건(4.2%)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 사업담당자 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심의기간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42.7%('그렇다'(38.5%), '매우 그렇다'(4.2%))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위원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에 심의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렇지 않다'(16.7%)). 이러한 응답 결과는 '사업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하기에는 심의기간이 짧다'는 심의위원 및 예산부서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데, 이는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심의절차 및 과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데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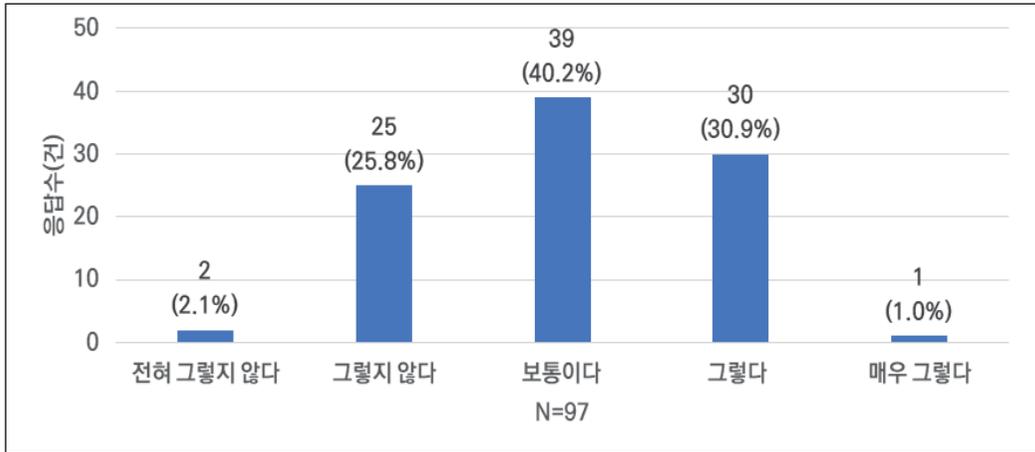


〈그림 5-5〉 의원들의 심의기간 충분성

### (3) 위원회 심의 전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 이전 실무심사 및 심의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보통이다'는 응답이 39건(4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라는 응답은 30건(30.9%),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25건(25.8%)이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2건(2.1%),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1건(1.0%)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심사 및 심의 내용에 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1.9%('그렇다'(30.9%), '매우 그렇다'(1.0%))이며, 반면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27.9%('그렇지 않다'(25.8%), '전혀 그렇지 않다'(2.1%))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투자심사 사업담당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6〉 위원회 심의 전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

이에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 결과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재직기간에 따른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5-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직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위원회 심의 전 실무심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5-2〉 재직기간별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 인식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97 (100)	2 (2.1)	25 (25.8)	39 (40.2)	30 (30.9)	1 (1.0)
5년 미만	15 (100)	0 (0.0)	7 (46.7)	7 (46.7)	1 (6.7)	0 (0.0)
5년 이상	20 (100)	1 (5.0)	7 (35.0)	11 (55.0)	1 (5.0)	0 (0.0)
10년 미만	29 (100)	0 (0.0)	5 (17.2)	12 (41.4)	12 (41.4)	0 (0.0)
10년 이상	13 (100)	0 (0.0)	4 (30.8)	2 (15.4)	6 (46.2)	1 (7.7)
15년 미만	5 (100)	0 (0.0)	0 (0.0)	2 (40.0)	3 (60.0)	0 (0.0)
15년 이상	15 (100)	1 (6.7)	2 (13.3)	5 (33.3)	7 (46.7)	0 (0.0)
20년 미만	5 (100)	0 (0.0)	0 (0.0)	2 (40.0)	3 (60.0)	0 (0.0)
20년 이상	15 (100)	1 (6.7)	2 (13.3)	5 (33.3)	7 (46.7)	0 (0.0)
25년 미만	5 (100)	0 (0.0)	0 (0.0)	2 (40.0)	3 (60.0)	0 (0.0)
25년 이상	15 (100)	1 (6.7)	2 (13.3)	5 (33.3)	7 (46.7)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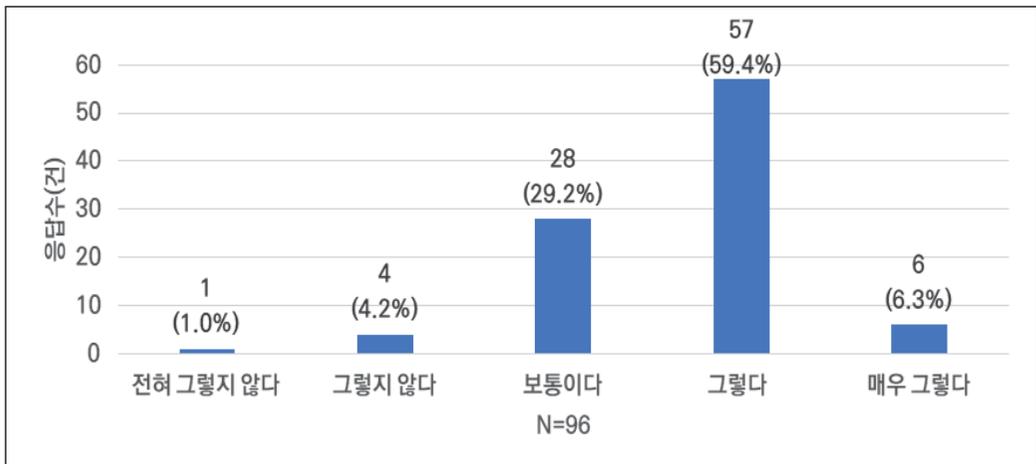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7건(46.7%)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1건(5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12건(41.4%)으로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6건(46.2%),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건(7.7%)이었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3건(60.0%),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7건(46.7%)으로 가장 많아 재직기간이 길수록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사업 이력관리의 적절성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상정된 사업의 과거 심사 및 집행 이력과 심의 통과 이후 사업 집행에 대한 이력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57건(5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8건(29.2%),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6건(6.3%)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4건(4.2%),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건(1.0%)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사업 이력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65.7%(‘그렇다’(59.4%), ‘매우 그렇다’(6.3%))로, 투자심사 사업 담당자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된 이후 사업 집행에 관한 이력관리가 각 부서에서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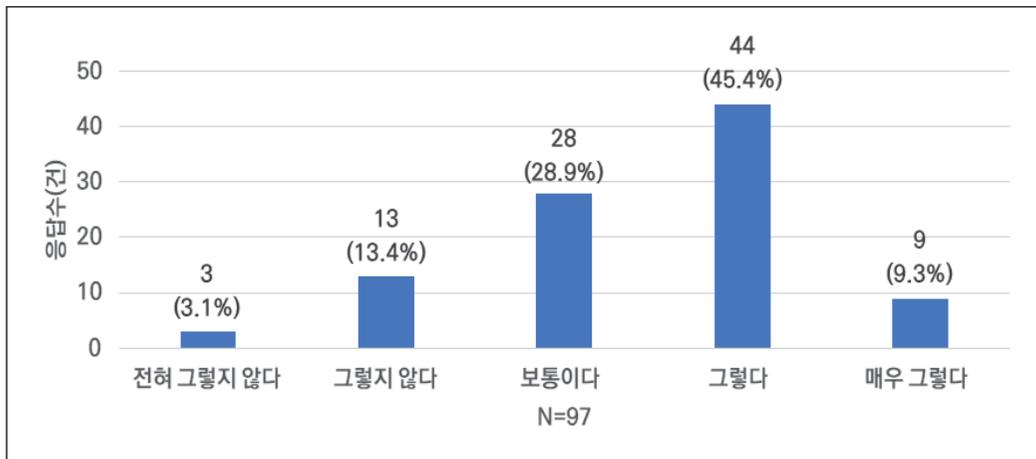
〈그림 5-7〉 사업 이력관리의 적절성

31) 본 응답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투자심사 사업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자체적인 이력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높았으나, 총괄부서 및 총괄시스템을 통한 투자사업 전체에 대한 이력관리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5) 사업 이력관리 강화의 필요성

‘공공투자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그렇다’라는 응답이 44건(45.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8건(28.9%),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3건(13.4%),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9건(9.3%),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건(3.1%)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4.7%(‘그렇다’(45.4%), ‘매우 그렇다’(9.3%)로 과반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상정된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조사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해 65.7%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을 감안할 때, 사업담당자들은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8〉 사업 이력관리 강화의 필요성

한편, 응답자의 재직기간별로 사업 이력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재직기간이 길수록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담당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이력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7건(46.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6건(40.0%)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9건(45.0%),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1건(37.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7건(53.9%),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3건(60.0%)이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이력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8건(53.3%),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4건(26.7%)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투자심사 사업담당자들은 전반적으로 사업 이력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담당자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사업 이력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3〉 재직기간별 사업 이력관리 강화의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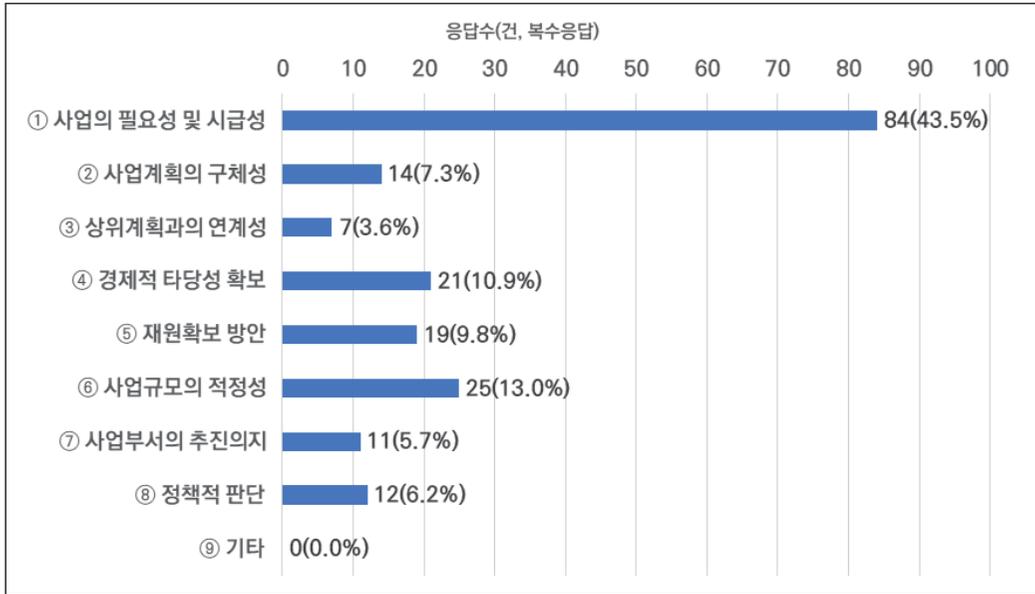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97 (100)	3 (3.1)	13 (13.4)	28 (28.9)	44 (45.4)	9 (9.3)
5년 미만	15 (100)	0 (0.0)	1 (6.7)	7 (46.7)	6 (40.0)	1 (6.7)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0)	3 (15.0)	2 (10.0)	5 (25.0)	9 (45.0)	1 (5.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 (100)	0 (0.0)	6 (20.7)	10 (34.5)	11 (37.9)	2 (6.9)
15년 이상 20년 미만	13 (100)	0 (0.0)	3 (23.1)	2 (15.4)	7 (53.9)	1 (7.7)
20년 이상 25년 미만	5 (100)	0 (0.0)	0 (0.0)	2 (40.0)	3 (60.0)	0 (0.0)
25년 이상	15 (100)	0 (0.0)	1 (6.7)	2 (13.3)	8 (53.3)	4 (26.7)

## (6)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중요 고려요소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라는 응답이 84건(4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sup>32)</sup> 이어 ‘사업규모의 적정성’이라는 응답이 25건(13.0%), ‘경제적 타당성 확보’라는 응답이 21건(10.9%)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재원확보 방안’이 19건(9.8%),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14건(7.3%), ‘정책적 판단’이 12건(6.2%), ‘사업부서의 추진의지’가 11건(5.7%),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이 7건(3.6%)으로 분석되었다.

32) 2개 항목을 복수응답 하도록 하여, ( ) 안 비율은 총 응답 수 대비 해당 응답의 비율을 의미한다.

설문에서 전체 9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선택하여 복수응답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담당자 중 상당수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9〉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중요 고려요소

### 3) 투자사업 계획 및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다음으로 투자사업 계획 및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들에게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기간,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참고자료,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어려운 부분, 투자심사 준비 시 문제사항, 컨설팅 전문 지원조직의 필요성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 (1)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기간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sup>33)</sup>에 대한 조사결과 수원시 자체심사보다는 경기도 의뢰심사인 경우, 경기도 의뢰심사보다는 중앙 의뢰심사인 경우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원시 자체심사는 의뢰서를 작성하는데 평균 약 11일이 소요되어 경기도 및 중앙 의뢰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작성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60일이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의뢰심사를 위한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평균 14.1일이 소요되며,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에 최소 2일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중앙 의뢰심사의 경우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에 평균 17.7일이 소요되어 수원시 자체심사나 경기도 의뢰심사에 비하여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의뢰심사를 위한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소 2일에서 최대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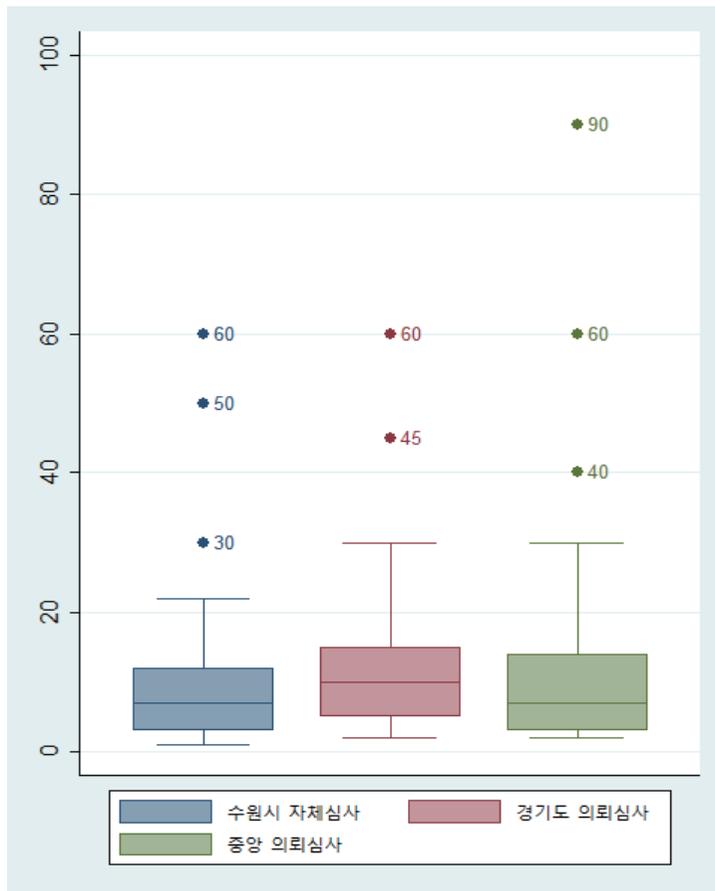
〈표 5-4〉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소요기간

구분		수원시 자체심사	경기도 의뢰심사	중앙 의뢰심사
응답자 수(명)		80	35	17
소요기간 (일)	평균	10.98	14.11	17.65
	중앙값	7	10	7
	표준편차	13.67	14.61	24.50
	최소값	1	2	2
	최대값	60	60	90

33)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수가 다른 것은 투자심사 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수원시 자체심사만 담당하여 경기도 및 중앙 의뢰심사 경험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표 5-4>에서 표준편차 값을 살펴보면 수원시 자체심사(13.67)나 경기도 의뢰심사(14.61)에 비하여 중앙 의뢰심사(24.50)인 경우 투자심사를 위한 의뢰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기간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수원시 자체심사와 경기도 의뢰심사, 중앙 의뢰심사별로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박스플롯으로 도식화하여 보면 다음 <그림 5-10>과 같다.<sup>34)</sup>

종합해보면 대체로 자체심사 의뢰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중앙 및 경기도 의뢰심사 의뢰서 작성기간에 비해 짧고, 경기도 및 중앙 의뢰심사의 경우 자체심사에 비해 사업에 따라 의뢰서 작성기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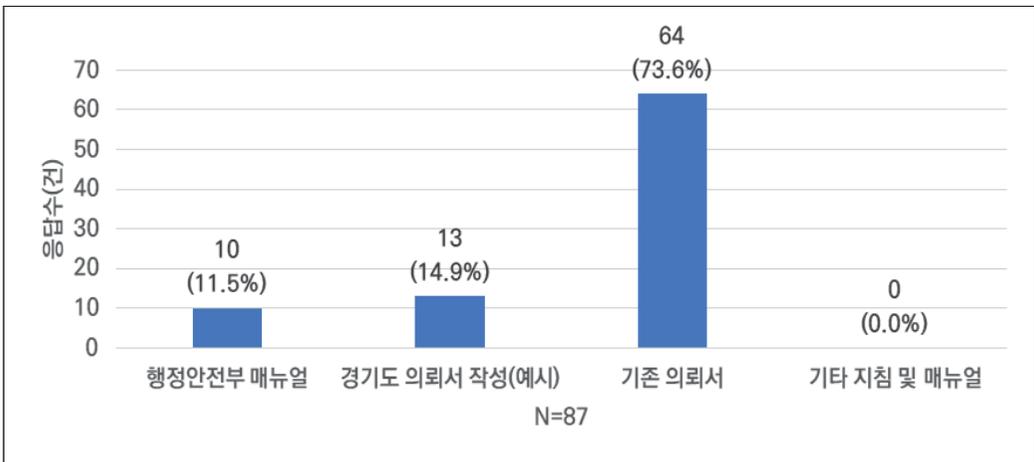


<그림 5-10> 심사유형별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기간 박스플롯

34) 수원시 자체심사와 중앙 의뢰심사의 경우 중앙값이 7일로 동일하고, 경기도 의뢰심사의 경우 중앙값이 10일로 나타났다. 수원시 자체심사와 경기도 및 중앙 의뢰심사 모두 이상치(outlier)들이 존재했으며, 평균치를 고려했을 때 이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의 차이로 심사유형별 의뢰서 작성기간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참고자료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존에 작성된 투자심사 의뢰서’를 참고한다는 응답이 64건(73.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 재정사업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예시)’를 참고한다는 응답은 13건(14.9%),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참고한다는 응답은 10건(11.5%)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타 외부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 및 매뉴얼 등을 참고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그림 5-11〉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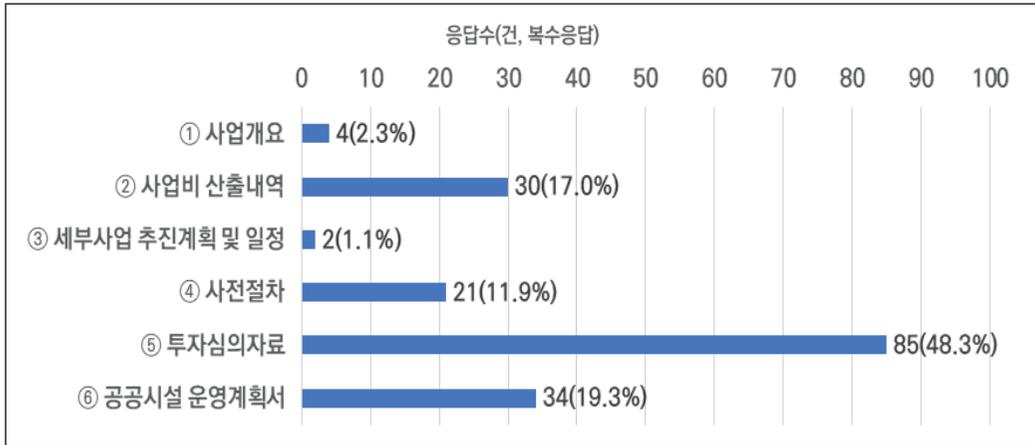
## (3)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어려운 부분

수원시 자체심사와 경기도 의뢰심사, 중앙 의뢰심사를 모두 포함하여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할 때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투자심의자료’라는 응답이 85건(48.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이 투자심의자료의 구체적 내용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자원조달 가능 여부,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공공시설 운영계획서’가 34건(19.3%), ‘사업비 산출내역’이 30건(17.0%), ‘사전절차’가 21건(11.9%)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에는 기구 및 조직, 사업수지 전망, 세부시설 운영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사전절차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부합성, 관계기관 간 협의과정 및 내용, 타당성조사 등이 해당된다.

이에 비하여 ‘사업개요’(4건, 2.3%)와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2건, 1.1%)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답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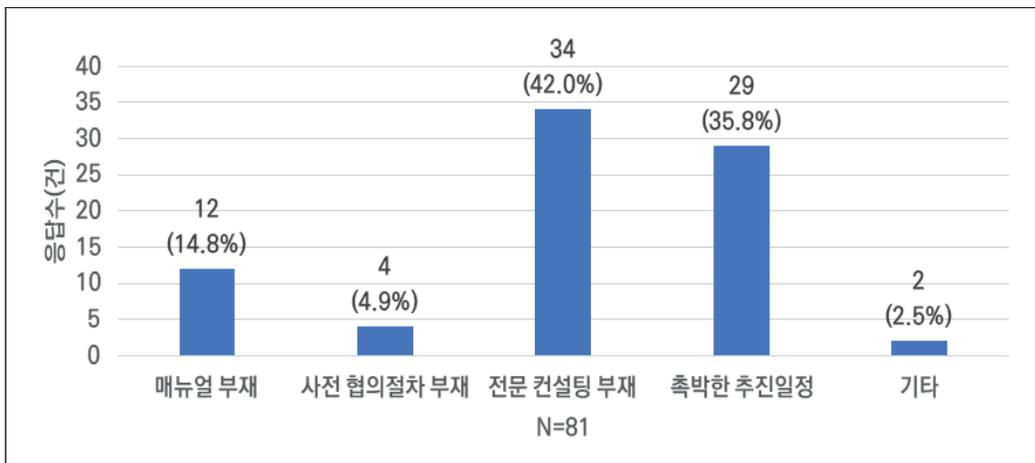
35) 2개 항목을 복수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 ) 안 비율은 총 응답 수 대비 해당 응답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5-12〉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어려운 부분

#### (4) 투자심사 준비 시 문제사항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는 ‘공공 투자사업 계획 수립 및 의뢰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부재’가 34건(42.0%)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촉박한 추진일정으로 충분한 준비 및 사전절차 이행 미흡’도 29건(35.8%)에 이르러, 의뢰서 작성에 대한 전문적 지원 부재와 더불어 충분하지 못한 준비기간이 사업담당자들이 투자심사 추진 시 겪게 되는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어 ‘심사의뢰 절차 및 의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부재’가 12건(14.8%), ‘예산부서 및 사업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절차 부재’가 4건(4.9%), ‘기타’가 2건(2.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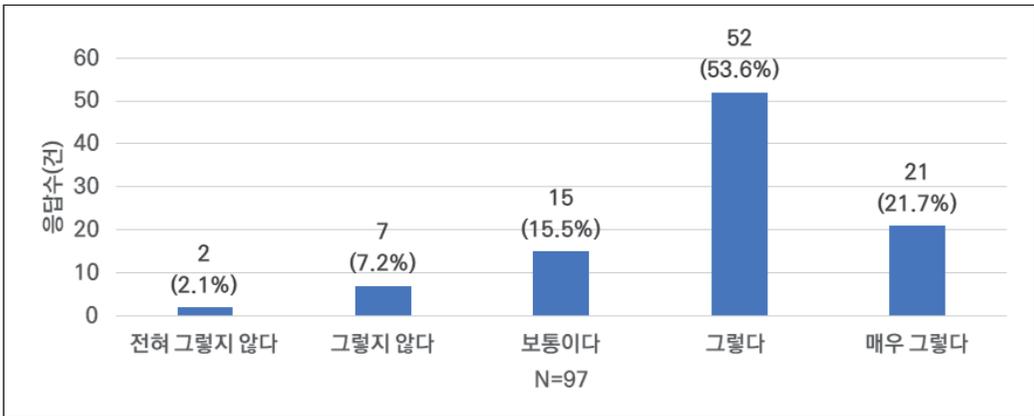
〈그림 5-13〉 투자심사 준비 시 문제사항

### (5) 컨설팅 전문 지원조직의 필요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등에 대하여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문 지원 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그렇다’라는 응답이 52건(5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은 21건(21.7%),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5건(15.5%),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7건(7.2%),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2건(2.1%)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컨설팅 전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3%로(‘그렇다’(53.6%), ‘매우 그렇다’(21.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9.3%(‘그렇지 않다’(7.2%), ‘전혀 그렇지 않다’(2.1%))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사업담당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공공투자사업 계획 수립 및 의뢰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부재’를 지적했고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할 때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투자심의자료’를 꼽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컨설팅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4〉 컨설팅 전문 지원조직의 필요성

### 4) 기타 의견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방형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총 48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면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투자심사 지원체계 마련, 예산부서와의 협의절차 강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강화, 행정시스템 개선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쟁점별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개선을 위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 〈표 5-5〉와 같다.

〈표 5-5〉 주요 쟁점별 지방재정투자심사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

주요 쟁점	의견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자체재원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경우 사업 성격 및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심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함</li> <li>▪ 투자심사 심의대상 사업의 사업비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li> </ul>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li> <li>▪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추진해야 함</li> <li>▪ 사업추진을 먼저 결정한 이후 형식적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li> <li>▪ 심의위원회 심의 전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이 요구됨(기존 문항에 있는 내용임)</li> <li>▪ 계획성 없이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li> </ul>
투자심사 지원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해, 사업계획 수립,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과 관련된 직무교육이 필요함</li> <li>▪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과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됨</li> <li>▪ (주요 사업 유형에 따른) 구체적 사례나 예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li> <li>▪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분석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li> </ul>
예산부서와의 협의절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부서의 사업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예산부서의 경우 예산 효율성을, 사업부서의 경우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중시하여 부서 간 목표가 상이함</li> <li>▪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예산부서와의 소통 및 협의절차를 개선해야 함</li> <li>▪ 예산부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작성기준 및 첨부서류 변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li> </ul>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li> <li>▪ 위원들이 충분히 사업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li> <li>▪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업내용과 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ul>
행정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뢰서 상 중복문항을 정비하는 등 행정절차와 자료 제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li> <li>▪ 부서 자체적으로 사전 사업계획 및 준비절차를 강화해야 함</li> <li>▪ 촉박한 추진일정과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요구됨</li> <li>▪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적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li> <li>▪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실제 예산 반영 간 괴리가 존재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li> <li>▪ 투자심사 일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 제2절 예산부서 투자심사 담당 공무원 인터뷰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 사업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과 더불어 수원시 투자심사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크게 실무심사 단계의 문제점,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1. 실무심사 단계의 문제점

인터뷰결과 투자심사 위원회 전 실무심사 단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사업부서의 의뢰서 작성 미비, 실무심사 사전검토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사전검토회의 운영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사업부서의 심사의뢰서 작성 및 자료제출이 미흡해 실무심사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의뢰서 작성 역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심사의뢰서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해도 보완 없이 제출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예산이 큰 자체심사나 도 및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경우는 외부용역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제출이 용이하나 작은 규모의 투자사업의 경우 담당자가 직접 근거자료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의뢰서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당위성 중심으로 작성되어 사업에 대한 평가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심사를 위한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심사대상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수원시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투자심사 담당 주무관 1명이 실시하고 있어 모든 사업을 자세히 검토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컨설팅은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심사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제시해 줄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지침의 경우 매우 개략적이고 수원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주로 서울시나 경기도 작성지침이나 기존 의뢰서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심사 담당부서가 명확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면밀한 사전검토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실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를 거친 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운영되었던 사전검토회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수원시는 2020년도부터 이와 같은 사전검토회의를 운영하였는데 당초 운영된 사전검토회의는 제1부시장 및 실·국장들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업부서 및 예산재정과 검토 후 기획조정실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사전검토회의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심의과정의 문제와 심의대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다.

### 1) 심의과정의 문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심의시간 부족, 조건부 통과 사업의 증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사후평가·이력관리·이행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먼저 위원회의 심의시간 부족이 심의운영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사유로는 심사의뢰서가 기본적으로 미흡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전 심의 대상사업에 대해 사전질의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실질적 효과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때문에 위원회 심사 시 현장에서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사업담당 공무원의 답변 준비가 미비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투자심사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와 달리 자체심사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며 분과위원회보다는 사전검토 및 사전질의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요사업만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건부 통과 사업이 증가하는 것도 심의과정 상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심사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조건부 통과는 투자심사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엄격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완벽한 조건으로 상정되는 사업은 없고 사업계획 보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투자심사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일 수 있으므로 사업보완을 위한 적절한 조건부 판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심사위원들 중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위원회 구성상 사업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원시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이력관리,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하다는 것도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 후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향후 사후평가, 심사 및 집행 이력관리, 조건부 통과 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력관리 및 점검이 시행 중이며 사후 절차에 대해서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투자심사 위원회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이므로 투자심사 위원회의 중점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sup>36)</sup>

## 2) 심의대상의 문제점

심의대상의 문제로는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상정과 재심사 사업비중 증가가 지적되었다. 먼저 증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상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하반기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은 당해 연도 증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전제로 상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기 3,4차 투자심사 시 관례적으로 본예산 반영, 증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국·도비 확보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업은 증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 예외 사업이며 투자심사 미완료시 국·도비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확실성을 전제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사 대상사업 중 재심사 사업 비중의 증가가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규모 증가로 인한 재심사의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불가피 할 경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20년 간 사업비 규모 증가로 인한 재심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sup>37)</sup> 이와 같이 재심사 사업이 증가하는 현상도 문제이나 해당기간 진행된 재심사 사업의 대부분이 심사에서 통과 되었다는 점이 더 주목할 만한 문제로 재심사 대상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6) 또한 현재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 변경 시 재심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외 위반사항은 감사 및 징계 대상이므로 위원회의 확인 없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37) 재심사 사유 중 사업비 증가가 9건, 3년 이상 사업이면 보류가 2건, 사업부지위치변경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의견

앞서 논의된 내용 외에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과정을 내실화 하는 등 자정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에 대한 심의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sup>38)</sup>

또한 단순히 투자사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심사 기관이 결정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며 심사기관 선정에 있어서 투자사업의 재원구성 및 비중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사업비가 전액 자체재원으로 구성되거나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을 경우 자체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투자사업 계획수립, 면밀한 사업검토 및 실효성 있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원시 내부 또는 외부의 투자심사 지원기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투자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및 조직을 바탕으로 사업 담당부서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심사의뢰서 작성지원<sup>39)</sup> 및 의뢰서 검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 제시 등이 진행된다면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투자사업 계획 보완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38) 특히 동청사 및 체육시설 등은 건립기준에 대한 법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이와 같은 자체재원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심사권한을 부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9) 심사의뢰서 작성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 산출기준, 유사사례, 편익 및 기대효과 도출방법, 증빙자료 제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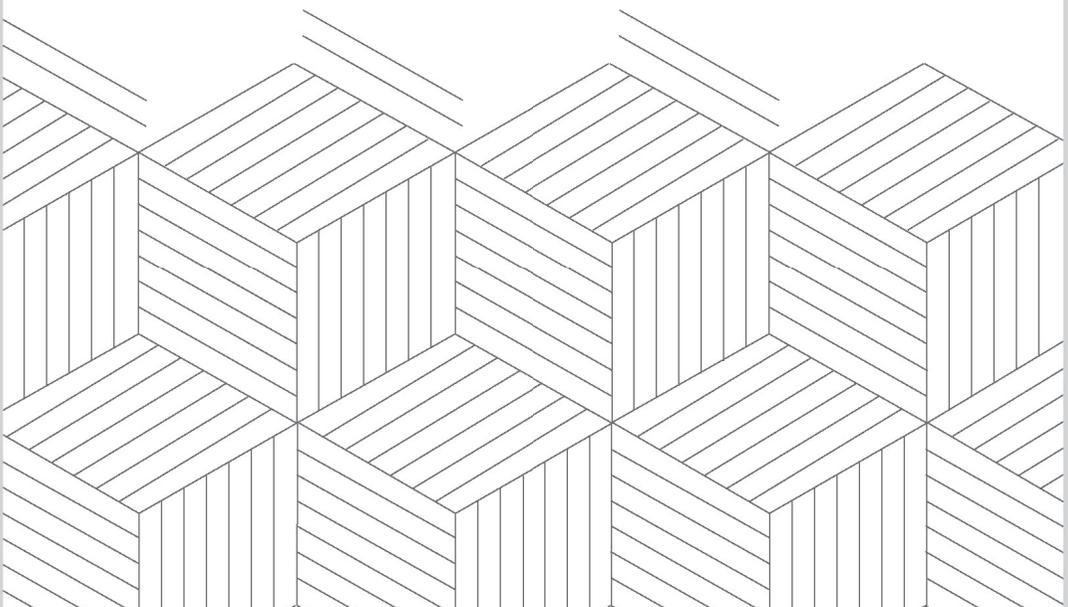
# 제6장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제1절 투자심사 사전단계 개선방안

제2절 투자심사 심사단계 개선방안

제3절 투자심사 사후단계 개선방안

제4절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 제6장

##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실태 분석,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투자심사 단계별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 제1절 투자심사 사전단계 개선방안

## 1.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강화

부실한 투자사업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심사 사전단계에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검토 및 구체적 사업수립에 대한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관계부서 간 사전 협의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전 협의절차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부서, 예산부서, 관계부서 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사전절차 및 제도적 제약에 대한 정보를 상호 확인함으로써 투자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sup>40)</sup> 특히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수요와 주민의견 및 정책적 고려사항<sup>41)</sup>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추진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검토 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약, 민원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투자사업 추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추진할 수 있다.

40) 실제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우선순위 변동에 따른 예산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부서가 적기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1) 특히,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업의 입지 및 노선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이 발생하거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저항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시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한명주 외, 2019).

다음으로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검토 및 구체적 사업수립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원시 내·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컨설팅(사전 검토) 지원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계획수립 및 의뢰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부재'를 문제로 꼽았으며, 응답 공무원의 약 75%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등에 대하여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문적 컨설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2)</sup> 이와 같은 사업구체화를 위한 컨설팅은 전문가의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리강화, 심사의뢰서 작성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 용역의 의뢰 내용과 방식에 대한 컨설팅, 사전이행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타당성 분석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외부 용역을 통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업계획 구체화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의무화 하여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사업부서에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매뉴얼 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후 투자심사 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투자심사에 상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정책적 사유나 민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등 부실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심사에 상정되고 있으나 시급성을 근거로 심사에 통과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원시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 반영,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동시에 진행되는 관행을 철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심의상정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안건 상정 시 명확한 사유기재를 통해 예외 인정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데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시기 조정 등과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외에 투자심사 사전단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이다. 즉 투자심사 사업이 국가 및 도 차원의 계획, 수원시 상위계획 등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원시 투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3)</sup>

42)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서는 사전단계에서의 사전검토(컨설팅)를 수행하고 있다.

43) 서울시의 경우 사업추진의 적법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의 정확한 검토를 위해 상위계획, 중기재정계획, 성과계획 등 관련계획의 반영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한명주 외, 2019).

〈표 6-1〉 서울시 의뢰서 양식 중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구분	계획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x, △)	반영내용
상위계획					
중기재정계획					
성과계획					

〈작성요령〉

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2.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
3.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4.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연계성(예: 지역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자료: 서울특별시(2018).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2. 심사의뢰서의 객관성 및 완성도 제고

투자사업의 심사의뢰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투자심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매년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타 자치단체의 매뉴얼의 경우 수원시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상당수의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이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4)</sup> 또한 최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사업이 복잡화 되고, 보다 복잡하게 계획되어 있어 의뢰서 작성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명주 외, 2019).

따라서 심사의뢰서의 객관성 및 완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첫째, 수원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심사의뢰서 작성 세부 매뉴얼 및 자료공유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주로 기존 심사의뢰서, 경기도 및 서울시 매뉴얼을 주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투자사업에 적용가능 하도록 자체 매뉴얼 개발을 통해 수원시 실정에 맞는 사업비 관련 기준 등(예: 수원시 공사비 실적자료를 적용한 단가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매뉴얼에는 세부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의뢰서 작성 체크리스트 등이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투자심사 사업 담당 공무원이 심사의뢰서 작성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구체적 사례, 타당성 분석방법, 사업비 산출 기준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심사의뢰서에 첨부되어야 할 증빙 자료의 종류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44) 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투자심의자료,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꼽았다.

둘째, 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지침 제공과 함께 심사의뢰서의 객관성 및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투자심사와 관련한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투자심사제도의 절차와 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과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의뢰서 작성에 대한 세부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담당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급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공무원 교육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제시되는 투자심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계획 및 의뢰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심사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사의뢰서의 객관성 및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심사의뢰서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된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 사업 계획수립과 함께 심사의뢰서 작성에 많은 사업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심사의뢰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은 사업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부항목 작성방법, 타당성 분석 방법, 증빙자료 제시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뢰서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심사의뢰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은 앞서 논의된 사전검토 및 구체적 사업수립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수원시 내·외부 전문조직을 통해 추진될 수 있으며, 전면 시행에 앞서 사업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 혹은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중앙 및 도 의뢰심사 사업에 대해 우선 시행해보는 단계적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투자심사 심사단계 개선방안

### 1. 실무심사 및 사전검토 강화

분석결과 수원시의 경우 사업부서의 심사의뢰서 작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실무심사 및 의뢰서에 대한 사전검토 또한 다소 미흡하여 위원회 심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사업의 심사의뢰서는 투자심사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주된 자료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심사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검토 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개별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부실한 사업을 미리 걸러주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실무심사 단계에서 의뢰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의 충실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단 사업담당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심사의뢰서 작성기준 및 양식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의뢰서 내 중복문항 및 불필요한 증빙자료 정비를 통해 행정절차와 자료제출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심사 부서는 사업이력 및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을 보다 상세히 명시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실무심사의 강화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예산부서의 투자심사 담당 공무원 1인이 모든 실무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팀장 등 5인으로 투자관리팀을 구성하여 투자심사 총괄, 민간/재정 투자사업 제도개선, 민자 사업 관리, 중앙심사 업무 총괄, 현장조사,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다(한명주 외, 2019). 이에 수원시의 경우도 투자심사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투자심사에 대한 전문 인력 및 조직 확충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실무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수원시에서 실무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면검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전검토회의의 조직 및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부서 실무심사 후 사전검토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광역시 및 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투자센터 등에서 실무심사를 거친 심사의뢰서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조남건 외, 2019; 한명주 외, 2019), 반면 수원시의 경우는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사의뢰서 사전검토 체계가 현재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시에서도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사의뢰서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심사의뢰서의 질을 제고하고, 투자사업 수요 및 공급의 적정성, 사업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경제성 분석 및 관리운영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전검토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전문성 있는 분석의견 제공함으로써 투자심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전검토 시에는 유형별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고 각 사업에 대해 친편일률적이고 개략적인 검토의견이 아닌 상세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강화 및 객관적 사전검토 기준 마련, 외부기관에서 수행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증기준 마련 및 결과 검증수행 등이 필요하며, 충분한 검토 기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검토를 담당할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검토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2. 위원회 전문성 강화

투자심사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투자심사에 의뢰되는 사업 유형 역시 복잡적이고 다양해지는 추세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에 대해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한명주 외, 2019). 때문에 다양한 분야(재정,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의 실무 경험이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투자심사제도 담당 공무원 인터뷰 및 전국현황 검토 결과, 수원시 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특히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수원시 투자심사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심사위원의 위촉요건을 강화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투자심사제도와 사업 분야별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수원시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이후,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별다른 오리엔테이션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심사위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위원회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정책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목표, 방법, 절차, 분야별 심사기준 등에 대한 위원 사전교육 실시가 요구된다.

## 3. 위원회 운영 내실화

제한된 회의시간 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전검토

및 사전 질의절차 강화를 통해 위원회 논의 안건을 축소하여 위원회에서는 쟁점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사전검토 절차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쟁점 사업만 본회의에서 주로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이러한 분과위원회에 의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심의 사업 수, 분과위원회 운영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익은 사실상 낮은 편으로 판단되므로 사전검토 및 사전질의 절차를 강화하여 위원회 논의 안건을 축소하는 방안이 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본위원회 개최 5일~7일 전에 투자심사위원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데, 과다한 안건 상정과 더불어 사전자료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부실한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서 제출 심사의뢰서가 매우 부실한 상황에서 위원회 개최 전에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질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들의 참여저조로 사전 질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위원들의 충분한 자료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사전질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업내용 확인 및 쟁점사업 도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확인된 쟁점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 및 논의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의 준비정도와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회의 당 상정안건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수원시의 경우 위원회 안건이 특정 차수(주로 정기 3차, 4차)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위원회에서 충실한 사업 검토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회의 횟수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정 수의 안건을 배정하거나, 정책적 사유로 사전절차 이행 없이 당해 연도 예산반영을 위해 이루어지는 투자심사 상정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무심사 결과 부적합 사업은 엄격히 상정을 보류하는 등의 방침이 요구된다.

셋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수행이 필요하다. 투자심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 확보는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지방재정 분권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상의 적정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윤성일·김상기, 2020). 즉 재정분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투자사업이 방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심사위원회가 필요성 및 타당성 없는 정책적 사업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지양함으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재심사 및 재상정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재심사 및 재상정 사업에 대한 심사 및 집행이력에 대한 확인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심사 사업의 경우 재심사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며, 재상정 사업의 경우 기존 심사에서 제시된 부적격 및 재검토 사유에 대해 내용 보완 및 계획 수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계획부실 사업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건부 판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수행된 수원시 자체투자심사 총 197건 중 121건(약 61.4%)이 조건부 판정이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사전절차 이행 사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심의에 상정되어 합리적이고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부 판정에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조건부 사업의 조건부 내역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이행여부 점검이 용이하도록 조건부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역시 요구된다. 현재 조건부 판정 사업이 투자심사 결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건부 내역의 이행 관리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추상적인 조건부 사유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조건부 판정을 내리고, 조건부 판정 시 조건부 내역을 명확히 하며 사후 해당 내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심사에서 종종 서면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면심사의 경우 심사의견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없고 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낮아 부실심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특히 지양할 필요가 있다(한명주 외, 2019).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수원시 자체적인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와 같은 자체 세부기준이 없어 심사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 유형, 규모, 재원구성(자체/보조사업) 등 수원시 투자사업 성격에 따른 구체적 심의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심의기준에는 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판정 판단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위원들이 보다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45)</sup> 이와 같은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을 통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정책적 사업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 특히 조건부 판정, 재심사 및 재상정 사업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5) 예컨대 국도비 신청사업의 재원조달 방식 판단기준, 조건부 사업 판정 제시 방안 등의 심의기준이 필요하다.

## 제3절 투자심사 사후단계 개선방안

### 1. 이력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 철저

투자심사의 이력관리는 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주기(Life Cycle)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다(한명주 외, 2019). 즉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21). 검토결과 수원시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과정의 사전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집행단계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이력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6)</sup> 합리적 투자심사를 위해서는 사업의 심사이력 및 기존사업의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며,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한 핵심정보를 축적·분석하여 재정손실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이력관리 체계 구축은 중요성을 갖는다.

현재 수원시는 의무 이력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와 개별부서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이력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총괄부서 및 총괄시스템을 통한 통합적인 이력관리 체계와 의무 이력관리 대상 사업 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의무이력 관리 대상 외 수원시 투자심사 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 이력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즉 산발적인 개별사업의 이력관리 DB를 활용하여 유사·중복 사업 도출, 투자이사결정 지원, 사업 진행현황 공유, 사업 연속성 확보, 모니터링 강화, 투자심사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이력관리 체계를 통한 DB구축은 순환보직이 잦은 공무원들이 사업의 내용 및 추진 경과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 연계가 가능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의 중복성 검토, 사업효과 판단, 유사사례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사업 계획, 집행, 운영의 충실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원회에 보다 객관적인 사업집행 및 성과 정보를 제공하여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건부 판정 사업에 대한 조건부 내역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투자사업 중 조건부 통과 사업이 상당수이나, 조건부 통과사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심사위원들이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심사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하고 사업추진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46) 실제 투자심사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추진되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계획(예산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명주 외, 2019)

통과된 사업들의 조건 이행에 대한 평가, 이행판단 근거 등 조건부 내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2. 투자심사 결과의 예산연계 강화 및 공개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투자심사제도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로 사업계획의 구체성,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윤성일·김상기, 2020). 따라서 지방 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예산 편성이 투자심사 결과와 다르게 이루어져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편성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 결과가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만큼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편성 간의 괴리는 투자심사제도 운영 취지에 크게 위배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무엇보다 사후 예산편성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 뿐 아니라 집행 단계, 더 나아가 사업 준공 이후 운영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심사 결과와 각 사업단계별 예산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윤성일·김상기, 2020). 이를 위해서 투자사업 추진의 각 단계별로 평가한 결과나 내용이 예산배분에 연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평가 매뉴얼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7)</sup> 사업추진 단계에서의 이러한 평가는 해당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와 조정을 통해 사업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예산반영 과정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투자사업 운영 단계별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진단계별 평가결과, 평가결과의 반영 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윤성일·김상기, 2020).

## 3. 투자사업 사후평가 결과와 투자심사제도 연계방안 모색

투자사업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 성과를 평가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원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사업을 대상

47) 예를 들어, 심사 시 운영계획과 다르게 과도한 사업비 증가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패널티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외, 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 사후평가 시스템이 미비하여 심사결과와 다르게 관행적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추진되거나 사업 운영이 미흡할 경우,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범위를 수원시 투자심사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 및 유지관리 부분까지 사후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후평가는 투자심사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평가 결과는 투자심사제도에 환류 되어 이후 연례반복 및 유사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심사제도에 대해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sup>48)</sup>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재정사업평가 등 타 재정관리제도와 연계강화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사후적 재정관리 제도인 '재정사업평가' 제도는 성과부진사업의 구조조정(예산감액, 일몰 등) 및 사업추진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 운용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조기현 외, 2012). 그러나 현재 수원시의 경우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 사후적 재정관리제도인 재정사업평가의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사업평가 시에는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당초 사업계획(예산 및 사업내용 등)과 무관하게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투자심사 의뢰 시 최초 제안되었던 사업 내용과 추후 운영되고 있는 사업 내용의 비교·검토를 통해 타당한 재정사업평가가 진행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투자심사 체계에 효과적으로 환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하다. 이처럼 사후적 재정관리제도로써 지방 재정사업평가 등과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로써 지방재정투자심사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투자 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48) 예를 들어, 연례반복 및 유사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규모, 자원조달, 입지 등의 핵심 요소에 대한 유용한 정보(적정 수준 및 위험요인 등)를 기존 사업의 사후 평가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절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앞서 논의한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단계별 개선방안은 현재의 심사제도를 전제로 수원시 투자심사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기적 개선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지방재정 분권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상의 적정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권한의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우려와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의 확대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로서 타 기초자치단체와 다르게 상위기관 의뢰 심사기준 하한금액 등에 있어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자체투자심사의 대상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원시 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중앙 및 도투자심사에 비해 높은 자체심사 통과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2019년 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통과율은 전국 및 경기도 전체, 전국 및 경기도 시 전체 통과율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상정보류 비중이 최근 2년 평균 38.2%에 달하는 등 자체적인 검토시스템도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대한 투자심사 권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심사권한 특례에 따른 특별한 관대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컨대, 수원시의 자체투자심사 통과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아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개선이 요구되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심사권한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의 문제와 심사권한 확대의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재정분권의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로서 수원시의 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체심사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수원시를 비롯한 특례시의 경우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공공투자사업 수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적인 투자심사 역량 강화노력이 요구된다. 다양하고 많은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 투자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현재의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상위기관(도 및 중앙정부)에 준하는 합리적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심사 인력의 전문성 및 심사체계의 정교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투자심사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특례시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권한 확대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심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특례시 투자심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를 포함한 특례시의 경우 인구나 재정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따라서 특례시들은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 확보 노력을 통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공공투자사업들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서 각 종 투자심사 기준들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만 구분되어 제시되었을 뿐 새로 지위가 부여된 특례시에 대한 기준 검토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례시 현실에 부합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와 차별성을 갖는 특례시에 대한 별도의 투자심사 규정 마련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심사 권한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대한 사업유형별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 하한에 대한 기준을 특례시 현실에 맞게 상향하거나 기타 투자심사 기준을 기초자치단체와 구분하여 설정함으로써 투자사업 심사권한에 차별성을 둘 수 있다.<sup>49)</sup>

셋째, 재정분권의 기초에 따라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자체재원 사업에 대한 심사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기관 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사업유형과 사업비 규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재원 구성 및 재원구성의 비중을 검토하여 의뢰심사 대상 중 자체재원이 대부분인 사업은 그 기준을 정하여 심사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볼 수 있다.<sup>50)</sup> 재원의 규모에 따른 기준에 있어서도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 기준 하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sup>51)</sup>하여

49) 실제로 수원시 도심사 대상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시설 사업 총 21개 중 현재 하한인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사업은 0건,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사업은 1건(4.8%), 4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은 2건(9.5%)으로 나타났으며 50억 원 미만 사업은 대체로 증축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기준 금액 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뢰심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0) 의뢰심사 대상사업 106개중 시비비중 90%이상이 41개(38.7%), 95% 이상이 39개(36.8%), 100%가 36개(34.0%)로 나타나 의뢰심사 대상사업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51) 지방행정연구원(2020) 투자심사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 자체심사 적정 하한기준(일반투자사업)의 경우 40억 원 52.7%, 30억 원 39.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의뢰심사 적정 하한기준(문화·체육시설 및 청사시설)의 경우 40억 원(58.33%), 30억 원(27.78%) 순으로, 기초 지자체 시도 의뢰심사 적정 하한기준(행사사업)의 경우 5억 원(80.95%), 4억 원(6.35%)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고 투자심사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기준들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특례시를 포함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심사 권한확대는 반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투자심사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내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권한의 확대에 따라 투자심사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투자심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 김대중, 김영찬, 김도일. (2019). 「경기도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지침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사례와 쟁점」. 경기연구원.
- 김병석, 신원상, 김도일. (2019).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방법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마강래, 강은택, 김병석. (2019).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타당성 조사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 박영민, 이세구. (2015).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방안」. 서울연구원.
- \_\_\_\_\_, 김나리, 장경원, 어한나. (2017).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서울연구원.
- \_\_\_\_\_, 어한나, 김나리. (202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서울연구원.
- 박병희, 박완규, 임병인. (2011).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재정정책 논집」. 13권 4호. pp.153-185.
- 변창흠, 이세구. (2001). 「사회간접자본투자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원.
- 송우경. (2003). 지방정부 투자사업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투융자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2018).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송지영, 임성일. (2015). 지방투자사업의 실태분석-중기경향 및 특징적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지방재정학회」.
- 심희철, 김재환. (2019).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계층구조도 설정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권 11호. pp.1177-1186.
- 양지숙. (2019).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실태 및 관리위험 분석」. 감사연구원.
- 오세희, 김민희. (2018).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실태 및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36권 3호. pp.121-143.
- 윤성일, 김상기. (2020).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상용. (1991). 「지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의 결정모델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성근, 이환범, 이관률. (2006). 지방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화와 평가기준 및 가중치산정. 「지방행정연구」. 20권 4호. pp.3-19.
- 이용환, 김진덕 (2015).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이재원. (2003). 지방정부의 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7권 2호. pp.7-25.
- 이창균, 신두섭 (2007). 「지방자치단체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효, 조기현. (1996).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희재. (2015). 지방투자사업의 유형별 투자심사 도입에 관한 연구: 공공 청사의 적정규모 산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권 1호. pp.345-368.
- 임성일. (1999).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재원조달방안. 21세기 지방정부의 발전방향과 과제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지방정부학회」.
- 조남건, 손희준, 박운선. (2019).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발전방안-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충북Focus」. pp.1-26.
- 조기현, 이창균, 김성주. (2012).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재홍, 윤형호. (2017).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 주현정. (2018).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발전 방안. 「제주발전연구」. 22권 1호. pp.159-182.
- 최외출, 안지민. (1999). 자치시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11권 2호, pp.67-81.
- 최지은, 박동규. (2017).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권 5호. pp.17-38.
- 하혜수, 이재원, 곽채기. (1996).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기법개발」. 경기개발연구원.
- 한명주, 박윤혜, 김도일. (2019).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공공투자 관리연구」.
-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_\_\_\_\_. (202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_\_\_\_\_. (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_\_\_\_\_. (202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 부 록 |

## □ 수원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수원시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결정체계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원시 공공투자사업 담당 경험이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1. 8월



문의사항 : 황소하 연구위원(031-220-8052)  
이현경 위촉연구원(031-220-8053)

1. 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자체심사)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2년에 도입한 제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①전혀 그렇지 않다와 ②그렇지 않다는 2-1로 이동

2-1.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자체심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 ②자체심사의 엄격성 부족
- ③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간 및 자료부족
- ④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소통 부족
- ⑤예산부서의 사전 검토(실무심사 등) 부족
- ⑥사업부서의 투자심사에 대한 이해 및 준비 부족
- ⑦기타

기타에 응답해 주신 분은 그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 주십시오.

3.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심사)가 경기도 투자심사와 중앙 투자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화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그렇지 않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4.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심사) 준비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및 소통은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그렇지 않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5.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심사)에서 위원들의 내용검토 시간 및 심의시간이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그렇지 않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6. 효율적인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심사)를 위해 위원회 심의 전 실무심사 및 심의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그렇지 않다
- ③보통이다
-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12. 투자심사 의뢰서(자체심사, 도 의뢰심사, 중앙의뢰 심사 모두 포함) 작성 시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사업개요(추진목적, 시행근거, 시행주체,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등)
- ②사업비 산출내역
- ③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 ④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기관 협의과정 및 내용, 타당성 조사)
- ⑤투자심의자료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자원조달 가능여부,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등)
- ⑥공공시설운영계획서(기구 및 조직, 사업수지전망, 세부시설운영계획)

13.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자체심사, 도 의뢰심사, 중앙의뢰 심사 모두 포함) 준비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심사의뢰 절차 및 의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부재
- ②예산부서 및 사업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절차 부재
- ③공공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의뢰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부재
- ④촉박한 추진일정으로 충분한 준비 및 사전절차 이행 미흡
- ⑤기타

14.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의뢰서(자체심사, 도 의뢰심사, 중앙의뢰 심사 모두포함) 작성 등에 대해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5. 투자심사 의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이행이 미흡한 가장 큰 원인 또는 기타 수원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Abstract



## The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for Public Investment in Suwon C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urrent practices and limitations of the public investment appraisal system in Suwon City and explore the feasible improvement plans to develop reasonable public investment appraisal system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Suwon City's investment projects. To achieve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public investment appraisals was analyzed on various aspects of subjects and results, and then practices of the public investment appraisal system in Suwon City were examined based on the three-stages approach: (1) preliminary review process; (2) assessment process; and (3) post-assessment process. To achieve more feasible improvement strategies,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n the Suwon City's public investment appraisal system were surveyed. Subsequent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the public investment appraisal management in the Bureau of the Budget of Suwon City and financial experts for the opinions on the current practices, limitations and feasible improvement plans of the public investment appraisal system in Suwon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for more reasonable public investment appraisal system in Suwon City, per each of the three stages as delineated above. In the preliminary review process, it is suggested that reinforcing the review process on detailed project plans and the feasibility study is crucial as well as improving the objectivity and completeness of the review request form. In the assessment process, strengthening the pre-review of the review request form, inviting more specialized experts to the committe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ommittee operations are important. In the post-assessment process, it is emphasized to inspect whether historical

implementations and track records are up-to-dated, and the budget reflects the investment appraisal results well.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the post-assessment process of the local government public investment appraisal system to strengthen the post-evaluation capability and feedback system of investment projects

Finally, this study propose to establish an public investment appraisal system suitable for “Special Cities” with a population over 1 million in the mid and long-term system improvement plans.

Keyword : Local Government Investment Appraisal System, Local Public Investment,  
Local Investment Appraisal Committee



| 저자 약력 |

황소하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hsoha@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친환경 아토피 특성화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2021,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주민주도 사업예산의 현황과 거버넌스 구조분석」 (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민간위탁 관리체계 개선방안」 (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심의선정과정 개선방안」 (2019, 수원시정연구원)

이현경

경영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hklee@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친환경 아토피 특성화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2021,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주민주도 사업예산의 현황과 거버넌스 구조분석」 (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인식 조사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